

| SRI-정책-2016-01 |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관한 연구

이영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일한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최위정 (금강대학교 초빙교수)  
김은경 (수원시정연구원 비상근 연구보조원)

© 2016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우편번호) 16703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re.kr>

인 쇄 2016년 7월 25일

발 행 2016년 7월 31일

ISBN 979-11-85686-90-5 (9335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영안. 2016.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비매품

## 국문 요약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은 ① 연구배경과 ② 연구목적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우선, ① 연구배경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국내 입법 환경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는바, 수원시의회 관련 자치법규의 구성적 양상을 소개하고, 기본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부재 상황과 선행하는 국내 타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제정 사례를 대비시킴으로써 그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음. 다음으로, ② 연구목적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이 추구해야 할 전략의 견지에서 파악하였는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목적은 지방자치의 본질(풀뿌리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이라는 최대강령과 권력분립주의, 즉 입법부(지방의회)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최소강령이 전략적으로 교호(交互)하는 장(場)으로서의 제도를 창설하는 것임을 주장하였음.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은 ① 연구범위와 ②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우선, ① 연구범위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구체적 현상이 발현되는 시간과 공간을 제시하였는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각각 최광의, 광의, 협의로 구분하고, 양자적 범위의 교차 국면으로서의 시공간적 범위를 규정하였음. 다음으로, ② 연구방법에서는 연구방법론에 내재한 연구방법을 구분한 후, 본 연구 주제의 성격상 주로 법적, 제도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타당할 것임을 적시하고, 법적, 제도적 연구방법 하에서 차용되는 연구기법은 문헌조사기법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음.

‘제3절 연구개요 및 절차’는 ① 연구개요, ② 주요 선행연구,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④ 연구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우선, ① 연구개요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제시하였는바, 본 연구는 크게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이론 검토,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사례 검토, ㉢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사례 검토,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 등으로 구분됨을 밝혔음. 다음으로, ② 주요 선행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및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에 관한 선행적 연구 결과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그리고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 수원시의회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 ㉡ 수원시의회의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것, ㉢ 수원시의회의 권한강화에 기여할 것, ㉣ 수원시의회 관련 자치법규체계의 재정비에 기여할 것 등을 예상하였음. 마지막으로, ④ 연구절차에서는 소요기간 내에서의 주요 연구내용의 진행 양상을 계획하였음.

## 제2장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이론

‘제1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의의’는 ① 최대강령, ② 최소강령, ③ 이행강령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는데,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의의를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이 추구해야 할 전략(strategy)의 견지(見地)에서 파악하고자 하였음. 전략을 변혁(지속적 혁신)의 관점에서 조망할 때 혁신(innovation)의 주체에게 부여되는 임무는 ① 이상적, 결과적 목표로서의 최대강령(最大綱領, maximum program), ② 현실적, 과정적 목표로서의 최소강령(最小綱領, minimum program), ③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행강령(移行綱領, transitional program)으로 구분됨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구도 하에서 ① 지방자치의 본질(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은 최대강령으로, ② 권력분립주의, 즉 입법부(지방의회)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는 최소강령으로, ③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을 이행강령으로 부상(浮上)함을 주장하였음.

‘제2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특징’은 ① 기본조례의 정의, ② 기본조례의 지위, ③ 기본조례의 성격, ④ 기본조례의 효력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우선, ① 기본조례의 정의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정책, 대책에 관한 기본방침, 원칙, 계획, 준칙, 대강을 명시한 것으로서, ‘기본’이란 명칭이 붙은 법령에는 일정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법령과 비교하여 특별한 지위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법령 형식”으로 인식되는 기본법령으로서의 기본조례의 개념을 정의하였음. 다음으로, ② 기본조례의 지위에서는 입법체계상 지위의 측면에서, 기본조례란 ㉠ 모법(母法)과 자법(子法)을 연결시킬 목적으로, ㉡ 모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 모법에 대한 보완의 성질을 보유한 이른바 ‘매개법령(媒介法令)’임을 규명하였음. 그리고 ③ 기본조례의 성격에서는 기본조례는 모법과 일반법령을 연결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기본법령은 형식적 측면에서 일반법령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 대상 분야에 대하여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함은 물론 그 대상 분야 내의 일반법령에 대하여 ‘우월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마지막으로, ④ 기본조례의 효력에서는 구체적으로 당해 기본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일반법령들과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측면, 즉 실질적 측면의 효력과 형식적 측면의 효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제3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원칙’은 ① 소관사무의 원칙, ②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원칙, ③ 법의 일반원칙, ④ 법률유보의 원칙, 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우선, ① 소관사무의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을 거론하였음.

다음으로, ②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을 규명하였음. 그리고 ③ 법의 일반원칙에서는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적법절차의 원칙, ㉤ 체계 정당성의 원칙, ㉥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등을 인식하였음. 나아가, ④ 법률유보의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을 강조하였음. 마지막으로, ④ 기본조례의 효력에서는 구체적으로 당해 기본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일반법령들과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측면, 즉 실질적 측면의 효력과 형식적 측면의 효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법상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제4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구조’는 ① 전문규정, ② 총칙규정, ③ 본칙규정, ④ 부칙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특히, ㉠ 이행강령으로서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본 장 제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본질(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이라는 최대 강령과 권력분립주의, 즉 입법부(지방의회)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최소강령이 전략적으로 교호하는 장으로서의 제도이어야 할 것, ㉡ 기본법령으로서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제2장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입법체계상 지위의 측면에서, ㉢ 모법(母法)과 자법(子法)을 연결시킬 목적으로, ㉣ 모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 모법에 대한 보완의 성질을 보유한 이른바 “매개법령(媒介法令)”이어야 할 것, ㉥ 일반법령으로서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제3장에서 전개한 바와 같이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들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의미에 기하여,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체계에 내포될 구조적 요소들, 즉 전문, 총칙, 본칙, 부칙 등에 관하여 기술할 것임을 인식하였음.

### 제3장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사례

‘제1절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는 ①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개관, ②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③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④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⑤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⑥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⑦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⑧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는바, 기 제정된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사례들을 전반적, 개괄적으로 이해한 후, 각 기본조례의 장 구분, 조문 배열, 조문의 핵심 내용 등을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제2절 국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는 ①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② 미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③ 영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우선, ①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는 다시 ㉠ 「가나가와현의회 기본조례」, ㉡ 「오이타시의회 기본조례」, ㉢ 「미에현 이가시의회 기본조례」, ㉣ 「나고야시의회 기본조례」, ㉤ 「교토부의회 기본조례」 등으로 구별하여 파악하였음. 다음으로, ② 미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역시 ㉥ 「뉴욕시의회 자치법규」, ㉦ 「샌디에고시의회 자치법규」, ㉧ 「로스엔젤레스시의회 자치법규」, ㉨ 「산호세시의회 자치법규」, ㉩ 「보스톤시의회 자치법규」 등으로 나누어 이해하였음. 마지막으로 ③ 영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또한 ㉪ 「에딘버러시의회 의사규정」, ㉫ 「글래스고우시의회 및 위원회 의사규정」, ㉬ 「버밍햄시의회 규약」, ㉭ 「글로스터시의회 규약」, ㉮ 「맨체스터시의회 규약」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음.

#### 제4장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사례

‘제1절 수원시의회 일반조례’는 ① 수원시의회 일반조례 현황, ②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의 조문 구성, ③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의 조문 구성, ④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⑤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⑥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⑦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의 조문 구성, ⑧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⑨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⑩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⑪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의 조문 구성, ⑫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의 조문 구성, ⑬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조문 구성, 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조문 구성, ⑮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⑯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는바, 기 제정된 수원시의회 일반조례의 사례들을 전반적, 개괄적으로 이해한 후, 각 기본조례의 장 구분, 조문 배열, 조문의 핵심 내용 등을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제2절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은 ①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 현황과 ②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는바, 기 제정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의 장 구분, 조문 배열, 조문의 핵심 내용 등을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다만, 본 절에서는 지면 관계상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제외한 나머지, 즉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 현황에서 제시된 총 15개의 법령들을 수록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이유는 ‘제5장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 첫째,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제외한 6개의 의회규칙, 및 8개의 규정 등은 이관하지 아니하였고, ㉡ 둘째,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지방자치법에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즉 ㉠ 제43조,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1조,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5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9조,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이관하지 아니하였으며, ㉥ 셋째,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그 성격상 기본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 제1장 총칙의 일부 조항, 즉 제2조(등록), 제3조(의석 배정), 제4조(개회식), 제5조(선서),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7조(청가 및 결석) 등, ㉡ 제2장 의장과 부의장의 전부 조항, ㉢ 제6장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 제7장 사직과 자격 심사, ㉤ 제8장 질서의 일부 조항, 즉 제73조 경호,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76조 방청의 허가, 제55조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임.

## 제5장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

‘제1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설계 원칙’은 ①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원칙, ②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방안, ③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원칙과 방안의 조응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우선, ①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원칙에서는 ㉠ 의회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의 명시: 지방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 의회의 포괄적, 기본적 사항의 명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포괄적,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는 것, ㉢ 기존 및 향후 의회 관련 조례의 정렬: 산재해 있는 의회 관련 조례를 정렬함과 동시에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 등 크게 세 가지의 설계 원칙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②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방안에서는 ㉠ 제1안: 신설 기본 조문만으로 구성하는 방안, ㉡ 제2안: 기존 조례 및 의회규칙을 전부 포괄하는 방안, ㉢ 제3안: 신설 기본 조문과 기존 조례 및 규칙 중 일부를 채택하는 방안, ㉣ 제4안: 제3안에 따르되 제1안 및 제2안의 의의를 포함하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③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원칙과 방안의 조응에서는 각 세 가지로 구성된 ①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원칙, ②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방안을 상호 조응시켰음.

‘제2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목차 설계’는 ①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 ② 국내 동위 법령과의 관계, ③ 국내 상위 및 동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목차 설계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우선, ①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현행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의 조문 구성을 개관한 후, 양 법령 각각의 장 구분, 조문 배열, 조문의 핵심 내용 등을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다음으로, ② 국내 동위 법령과의 관계 역시 국내 동위 법령의 조문 구성 개관한 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등 국내 동위 법령 각각의 장 구분, 조문 배열, 조문의 핵심 내용 등을 구조적 측면에서 확인하였음. 마지막으로 ③ 국내 상위 및 동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목차 설계에서는 ①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 및 ② 국내 동위 법령과의 관계 하에서 본 연구가 표방하는 전략적 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운데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목차를 설계하였음.

‘제3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조문 설계’는 ①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 ② 수원시 동위 법령과의 관계, ③ 수원시 하위 법령과의 관계, ④ 수원 동위 및 하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설계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우선, ①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 자치법규를 크게 ㉠ 조례로 정할 사항, ㉡ 의회규칙으로 정할 사항, ㉢ 의회의결로 정할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파악하였음. 다음으로, ② 수원시 동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 첫째, 현행 15개의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 중 ㉠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3개의 조례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로 전부 이관할 것, ㉡ 둘째, 상기한 바와 같은 3개의 조례를 제외한 12개의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는 이관하지 아니할 것, ㉢ 셋째, 12개의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 중 주요한 일부 조항의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나, 법적 안정성과 입법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이관 대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에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본조례와 일반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할 것 등을 결정하였음. 그리고 ③ 수원시 하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 첫째,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제외한 6개의 의회규칙, 및 8개의 규정 등은 이관하지 아니하였고, ㉡ 둘째,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지방자치법에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즉 ㉠ 제43조,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6조의2,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1조,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5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9조,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이관하지 아니하였으며, ㉢ 셋째,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그 성격상 기본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㉑ 제1장 총칙의 일부 조항, 즉 제2조(등록), 제3조(의석배정), 제4조(개회식), 제5조(선서),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7조(청가 및 결석) 등, ㉒ 제2장 의장과 부의장의 전부 조항, ㉓ 제6장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㉔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㉕ 제8장 질서의 일부 조항, 즉 제73조 경호,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76조 방청의 허가, 제55조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으로 이관할 것 등을 결정하였음. 마지막으로, ㉖ 수원 동위 및 하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설계에서는 상기의 결정 하에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조문을 장 구분, 조문명, 축조유형, 관계법령 등의 측면에서 구체화하였음.

‘제4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내용 작성’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① 제안이유와 ② 주요골자를 제시하였음.

## 제6장 결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를 제시하였음.

주제어: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자치법규

# | 차례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본 절의 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목적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1. 본 절의 개요	3
2. 연구범위	3
3. 연구방법	4
제3절 연구개요 및 절차	5
1. 본 절의 개요	5
2. 연구개요	5
3. 연구절차	7
제2장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이론	9
제1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의의	9
1. 본 절의 개요	9
2. 최대강령	9
3. 최소강령	10
4. 이행강령	11
제2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특징	12
1. 본 절의 개요	12
2. 기본조례의 정의	12
3. 기본조례의 지위	14
4. 기본조례의 성격	15
5. 기본조례의 효력	16
제3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원칙	18
1. 본 절의 개요	18
2. 소관사무의 원칙	18

3.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원칙 .....	19
4. 법의 일반원칙 .....	20
5. 법률유보의 원칙 .....	22
6.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	23
제4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구조 .....	24
1. 본 절의 개요 .....	24
2. 전문규정 .....	24
3. 총칙규정 .....	25
4. 본칙규정 .....	26
5. 부칙규정 .....	26
제3장·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사례 .....	27
제1절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	27
1. 본 절의 개요 .....	27
2.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개관 .....	27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29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0
5.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1
6.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2
7.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3
8.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4
9.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5
제2절 국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	36
1. 본 절의 개요 .....	36
2.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	36
3. 미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	42
4. 영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	45
제4장·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사례 .....	49
제1절. 수원시의회 일반조례 .....	49
1. 본 절의 개요 .....	49

2. 수원시의회 일반조례 현황 .....	49
3.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	50
4.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	51
5.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51
6.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52
7.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53
8.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	53
9.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54
10.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54
11.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55
12.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	55
13.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	56
14.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	56
15.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57
16.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	57
17.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58
제2절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 .....	58
1. 본 절의 개요 .....	58
2.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 현황 .....	59
3.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	60
제5장·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 .....	63
제1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설계 원칙 .....	63
1. 본 절의 개요 .....	63
2.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원칙 .....	63
2.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방안 .....	64
3.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원칙과 방안의 조응 .....	65
제2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목차 설계 .....	66
1. 본 절의 개요 .....	66
2.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 .....	67
3. 국내 동위 법령과의 관계 .....	71

4. 국내 상위 및 동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목차 설계	79
제3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조문 설계	80
1. 본 절의 개요	80
2.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	81
3. 수원시 동위 법령과의 관계	82
4. 수원시 하위 법령과의 관계	83
5. 수원 동위 및 하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설계	85
제4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내용 작성	87
1. 본 절의 개요	87
2.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내용	87
제6장 결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89
참고문헌	101
부록	103
부록 1: 수원시의회 일반조례, 규칙 및 규정	103
부록 2: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	140
부록 3: 국외 지방의회 기본조례	182

## | 표 차 례 |

<표 1-1> 연구의 절차 .....	8
<표 3-1>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개관(제정일자 順) .....	27
<표 3-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29
<표 3-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0
<표 3-4>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1
<표 3-5>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2
<표 3-6>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3
<표 3-7>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4
<표 3-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5
<표 3-9> 일본 의회 기본조례의 규정 내용 .....	38
<표 3-10>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9
<표 3-11> 「오이타시(大分市)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39
<표 3-12> 「미에현 이가시(三重縣伊賀市)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40
<표 3-13> 「나고야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41
<표 3-14> 「교토부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41
<표 3-15> 「뉴욕(New York)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 .....	42
<표 3-16> 「샌디에고(San Diego)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 .....	43
<표 3-17>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 .....	43
<표 3-18> 「산호세(San Jose)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 .....	44
<표 3-19> 「보스톤(Boston)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 .....	44
<표 3-20> 「에딘버러(Edinburgh) 시의회 의사규정」의 조문 구성 .....	45
<표 3-21> 「글래스고우(Glasgow) 시의회 및 위원회 의사규정」의 조문 구성 .....	45
<표 3-22> 「버밍햄(Birmingham) 시의회 규약」의 조문 구성 .....	46
<표 3-23> 「글로스터(Gloucester) 시의회 규약」의 조문 구성 .....	46
<표 3-24> 「맨체스터(Manchester) 시의회 규약」의 조문 구성 .....	47
<표 4-1> 수원시의회 일반조례 현황 개관(공포일자, 공포번호 順) .....	49
<표 4-2>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의 조문 구성 .....	50
<표 4-3>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의 조문 구성 .....	51

<표 4-4>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	52
<표 4-5>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	52
<표 4-6>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	53
<표 4-7>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의 조문 구성 .....	53
<표 4-8>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	54
<표 4-9>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	54
<표 4-10>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	55
<표 4-11>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의 조문 구성 .....	56
<표 4-12>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의 조문 구성 .....	56
<표 4-13>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조문 구성 .....	57
<표 4-14>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조문 구성 .....	57
<표 4-15>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	58
<표 4-16>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	58
<표 4-17>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 현황 개관(공포일자, 공포번호 順) .....	59
<표 4-18>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의 조문 구성 .....	60
<표 5-1>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 제정 사례(제정일자 順) .....	64
<표 5-2>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원칙과 방안의 조응관계 .....	66
<표 5-3>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의 조문 구성 개관 .....	67
<표 5-4> 「국회법」의 조문 구성 .....	68
<표 5-5> 「지방자치법(제5장)」의 조문 구성 .....	70
<표 5-6>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개관(제정일자 順) .....	71
<표 5-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73
<표 5-8>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74
<표 5-9>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75
<표 5-10>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76
<표 5-11>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76
<표 5-12>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77
<표 5-1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78
<표 5-14> 국내 주요 상위 및 동위 법령과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목차 설계 비교 ..	79
<표 5-15> 조례로 정할 사항 .....	81
<표 5-16> 의회규칙으로 정할 사항 .....	82

<표 5-17> 의회의결로 정할 사항 .....	82
<표 5-18>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작성에 따른 현행 조례의 변화(공포일자, 공포번호 順) ...	83
<표 5-19>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작성에 따른 현행 규칙, 규정(훈령)의 변화(공포일자, 공포번호 順) ...	84
<표 5-20>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설계 .....	85

# | 제1장 · 서론 |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본 절의 개요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은 ① 연구배경과 ② 연구목적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우선, ① 연구배경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국내 입법 환경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는바, 수원시의회 관련 자치법규의 구성적 양상을 소개하고, 기본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부재 상황과 선행하는 국내 타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제정 사례를 대비시킴으로써 그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음. 다음으로, ② 연구목적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이 추구해야 할 전략의 견지에서 파악하였는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목적은 지방자치의 본질(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이라는 최대강령과 권력분립주의, 즉 입법부(지방의회)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최소강령이 전략적으로 교호(交互)하는 장(場)으로서의 제도를 창설하는 것임을 주장하였음.

### 2. 연구배경

-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여기에는 크게 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하는 조례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이 있음.
- 또한, 지방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과 동등한 수준의 광의의 자치법규에 해당함.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을 조례, 규칙이라고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제정하는 것은 교육조례, 교육규칙이라고 함.
- 수원시의회의 자치법규는 입법체계상 현재 ① 「수원시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 이하 15개의 일반조례, ② 「수원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 이하 7개의 의회규칙, 그리고 ③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이하 8개의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부재한 실정이므로, 그 제정의 시급성이 강조된다 하겠음.

- 지방의회 기본조례는 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를 근본이념으로 표방하는 지방의회가 자체의 제도, 정책,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대강(大綱), 준칙(準則), 원칙(原則), 방침(方針) 등을 명시함으로써,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이상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자치의지의 표명이자 제도적 초석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선진 각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 기본조례를 채택하고 있는바, 선발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본조례(자치헌장, Home Rule)와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제도적 초석을 확보하고 있고, 후발국가인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기본조례와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이 급증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성을 반영하여, 2010년대 들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바,
- 현재, 광역의회의 사례로는 ① 「서울특별시의회기본조례」(2013.1.10.제정), ② 「충남도의회기본조례」(2013.7.30.제정), ③ 「광주광역시의회기본조례」(2014.6. 30.제정), ④ 「경기도의회기본조례」(2016.1.4.제정), ⑤ 「전라북도의회기본조례」(2016.1.29.제정) 등 5건이 있고, 기초의회의 사례로는 ① 「부천시의회기본조례」(2014.8.18.제정), ②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기본조례」(2015.5.6.제정) 등 2건이 있음.

### 3. 연구목적

- 상기한 바와 같은 연구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이 추구해야 할 전략(strategy)의 견지(見地)에서 파악하고자 함.
- 전략을 변혁(지속적 혁신)의 관점에서 조망할 때 혁신(innovation)의 주체에게 부여되는 임무는 ① 이상적, 결과적 목표로서의 최대강령(最大綱領, maximum program), ② 현실적, 과정적 목표로서의 최소강령(最小綱領, minimum program), ③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행강령(移行綱領, transitional program)으로 구분됨.
- 이와 같은 구도 하에서 우선, 지방자치의 본질(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은 최대강령으로 부상하는바,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본질적 정신이란 ① 이식된 민주주의가 아닌 자생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 ②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 ③ 중앙집권주의가 아닌 지방분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집약됨.
- 그리고 권력분립주의, 즉 입법부(지방의회)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principles of checks and balances)는 최소강령으로 부상하는바, 최대강령의 구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논리들인 국민주권주의, 간접민주주의, 권력분립주의,

의회중심주의의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수용한 후, 원형 그대로를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 제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추동력(推動力)으로 작용함.

-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은 이행강령으로 채택되는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은 권력분립주의라는 최소강령과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최대강령의 연결을 위한 중핵적인 전략적 포석(布石)이어야 함. 즉,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을 위한 구도의 기획은 현실과 과정에 매몰된 최소강령으로 하여금 이상과 결과로서의 최대강령을 단속(斷續)없이 지향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어야 함.
- 결과적으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목적은 지방자치의 본질(풀뿌리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이라는 최대강령과 권력분립주의, 즉 입법부(지방의회)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최소강령이 전략적으로 교호(交互)하는 장(場)으로서의 제도를 창설하는 것임.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본 절의 개요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은 ① 연구범위와 ②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 ① 연구범위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구체적 현상이 발현되는 시간과 공간을 제시하였는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각각 최광의, 광의, 협의로 구분하고, 양자적 범위의 교차 국면으로서의 시공간적 범위를 규정하였음.
  - ② 연구방법에서는 연구방법론에 내재한 연구방법을 구분한 후, 본 연구 주제의 성격상 주로 법적, 제도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타당할 것임을 적시하고, 법적, 제도적 연구방법 하에서 차용되는 연구기법은 문헌조사기법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음.

### 2. 연구범위

#### □ 범위의 구분

- 연구의 범위란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구체적 현상이 발현되는 시간과 공간임. 이에, 본 연구의 범위는 지방자치라는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① 시간을 척도로 한 구분(시간적 범위)과 ② 공간을 척도로 한 구분(공간적 범위), ③ 시간과 공간의 융합적 개념으로서의 시공간을 척도로 한 구분(시공간적 범위)으로 제시되며, 삼자의 구분은 각각 ㉠ 최광의, ㉡ 광의, ㉢ 협의로 구분됨.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① 최광의적으로, 건국헌법에 의거, 「지방자치법」의 제정(1949. 7. 4), 시행(1948. 8. 15)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 ② 광의적으로,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차 전부개정(1988. 4. 6) 및 시행(1988. 5. 1)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 ③ 협의적으로,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2차 전부개정(2007. 5. 11) 및 시행(1988. 5. 1)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 구분됨.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주체로서의 근대국민국가(이하, 국가) 및 지방자체제도의 구현주체이자, 국가 내에 존립하는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체화 됨. ① 최광의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주체로서의 선진 각국을 포함한 대한민국, ② 광의적으로, 대한민국, ③ 협의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구현주체로서의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로 구분됨.

□ 시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에서 주축을 이루는 부분은 협의적 범위임.
- ① 시간적 범위에서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2차 전부개정(2007. 5. 11) 및 시행(1988. 5. 1)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임.
- ② 공간적 범위에서 지방자치제도의 구현주체로서의 수원시 및 수원시의회가 연구의 핵심 범위가 됨.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의 광의, 최광의적 범위는 핵심 범위와의 연관성 하에서 의미를 가짐.

### 3. 연구방법

□ 연구방법론과 방법

- 연구방법론은 특정 연구 영역에 내재하는 ① 연구의 전통, ② 사유의 방식, ③ 연구의 방법, ④ 연구의 기법을 포괄하는 총체적 양상임.
- 연구방법론 전반에서 주로 포착되는 연구의 방법은 ① 전통적 연구방법과 ② 행태주의적 연구방법으로 대별됨.
- 전자에는 ① 규범적, 사변적 방법, ② 법적, 제도적 방법이, 후자에는 ① 행태주의적 방법, ② 후기행태주의적 방법이 해당됨.

□ 연구방법의 적용

- 본 연구의 내용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된 ① 이론적 검토(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의의, 특징, 원칙, 구조 등), ② 국내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검토(국내외

사례 구분), ③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사례 검토(일반조례, 규칙 및 규정 구분), ④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설계 원칙, 목차 설계, 조문 설계, 내용 작성) 등을 망라하여 제시하는 것인바, 그 성격상 주로 법적, 제도적 연구방법이 적용됨.

#### □ 연구기법의 적용

- 법적, 제도적 연구방법 하에서 차용되는 연구기법은 문헌조사기법이 될 것인 바, ① 1차 자료로는 자치법규의 개별 조문을 중심으로 상하위법,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국회속기록 및 전문위원검토보고서, 지방의회속기록 및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등이 될 것이고, ② 2차 자료로는 1차 자료 기반의 각종 보고서 및 연구논문, 보도자료 등이 될 것임.

## 제3절 연구개요 및 절차

### 1. 본 절의 개요

- ‘제3절 연구개요 및 절차’는 ① 연구개요, ② 주요 선행연구,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④ 연구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 ① 연구개요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제시하였는바, 본 연구는 크게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이론 검토,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사례 검토, ㉢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사례 검토,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 등으로 구분됨을 밝혔음.
- ② 주요 선행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및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에 관한 선행적 연구 결과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③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 수원시의회 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 ㉡ 수원시의회 의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것, ㉢ 수원시의회 의 권한강화에 기여할 것, ㉣ 수원시의회 관련 자치법규체계의 재정비에 기여할 것 등을 예상하였음.
- ④ 연구절차에서는 소요기간 내에서의 주요 연구내용의 진행 양상을 계획하였음.

### 2. 연구개요

- 본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이론 검토
  - 1)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의의
  - 2)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특징

- 3)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원칙
- 4)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구조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사례 검토
  - 1)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검토
  - 2) 국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검토
-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사례 검토
  - 1) 수원시의회 일반조례 사례 검토
  - 2)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 사례 검토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
  - 1)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설계 원칙
  - 2)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목차 설계
  - 3)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조문 설계
  - 4)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내용 작성
- 주요 선행연구
  - 신원득 외,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 제정 구상,” 경기연구원, 2014.
    - 의회기본조례의 성격과 제정의 논리
    - 의회기본조례의 국내외 추진사례 검토
    -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의 설계
    -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정(안)의 구상
  - 신원득 외,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연구,” 경기연구원, 2015.
    - 자치법규의 성격과 위상
    -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과제
    - 경기도의회 자치입법권의 재정립
  - 한상우 외,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11.
    - 지방의회의 지위와 자치법규체계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및 자치법규 실태분석
    - 국회 및 국내외 지방의회 자치법규 운영사례 비교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관한 연구」는 지방자치의 본질(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이라는 최대강령과 권력분립주의, 즉 입법부(지방의회)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최소강령이 전략적으로 교호(交互)하는 장(場)으로서의 제도를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는바, 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수원시의회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인바, 지방의회 기본조례는 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를 근본이념으로 표방하는 지방의회가 자체의 제도, 정책,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대강, 준칙, 원칙, 방침 등을 명시함으로써,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이상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자치의지의 표명이자 제도적 초석이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수원시의회의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것인바, 지방의회 기본조례는 공적영역으로부터의 도피를 추구하는 개인(소극적 자유)을 공적영역에의 참여를 추구하는 시민(적극적 자유)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의회의 융합적 관계를 유도할 것임.
-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수원시의회의 권한강화에 기여할 것인바, 지방의회 기본조례는 최소강령, 즉 현실적, 과정적 전략목표로서의 권력분립주의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입법부(지방의회)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의 장)라는 양륜(兩輪)의 균형적 작동을 통한 지역주민 전체의 실질적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임.
- 결과적으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수원시의회 관련 자치법규체계의 재정비에 기여할 것인바, 지방의회 기본조례는 입법체계상 지위의 측면에서 모법(母法)과 자법(子法)을 연결시키는 매개법(媒介法)임과 동시에 그 성격의 측면에서 자법 즉 일반조례에 대한 우월적 성격과 계도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

### 3. 연구절차

-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의 <표 1-1>과 같음.

<표 1-1> 연구의 절차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자료로서 자치법규의 개별 조문을 중심으로 상하위법, 판례, 헌재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국회·지방의회 속기록 및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li> <li>2차 자료로서 1차 자료기반의 각종 보고서 및 연구논문, 보도자료 등을 활용</li> </ul>
	주요 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기본조례(안) 제정 구상 분석</li> <li>경기도의회 자치법규 개선 연구 분석</li> <li>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연구 분석</li> </ul>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이론 검토	시원시의회 기본조례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강령, 최소강령, 이행강령으로 구분하여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의의 분석</li> </ul>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특징을 기본조례의 정의, 지위, 성격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li> </ul>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과사무의 원칙,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원칙, 법의 일반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따름</li> </ul>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규정, 총칙규정, 본칙규정, 부칙규정으로 구분하여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구조 분석</li> </ul>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사례분석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를 포함한 5개 시·도와 부천시를 포함한 2개 시·군·구의 의회의 기본조례 조문 분석</li> </ul>
	국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기본조례 조문 분석</li> <li>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자치법규 조문 분석</li> <li>영국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사규정 및 규약 조문 분석</li> </ul>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분석	수원시의회 일반조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15가지 수원시의회 일반조례 현황 분석</li> </ul>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7가지 수원시 규칙 및 8가지 규정 현황 분석</li> </ul>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설계원칙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 가지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치 원칙과 네 가지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 기본방안을 기초하여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설계원칙 수립</li> </ul>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목차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상위 법령인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동위 법령인 각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조문구성을 비교하여 목차설계</li> </ul>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상위법령, 수원시 동위·하위 법령과의 관계 분석 후 수원 동위 및 하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설계</li> </ul>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내용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내용 작성</li> </ul>

## | 제2장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이론 |

### 제1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의의<sup>1)</sup>

#### 1. 본 절의 개요

- ‘제1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의의’는 ① 최대강령, ② 최소강령, ③ 이행강령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는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의의를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이 추구해야 할 전략(strategy)의 견지(見地)에서 파악하고자 하였음.
- 전략을 변혁(지속적 혁신)의 관점에서 조망할 때 혁신(innovation)의 주체에게 부여되는 임무는 ① 이상적, 결과적 목표로서의 최대강령(最大綱領, maximum program), ② 현실적, 과정적 목표로서의 최소강령(最小綱領, minimum program), ③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행강령(移行綱領, transitional program)으로 구분됨을 제시함.
- 이와 같은 구도 하에서 ① 지방자치의 본질(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은 최대강령으로, ② 권력분립주의, 즉 입법부(지방의회)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는 최소강령으로, ③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을 이행강령으로 부상(浮上)함을 주장하였음.

#### 2. 최대강령

- 최대강령 1: 지방자치의 본질(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
  - 상기한 바와 같은 전략적 견지에서, 지방자치의 본질(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은 최대강령으로 부상함. 즉, 지방의회의 정체성(正體性)과 그에 기반을 둔 지향성(志向性)은 지방자치의 본질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수행하는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전략적 임무의 최대강령으로 삼아야 함.
  -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본질적 정신이란 ① 이식된 민주주의가 아닌 자생적 민주주의(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 ②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 ③ 중앙집권주의가 아닌 지방분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집약됨.
- 최대강령 2: 지방자치의 관념과 제도의 기원(起源), 근대국민국가의 한계
  - 지방자치라는 관념과 제도는 한마디로, 근대 자본주의 국민국가의 정치영역에 배태(胚胎)된

1) 본 절은 권영성, 「개정관 헌법학원론」(서울: 법문사, 2014); 허영, 「한국헌법론(전정11판)」(서울: 박영사, 2015); 성낙인, 「헌법학(제15판)」(서울: 법문사, 2015);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서울: 박영사, 2013) 등의 논의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근원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 출현한 것임.

- 즉, ① 포용의 논리에 기반을 둔 인민주권주의가 아닌 배제의 논리에 입각한 국민주권주의의 채택, ② 대중주의를 추구하는 진정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가 아닌 엘리트주의를 추구하는 부진정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 ③ 그리고 이로부터 생성되는 엘리트 독점적 절대권력의 절대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악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었던 권력분립주의 및 ④ 그로부터 도출된 현상으로서의 의회중심주의 등에 내포된 근대 민주주의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의 정신인 것임.

### 3. 최소강령

- 최소강령 1: 권력분립주의, 즉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견제와 균형
  - 상기한 바와 같은 전략적 견지에서, 권력분립주의, 즉 입법부(지방의회)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최소강령으로 부상함.
  - 지방자치의 본질은 차안(此岸)의 최소강령이 아닌 피안(彼岸)의 최대강령이며, 실천적 견지에서 전자는 후자에 우선함. 즉, 변혁을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현실적, 과정적 목표와 이상적, 결과적 목표는 구별되어야 함.
  - 이에,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합의적으로 채택된 최소강령은 상위단위, 즉 국가수준의 정치를 관통하는 관념(국민주권주의, 간접민주주의, 권력분립주의, 의회중심주의)과 제도를 그대로 하위단위, 즉 지방수준의 정치를 구성하는 관념과 제도로 이식하는 작업이 됨.
  - 그러나 이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은 여전히 지방자치(自治)가 아닌 지방정치(政治, 즉 統治)인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 과정적 최소강령의 한계가 됨.
- 최소강령 2: 축소주의에 의거, 권력분립주의의 강조를 통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 한국 지방자치 학계의 연구자들 대부분은 이와 같은 차안의 최소강령, 즉 현실적, 과정적 목표에 몰입하고 있음. 즉,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논리들(국민주권주의, 간접민주주의, 권력분립주의, 의회중심주의)을 근대국민국가의 합의된 보편적 원리로 간주하고, 이것들의 정당성을 수용한 후, 원형 그대로를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제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됨(축소주의, 縮小主義).
  - 이때 주민의 지위는 국민의 지위를, 지방의회의 지위는 국회의 지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원용할 수 있게 됨. 특히, 이로부터 창출되는 권력분립주의, 즉 입법부(지방의회)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추동력(推動力)으로 작용함.

## 4. 이행강령

### □ 이행강령 1: 지방의회(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

- 상기한 바와 같은 전략적 견지에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은 이행강령으로 채택됨. 즉,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은 권력분립주의라는 최소강령과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최대강령의 연결을 위한 중핵적인 전략적 포석(布石)이어야 함.
- 이에,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구도의 기획은 현실과 과정에 매몰된 최소 강령으로 하여금 이상과 결과로서의 최대강령을 단속(斷續) 없이 지향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어야 함.
- 즉,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지방자치의 본질(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이라는 최대강령과 권력분립주의, 즉 입법부(지방의회)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최소강령이 전략적으로 교호(交互)하는 장(場)으로서의 제도이어야 함.

### □ 이행강령 2: 이행강령으로서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최대 강령적 측면

- 따라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기획은 일차적으로 최대 강령적 측면에서, 근대국민국가의 합의된 보편적 원리이자 극복해야 할 이념들인 국민주권주의, 간접민주주의, 권력분립주의, 의회중심주의를 이와 대립하는 이념들인 인민주권주의, 직접민주주의, 권력통합주의, 대중중심주의와 견주어 성찰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본질적 이념들인 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의 기치(旗幟)를 표방(標榜)해야 할 것임.

### □ 이행강령 3: 이행강령으로서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최소 강령적 측면

- 또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기획은 이차적으로 최소 강령적 측면에서, 범규범으로서의 조례의 속성을 염두에 뒀어야 할 것임.
- 즉, 조례는 ① 외적 지위의 측면에서, 헌법을 필두로 분류되는 법령의 위계체계 하에서 그 규범성을 부여받음. 따라서 관련 상위 법규범과의 정합성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또한 조례는 ② 내적 지위의 측면에서, 기본조례와 일반조례의 위계관계 하에서 그 규범성이 인정됨. 기본조례는 본질적으로 당해 영역에 있어서 일반조례에 대하여 지도조례, 지침조례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따라서 여타 일반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작업은 기본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기하여야 함.

### □ 이행강령 4: 이행강령으로서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완결성 추구

- 특히 상기한 바와 같은 전략적 견지에서, 기 제정, 개정된 국내외 지방의회 기본조례들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가 요구될 것인 바, 비교 분석적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후,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에 임해야 할 것임.

## 제2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특징<sup>2)</sup>

### 1. 본 절의 개요

- ‘제2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특징’은 ① 기본조례의 정의, ② 기본조례의 지위, ③ 기본조례의 성격, ④ 기본조례의 효력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 우선, ① 기본조례의 정의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정책, 대책에 관한 기본방침, 원칙, 계획, 준칙, 대강을 명시한 것으로서, ‘기본’이란 명칭이 붙은 법령에는 일정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법령과 비교하여 특별한 지위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법령 형식”으로 인식되는 기본법령으로서의 기본조례의 개념을 정의하였음.
- 다음으로, ② 기본조례의 지위에서는 입법체계상 지위의 측면에서, 기본조례란 ㉠ 모법(母法)과 자법(子法)을 연결시킬 목적으로, ㉡ 모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 모법에 대한 보완의 성질을 보유한 이른바 ‘매개법령(媒介法令)’임을 규명하였음.
- 그리고 ③ 기본조례의 성격에서는 기본조례는 모법과 일반법령을 연결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기본법령은 형식적 측면에서 일반법령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 대상 분야에 대하여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함은 물론 그 대상 분야 내의 일반법령에 대하여 ‘우월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 마지막으로, ④ 기본조례의 효력에서는 구체적으로 당해 기본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일반법령들과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측면, 즉 실질적 측면의 효력과 형식적 측면의 효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 2. 기본조례의 정의

#### □ 기본법령의 정의: 의의

- 한국에서 근대 법제(法制)의 계수(繼受) 과정은 주로 해방을 기점으로 이전의 대륙법(특히, 독일법) 계수와 이후의 영미법(특히, 미국법) 계수로 구분되나, 이 과정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매우 큼. 본고에서 다루는 기본법제(基本法制)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2) 본 절은 박정훈,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 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법조」, 58(12) (2009);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8); 문상덕, “자치기본조례의 구상,”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포럼」, 15 (2004); 박병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에 관한 연구: 일본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최환용·정명운, “자치기본조례의 현황과 입법체계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4)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기본법령과 관련된 한국 학계의 논의는 양적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질적 측면에서도 주로 일본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전개되는 특징이 있음. 그 이유는 현재 한국에는 일본의 법제를 계수하여 기본이란 명칭이 붙은 법령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임.

현재 한국에는 ‘기본’이라는 명칭이 부착된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을 논함에 있어 ‘기본’의 의미는 일본 법학계의 견해를 빌어 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현재 일본에서의 기본법령의 정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정책, 대책에 관한 기본방침, 원칙, 계획, 준칙, 대강을 명시한 것으로 ‘기본’이란 명칭이 붙은 법령에는 일정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법령과 비교하여 특별한 지위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법령 형식”으로 일반화 되어 있음.
- 기본법령의 기존 정의 1: 형식적 의미의 기본법령
  - 일본의 경우, 기본법령의 정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왔음.
  - 첫째, 형식적 의미의 기본법령으로서, 이 때 기본법령이란 의회가 정립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 중에서 제명(題名)에 ‘기본’이라는 명칭이 부착된 법령을 지칭하는 정의임. 즉, 이 정의는 특정 법령에 대해 기본이라는 제목을 붙여 그 법령의 공식명칭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기본법령이라고 보는 사례임.
- 기본법령의 기존 정의 2: 실질적 의미의 기본법령
  - 둘째, 실질적 의미의 기본법령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이른바 기본적인 대강(大綱), 준칙(準則), 원칙(原則), 방침(方針) 등을 결정하는 법령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임.
  - 이 정의는 특정 법령의 성격을 부여함에 있어 통속적으로 분류하는 용례에 의한 개념임.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령이라고 하거나, 형법을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법령이라고 하는 경우가 적절한 사례임.
- 기본법령의 기존 정의 3: 헌법과 동의의 기본법령
  - 셋째, 헌법과 동의(同義)의 기본법령으로서, 기본법령이란 국가의 기본조직을 결정하는 법령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임.
  - 이 경우의 기본법령은 국가경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즉 ‘헌법’을 지칭하는 것임. 그 대표적인 예로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이 여기에 해당함.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국 헌법은 기본법령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국가의 최고법규라고 할 수 있다고 함.
- 기본법령의 현행 정의 1: 참의원법제국의 유권해석
  - 상기한 바와 같은 초기의 기본법령 정의가 있어 왔으나, 현재 일본 법령제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참의원법제국(參議院法制局)의 기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하면 “기본법령이란 국정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 국가의 제도, 정책,

대책에 관한 기본방침, 원칙, 준칙, 대강을 명시한 법령”이자“여기에는 기본이란 명칭이 붙지 않은 법령 중에도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경우도 있으나, 제명에 기본이란 명칭을 가진 법령에는 일반의 법령과는 다른 특별한 법령형식으로서 일정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됨.

#### □ 기본법령의 현행 정의 2: 기존 정의와 현행 정의의 비교

- 일본의 현행 정의(참의원법제국의 유권해석)는 기본법령의 기존 정의 가운데 첫 번째(형식적 의미의 기본법령)와 두 번째(실질적 의미의 기본법령)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일본의 학계에서 현재 기본법령은 법령의 제명에 ‘기본’이라는 명칭을 가진 형식적 입장에서 기본법령이란 용어를 채택하고, 이러한 기본법령은 사실상 그 규범형식, 내용, 기능 등에 있어 다른 법령과 비교할 때, 독립된 입법형식의 한 유형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3. 기본조례의 지위

#### □ 기본법령의 지위 1: 의의

- 기본법령은 입법체계상 지위의 측면에서, ① 모법(母法)과 자법(子法)을 연결시킬 목적으로, ② 모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③ 모법에 대한 보완의 성질을 보유한 이른바 ‘매개법령(媒介法令)’임.
- 이러한 기본법령이 일본에서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는 전후(戰後), 헌법만 제정한 채 하위법령이 부재한 입법 공백상태에서 기본법령을 통하여 후속법령들을 단계적으로 정립해 간다는 입법정책과 입법기술의 존재가 제시됨.
- 따라서 일본에서 기본법령은 국가의 제도, 정책에 관한 이념, 기본방침을 제시함과 더불어 그에 의거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를 받아서 기본법령의 목적, 내용 등에 적합한 형태로 다양한 행정시책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 기본법령의 지위 2: 모법과 기본법령의 관계

- 모든 기본법령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점은 다른 법령과 달리 모법상의 문언과 취지를 직접 기본법령의 전문(前文)에 제시하거나, 혹은 본문의 규정(특히, 총칙규정) 속에 끌어들이는 입법방식을 취하는 법령임.
- 모든 기본법령은 형식적 측면에서 일반법령과 그 효력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모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보다 밀접한 거리에서 구체화된 입법이라는 특징을 가짐. 다만, 기본법령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응당 ‘모법→기본법령→일반법령’이라는 법적 위계관계가 성립하나, 기본법령이 부재하는 영역에서는 ‘모법→일반법령’이라는 입법방식으로 법률이

정비되는 경우도 있음.

#### □ 기본법령의 지위 3: 기본법령과 자법의 관계

- 국가 수준에서 기본법령과 자법의 관계를 설명하면, 기본법령이란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와 관련하여 제도, 정책, 대책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헌법을 구체화하고, 이에 기하여 각각의 일반법령들을 정립해가기 위한 매개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법 영역에서 기본법령의 존재는 적어도 당해 관련 일반법령에 대하여 헌법적 역할을 수행함.
- 동일한 논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제정되는 기본조례와 일반조례의 관계에도 적용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와 수원시의회 관련 일반조례와의 관계에도 성립됨.

## 4. 기본조례의 성격

#### □ 기본법령의 성격 1: 우월적 성격

- 상기한 바와 같은 기본법령의 지위에는 기본법령 특유의 성격이 내포됨. 기본법령은 모법과 일반법령을 연결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기본법령은 형식적 측면에서 일반법령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 대상 분야에 대하여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함은 물론 그 대상 분야 내의 일반법령에 대하여 ‘우월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에, 기본법령의 핵심적 성격은 기본법령의 일반법령에 대한 ‘우월적 성격’과 ‘계도적 성격(유도적 성격)’으로 압축될 수 있음. 그러나 입법체계의 관점에서 기본법령의 ‘계도적 성격’은 ‘우월적 성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본법의 성격은 한마디로 ‘우월적 성격’으로 명명 할 수 있음.

#### □ 기본법령의 성격 2: 지도적, 우월적, 유도적, 지침적 성격과 역할

- 모법의 제정, 시행과 함께 각 분야의 일반법령을 통한 입법목적의 달성이라는 입법체제(모법→일반법령)도 존재하지만, 이와 별도로 입법 정책적으로 기본법령이라는 입법형식(매개법령)을 통해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일반법령의 제정을 기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입법형식(모법→기본법령→일반법령)도 허용됨.
- 이는 개별 기본법령이 각각의 분야에 있어 ‘기본’법령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당해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방침 등을 실시하기 위한 일반법령에 대해서 일종의 지도적, 우월적, 유도적, 지침적 성격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한 이유로 기본법령을 해당 분야의 ‘헌법’ 혹은 해당 분야의 일반법령에 대한 우월적 성격을 지닌 법령으로 칭함.

## 5. 기본조례의 효력

### □ 기본법령의 효력: 의의

- 상기한 바와 같이, 기본법령에서 규정된 준칙, 지침, 시책 등이 해당 분야의 여타 일반법령의 정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도적, 우월적, 강령적, 현장적인 기능과 효력을 갖는 것은 기본법령의 본질에 비추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임.
-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본법령의 성격을 전제로, 입법체계상 기본법령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서, 구체적으로 당해 기본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일반법령들과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측면, 즉 실질적 측면의 효력과 형식적 측면의 효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함.

### □ 실질적 측면의 효력 1: 기본법령의 우월성과 신법, 특별법우선의 원칙의 관계

- 상기한 바와 같이, 기본법령이라는 입법형식 내에는 그 본질적 성격에 기초한 ‘기본법령의 우월성’이라는 법리가 정립되어 있음에 반해, 전통적 입법학에서는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존재함.
- 따라서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기본법령의 우월성’이 입법체계상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존 입법학의 이론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

### □ 실질적 측면의 효력 2: 기본법령 시행 이후 일반법령이 제정, 시행될 경우

- 기본법령의 목적, 내용에 반하는 규정을 내포한 일반법령의 제정은 기본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밖에 없음.
- 그 결과, 기본법령의 제정 주체로서의 의회는 이후 스스로 일반법령의 제정주체가 될 자신에 대하여 기본법령에 기한 입법 요청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령의 우월적 성격은 명확함. 다만, 이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면, 실제로 제정된 일반법령은 기본법령의 목적과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종속적 법령이므로 ‘기본법령의 우월성’에 따라 해석, 적용할 것이 요구됨.
- 결국, 이 경우에 ‘신법우선의 원칙’이라는 일반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됨은 물론, 일반법령은 처음부터 기본법령의 입법 목적과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자의 관계에서 ‘특별법우선의 원칙’ 역시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겠음.

### □ 실질적 측면의 효력 3: 일반법령 시행 이후 기본법령이 제정, 시행될 경우

-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은 ‘기본법령의 우월성’은 기본법령의 시행 ‘이후’에 일반법령이 제정, 시행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 해석의 방향을 검토한 것임.
-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특정 기본법령이 시행에 들어간 시점에 앞서, 이미 해당분야에 여러 일반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기본법령의 우월성은 기본법령 이후에 제정, 시행되는 법률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오히려 이

경우에는 법의 일반원칙인 ‘신법우선의 원칙’이 작용된다는 점에서 기본법령이 지난 우월성은 기존 일반법령과의 관계에서 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만약 기존 일반법령의 내용이 새로 제정된 기본법령의 목적, 취지 및 내용에 명확히 반한다면, 기본법령에 위반하는 한도에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형식적 측면의 효력 1: 기본법령의 일반법령에 대한 우월성 상실
  - 상기한 바와 같이, 실질적 측면의 효력에서 압도적 지위를 지니는 ‘기본법령의 우월성’은 형식적 측면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상실될 수 있음.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본법령과 일반법령은 공히 모법의 하위에 있는 법령의 특정 유형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함.
  - 따라서 모법을 필두로 한 법의 형식적 위계체계를 염두에 둔 ‘법률의 형식적 측면(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 여타의 일반법령과 기본법령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점임.
  - 그러한 이유로, 의회가 특정 기본법령을 제정한 경우에도 의회 스스로가 사후에 제정하는 일반법령을 통해 ‘의식적’으로 기본법령의 내용을 일부 혹은 전부를 개정하거나, 기본법령의 규정에 대해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즉 기본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된다 하겠음.
- 형식적 측면의 효력 2: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들에 대한 준수 필요
  - 결국, 상기한 바와 같은 기본법령의 실질적 효력으로서 우월성은 그 이후에 제정되는 여타의 일반법령에서 기본법령을 수정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을 담아 제정, 시행하는 것을 부인하는 효력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즉, ‘기본법령’ 역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법령이므로, 그 효력에 있어 다른 관련 법령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는 기본조례의 실질적 효력으로서의 우월성에 입각하되, 제3장에서 제시되는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들(① 소관사무의 원칙, ② 법령의 범위 안에서, ③ 법의 일반원칙, ④ 법률유보의 원칙, 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하겠음.

## 제3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원칙<sup>3)</sup>

### 1. 본 절의 개요

- ‘제3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원칙’은 ① 소관사무의 원칙, ②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원칙, ③ 법의 일반원칙, ④ 법률유보의 원칙, 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 우선, ① 소관사무의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을 거론하였음.
- 다음으로, ②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을 규명하였음.
- 그리고 ③ 법의 일반원칙에서는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적법절차의 원칙, ㉤ 체계정당성의 원칙, ㉥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등을 인식하였음.
- 나아가, ④ 법률유보의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을 강조하였음.
- 마지막으로, ④ 기본조례의 효력에서는 구체적으로 당해 기본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일반법령들과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측면, 즉 실질적 측면의 효력과 형식적 측면의 효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 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2. 소관사무의 원칙

#### □ 의의

3) 본 절은 법제처, “제1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법제처, “제2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자치법규 중요 쟁점 해설집」, 법제처 (2013) 등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들 각각의 의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특히 상기의 자료를 참조 바람.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가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

---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제23조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부담 하에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와 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사무인 자치사무, ②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단체위임사무, ③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됨.
-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예컨대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법규가 미칠 수 있는 지역적 한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예컨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등).

### 3.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원칙

#### □ 의의

-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제23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판례: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추32 판결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추32 판결).

#### 4. 법의 일반원칙

##### □ 의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소관사무에 대하여 국가법령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헌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자치법규는 위헌 또는 위법한 자치법규로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비례의 원칙이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 제한이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원칙임. 비례의 원칙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특히 고려할 원칙임.
- 일반적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정당화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 입법의 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입법으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또는 질서유지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② 방법의 적정성(적절성): 기본권 제한 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은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③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이라도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④ 법익의 균형성: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私益)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 평등의 원칙

- 평등의 원칙은 법 적용과 법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제1항29)에서 도출되는 원칙임. 여기서 합리적이라 함은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절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함(헌법재판소 1996. 8. 29. 93헌바57).

#### □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학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명시적, 묵시적 언동(言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 그러나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자치법규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법(舊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 문제로서 소급효(溯及效)를 가지는 자치법규에 관한 문제이고, 이는 소급입법의 내용이 침해적인지 아니면 수익적(授益的)인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름.

#### □ 적법절차의 원칙

- 일반적으로 적법절차라 함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함.
- 헌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 규칙의 개정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 체계정당성의 원칙

- 체계정당성의 원칙이라 함은 법령체계의 정합성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함. 체계정당성의 요청은 동일 법령 내에서는 물론 상이한 법령 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
- 법령 상호간에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요청의 하나라고 하겠음. 그러나 체계정당성을 위반했다고 하여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의 위반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되는 것이 대부분임.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야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며, 또 체계정당성의 원칙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함(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 따라서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바로 위헌성 판단의 준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체계의 통일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입법과정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리이고, 특히 새로운 법제도를 창설할 때에는 당연히 기존 법제도와와의 조화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하고,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조례에 중요사항은 정하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하여야 함.
- 왜냐하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된 사항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어 법령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 5. 법률유보의 원칙

#### □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인, 허가, 등록, 신고 등을 신설하거나 정년제한, 의무사항 신설 등과 같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아니 됨. 비록 구체적인 의무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행위를 강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판례: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추134 판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바, 보육시설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항은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제20조), 자격(제21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정년 등 연령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조례안 제17조 제3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추134, 판결).

- 법률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권리·의무 관련 사항을 규율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므로 법률과의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6.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 □ 의의

-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나,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거나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견제장치를 변경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각각 상대방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을 가짐.
- ② 상대방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만 관여할 수 있음.
- ③ 소극적, 사후적 개입은 허용되지만 적극적·사전적 개입은 허용되지 않음.
- ④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4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구조<sup>4)</sup>

### 1. 본 절의 개요

□ ‘제4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구조’는 ① 전문규정, ② 총칙규정, ③ 본칙규정, ④ 부칙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 특히, ㉠ 이행강령으로서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본 장 제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본질(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이라는 최대강령과 권력분립주의, 즉 입법부(지방의회)와 집행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최소강령이 전략적으로 교호하는 장으로서의 제도이어야 할 것, ㉡ 기본법령으로서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제2장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입법체계상 지위의 측면에서, ㉢ 모법(母法)과 자법(子法)을 연결시킬 목적으로, ㉣ 모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 모법에 대한 보완의 성질을 보유한 이른바 “매개법령(媒介法令)” 이어야 할 것, ㉥ 일반법령으로서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제3장에서 전개한 바와 같이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들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의미에 기하여,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체계에 내포될 구조적 요소들, 즉 전문, 총칙, 본칙, 부칙 등에 관하여 기술할 것임을 인식하였음.

### 2. 전문규정

□ 의의

○ 자치법규의 체계는 통상적으로 ① 총칙규정, ② 본칙규정(실체규정, 보칙규정), ③ 부칙규정으로 구분되나, 기본법령으로서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다른 법령과 달리 모법상의

4) 본 절은 법제처, “제2편, 세부 입안규정,”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법제처, “제3편 본칙규정 입안 원칙, 제4편 부칙규정 입안 원칙,” 「자치법규 중요 쟁점 해설집」, 법제처 (2013) 등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세부 입안규정 각각의 의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상기의 자료를 참조 바람.

문언과 취지를 직접 기본법령의 전문(前文)에 제시하는 입법방식을 취하는 편이 타당할 것임.

- 전문(前文)이란 법령의 목적이나 제정 취지 등을 밝히는 글인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본문(총칙, 부칙, 본칙) 앞에 위치하여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문으로 규범적 효력을 지님.
- 예를 들어, 헌법 전문은 헌법의 서문으로서 헌법의 제정목적, 제정과정, 국가적 질서형성에 관한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상 단순한 공포문이나 선언문이 아닌 헌법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 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의 개별적인 조문과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형성함. 헌법전문은 국가권력의 최고의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모든 법령에 대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여 법률이 헌법전문에 위반하는 경우 무효임을 인정하고 있음(헌재결 1989.9.8. 88헌가 6).

### 3. 총칙규정

#### □ 의의

- 총칙규정(總則規定)은 그 자치법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그 자치법규 전체의 원칙적,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함.
- 자치법규의 총칙규정 부분에 반드시 어떠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님. 어떤 내용을 총칙규정에 둘 것인가는 특정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자치법규의 입법취지, 내용, 조문 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정함.
- 자치법규의 조문수가 많은 경우 자치법규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보통임. 이 경우 총칙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장으로 하여 그 자치법규의 맨 앞에 둬. 법령의 경우 조문이 수백 개에 이르면 편(編)을 두고, 편 아래에 장(章)을 두며, 장 아래에 절(節)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1편을 총칙으로 함. 그 밖에 각 편마다 그 편에 적용되는 총칙을 별도로 두는 경우도 있음.
- 자치법규를 장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조항까지가 총칙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목적규정, 정의규정, 기본이념 등의 규정과 그 밖에 그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총칙규정으로 봄.
- 총칙규정에 두는 내용은 개개의 자치법규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자치법규의 목적

또는 취지를 정한 목적규정,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정의규정, 자치법규 해석의 지침을 규정한 해석규정,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적용범위규정, 그 자치법규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본이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책임, 정책수립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총칙 규정에 두는 경우도 있음.

- 각 규정을 어떤 순서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순서를 정해 규정하면 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순서는 ① 목적 규정, ② 기본이념규정, ③ 정의규정, ④ 해석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책임·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 ⑥ 적용범위규정, ⑦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순이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4. 본칙규정

##### □ 의의

- 자치법규의 일반적 체계를 보면 대개 처음에 그 자치법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본칙규정(실체규정, 보칙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규정을 둔다.
- 이와 같이 본칙규정(本則規定)은 자치법규의 중간부분에 위치하여 그 자치법규의 중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임.

#### 5. 부칙규정

##### □ 의의

- 부칙규정(附則規定)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시행일과 본칙의 시행에 따른 과도적 조치인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적용례, 경과조치, 특례, 기존 조례, 규칙의 폐지, 그리고 본칙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조례, 규칙의 개정, 개정된 본칙과 다른 조례, 규칙 등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한다.
- 이러한 규정들은 본칙과 달리 잠정적 성격을 띠거나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들임. 이와 같은 규정들은 본칙을 모두 규정한 다음에 부칙이라는 표제 아래 따로 모아둠.
- 부칙은 이번 개정규정에 관련해서 규정하는 것이므로 종전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이번 개정과 관련 없는 종전 부칙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종전의 부칙을 개정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적절함.

## | 제3장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관련 사례 |

### 제1절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 1. 본 절의 개요

□ ‘제1절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는 다음과 같음.

- ①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개관, ②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③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④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⑤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⑥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⑦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⑧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 기 제정된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사례들을 전반적, 개괄적으로 이해한 후, 각 기본조례의 장 구분, 조문 배열, 조문의 핵심 내용 등을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2.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개관

□ 현행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을 개관(제정일자 順)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개관(제정일자 順)

의회	장 구분	조문 구분
서울특별시의회 (시행 2015.1.2., 총 7장, 64개조)	제1장 총칙	4개조: 목적 등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7개조: 연간 회의일수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9개조: 의장의 직무 등
	제4장 의원	8개조: 등록 등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20개조: 교섭단체의 구성 등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10개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등
	제7장 질서와 경호	6개조: 경호 등
충청남도의회 (시행 2014.12.30., 총 7장, 56개조)	제1장 총칙	2개조: 목적 등
	제2장 회의운영	7개조: 연간 회의 총 일수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7개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등
	제4장 의원	7개조: 등록 등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19개조: 교섭단체의 구성 등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9개조: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등
제7장 질서 및 경호	5개조: 경호 등	
광주광역시의회	제1장 총칙	4개조: 목적 등

(시행 2015.2.15., 총 9장, 66개조)	제2장 의원	6개조: 등록 등
	제3장 회의운영	5개조: 연간 회의일수 등
	제4장 의회의 기관 등	9개조: 의장 등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	16개조: 교섭단체 구성 등
	제6장 발언	7개조: 발언 허가 등
	제7장 시장 등의 출석답변	7개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등
	제8장 질서와 경호 등	5개조: 질서유지 등
	제9장 의원 연구활동 및 시민참여 등	7개조: 연구활동 등
	경기도의회 (시행 2016.1.4., 총 5장, 20개조)	제1장 총칙
제2장 도민		1개조: 도민의 권리
제3장 의회		7개조: 의회의 사명 등
제4장 의원		4개조: 의원의 사명 등
제5장 의회와 도지사 등과의 관계		5개조: 도지사, 교육감과의 관계 등
전라북도의회 (시행 2016.3.25., 총 7장, 54개조)	제1장 총칙	4개조: 목적 등
	제2장 회의운영	6개조: 연간 회의 총일수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8개조: 의장 등
	제4장 의원	7개조: 등록 등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16개조: 교섭단체의 구성 등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8개조: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등
	제7장 질서 및 경호	5개조: 경호 등
부천시의회 (시행 2015.4.1., 총 7장, 58개조)	제1장 총칙	4개조: 목적 등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13개조: 연간 회의 총일수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5개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등
	제4장 의원	12개조: 등록 등
	제5장 위원회와 위원	12개조: 상임위원회 설치 등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7개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등
	제7장 질서 및 경호	5개조: 경호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시행 2015.5.6., 총 7장, 59개조)	제1장 총칙	4개조: 목적 등
	제2장 의원	9개조: 등록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9개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등
	제4장 회기운영	6개조: 연간 회의 총일수 등
	제5장 위원회와 위원	18개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7개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등
	제7장 질서와 경호	6개조: 경호 등

###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9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0조(위원회의 설치) 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3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3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36조(상임위원장) 제37조(특별위원회) 제3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제4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4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42조(위원장의 직무) 제43조(부위원장) 제44조(소위원회) 제45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46조(전문위원과 공무원) 제47조(전문가의 활용) 제47조의2(공청회 등) 제48조(입법·법률고문)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제7조(회기)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제9조(심의)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제11조(개회식)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2조(의장의 직무)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14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16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7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8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제19조(사무처) 제20조(정책연구위원회)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50조(시장질문) 제51조(시장 등에 대한 서면질문)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제53조(긴급현안질문) 제54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55조(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 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제57조(의회의 예산) 제58조(회의록)
제4장 의원	제21조(등록) 제22조(의석배정) 제23조(선서)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제25조(의원의 사직)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27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6장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59조(경호)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 제61조(의장, 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제6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제63조(방청) 제64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제7장 질서와 경호	

####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24조(교섭단체 구성)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제2장 회의운영	제3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4조(회기) 제5조(정례회의 집회일)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7조(정례회의 운영) 제8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제9조(개회식)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6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27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28조(상임위원회 위원) 제29조(상임위원의 임기) 제30조(상임위원장)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제32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조(윤리특별위원회)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36조(위원장의 직무) 제3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38조(부위원장) 제39조(소위원회) 제4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41조(전문가의 활용) 제42조(입법·법률고문)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0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11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3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4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제15조(사무처) 제16조(의정자문위원회)		제43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제44조(도정에 대한 질문) 제45조(긴급 현안질문)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제47조(도지사 등의 발언) 제48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49조(중기재정계획 등의 보고) 제50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제51조(회의록의 작성)
제4장 의원	제17조(등록) 제18조(의석배정) 제19조(선서) 제20조(품위유지 의무) 제21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22조(청가 및 결석) 제23조(의원의 사직)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52조(경호) 제53조(회의의 질서유지) 제5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제55조(방청의 허가) 제56조(녹음·녹화 등)
		제7장 질서 및 경호	

## 5.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lt;표 3-4&gt;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6장 발언	제41조(발언 허가) 제42조(발언 장소) 제43조(발언의 계속) 제44조(의제 외 발언 금지) 제45조(발언횟수 제한) 제46조(5분 자유발언) 제47조(발언시간 제한)
	제2조(의회 지위와 기본방향)		
	제3조(의회 운영 원칙) 제4조(의정활동 원칙)		
제2장 의원	제5조(등록) 제6조(의석배정) 제7조(선서) 제8조(품위유지 의무) 제9조(청가 및 결석) 제10조(사직)	제7장 시장 등의 출석답변	제48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49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제50조(시정질문) 제51조(서면질문) 제52조(긴급현안질문) 제53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54조(시장 등의 발언)
제3장 회의 운영	제11조(연간 회의일수) 제12조(회기) 제13조(정례회) 제14조(정례회 심의사항) 제15조(회의록)		
제4장 의회의 기관 등	제16조(의장) 제17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8조(임시의장) 제19조(의장·부의장 선거) 제20조(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21조(의장·부의장 임기) 제22조(의장·부의장 사임) 제23조(의장·부의장 겸직 제한) 제24조(사무처)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	제25조(교섭단체 구성) 제26조(위원회 설치) 제27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28조(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 제29조(상임위원회 위원) 제30조(상임위원 임기) 제31조(상임위원장) 제32조(특별위원회) 제33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34조(위원 선임과 개선) 제35조(위원장 직무) 제36조(부위원장) 제37조(소위원회) 제38조(위원 아닌 의원 발언 청취) 제39조(전문위원과 공무원) 제40조(전문가 위촉)	제8장 질서와 경호 등	제55조(질서유지) 제56조(경호) 제57조(회의장 출입 제한 등) 제58조(방청) 제59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제9장 의원 연구활동 및 시민참여 등	제60조(연구활동) 제61조(연수) 제62조(정책네트워크) 제63조(입법·법률고문) 제64조(청원 처리) 제65조(공청회) 제66조(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	

## 6.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5>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장 의원	제12조(의원의 사명) 제13조(의원의 역할) 제14조(윤리와 품위의 유지) 제15조(비용 추계)
제2장 도민	제4조(도민의 권리)		
제3장 의회	제5조(의회의 사명) 제6조(의회의 역할) 제7조(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제10조(인사청문회) 제11조(의회사무처)	제5장 의회와 도지사 등과의 관계	제16조(도지사, 교육감과의 관계) 제17조(감시 및 평가) 제18조(의회에 대한 설명) 제19조(의회의 예산) 제20조(시정요구 등)

## 7.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6>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의회운영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6조(교섭단체의 구성) 제27조(위원회의 설치) 제28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29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0조(상임위원회 위원) 제31조(상임위원의 임기) 제32조(상임위원장) 제33조(특별위원회)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36조(위원장의 직무) 제37조(부위원장) 제38조(소위원회) 제39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40조(전문가의 활용) 제41조(입법·법률고문)
	제2장 회의운영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6조(의회 운용 기본일정) 제7조(회기운영) 제8조(정례회 집회일) 제9조(정례회 및 임시회 심의안건) 제10조(개회식)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 제12조(의장·부의장 선거)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14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5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6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제17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제18조(사무처)
제4장 의원	제19조(등록) 제20조(의석배정) 제21조(선서) 제22조(품위유지 의무) 제23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24조(청가 및 결석) 제25조(의원의 사직)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42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제43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제44조(도정 등에 관한 질문) 제45조(긴급현안질문)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제47조(도지사 등의 발언) 제48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49조(회의록의 작성)
		제7장 질서 및 경호	제50조(경호) 제51조(회의의 질서유지) 제5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제53조(방청의 허가) 제54조(녹음, 녹화 등)

## 8.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7>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의회운영원칙) 제4조(의정활동원칙)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35조(상임위원회 설치) 제36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37조(상임위원회 위원) 제38조(상임위원의 임기) 제39조(상임위원장) 제40조(특별위원회) 제41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42조(위원의 선임) 제43조(위원장의 직무) 제44조(간사) 제45조(직무대리) 제46조(소위원회)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6조(회기) 제7조(집회일) 제8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9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10조(개회식) 제11조(개회 및 폐회) 제12조(개의) 제13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휴회) 제15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 등)		제6장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제19조(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제20조(임시의장의 직무 및 선거) 제21조(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제22조(사무국)	제7장 질서 및 경호	제54조(경호) 제55조(회의의 질서유지) 제5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57조(방청의 허가) 제58조(녹음 및 녹화 등)
제4장 의원	제23조(등록) 제24조(의석배정) 제25조(선서) 제26조(청가 및 결석) 제27조(의원의 사직) 제2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2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30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31조(의정활동비 지급) 제3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제33조(겸직신고) 제34조(영리행위의 제한)		

## 9.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의회운영원칙) 제4조(의정활동원칙)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제30조(상임위원회의 소관)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제33조(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34조(상임위원장) 제35조(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제36조(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 제37조(특별위원회) 제3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제4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41조(위원의 선임) 제42조(위원장의 직무) 제43조(부위원장) 제44조(소위원회) 제45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46조(전문가의 활용)
제2장 의원	제5조(등록) 제6조(의석배정) 제7조(선서) 제8조(의원의 청가와 결석) 제9조(의원의 사직) 제10조(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 제출) 제1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3조(자격심사에 관한 본회의 의결)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4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16조(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제17조(정견발표) 제18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9조(임시의장의 선거) 제2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21조(사무국) 제22조(의원연구단체)	제7장 질서와 경호 등	제54조(경호) 제55조(회의의 질서유지) 제56조(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제5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58조(방청) 제59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제4장 회기운영	제23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4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25조(회기) 제26조(정례회의 집회일) 제27조(정례회의 안건) 제28조(개회식)		

## 제2절 국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 1. 본 절의 개요

- ‘제2절 국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는 ①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② 미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③ 영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 우선, ①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는 다시 ㉠ 「가나가와현의회 기본조례」, ㉡ 「오이타시의회 기본조례」, ㉢ 「미에현 이가시의회 기본조례」, ㉣ 「나고야시의회 기본조례」, ㉤ 「교토부의회 기본조례」 등으로 구별하여 파악하였음.
- 다음으로, ② 미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역시 ㉥ 「뉴욕시의회 자치법규」, ㉦ 「샌디에고시의회 자치법규」, ㉧ 「로스엔젤레스시의회 자치법규」, ㉨ 「산호세시의회 자치법규」, ㉩ 「보스톤시의회 자치법규」 등으로 나누어 이해하였음.
- 마지막으로 ③ 영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또한 ㉪ 「에딘버러시의회 의사규정」, ㉫ 「글래스고우시의회 및 위원회 의사규정」, ㉬ 「버밍햄시의회 규약」, ㉭ 「글로스터시의회 규약」, ㉮ 「맨체스터시의회 규약」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음.

### 2.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 지방의회 주도 의회 기본조례 제정 확산
  - 2006년 5월 18일 가결, 시행된 구리야마정(栗山町) 의회 기본조례와 2006년에 가결, 시행된 미에현(三重縣) 의회 기본조례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말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구리야마현과 미에현의 의회 기본조례는 이후 일본의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롤모델을 제시함.<sup>5)</sup>
  -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특성은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개혁이 완성되고 지방분권이 정립된다는 인식이 강함. 또한 중앙정부에 대항하려는 자세, 의원들 사이의 토의나 주민참여, 의회의 정책입안에 중점.
- 일본 지방의회 기본조례 추이와 내용
  - 일본에서 처음으로 구리야마정(栗山町)의회 기본조례(2006년 5월 18일 가결, 2006년 5월 18일 시행)와 미에현(三重縣)의회 기본조례(2006년 12월 20일 가결, 2006년 12월 26일 시행)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말 8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이들 구리야마정과 미에현의 의회 기본조례는 그 목적이 의회와 주민의

5) 임경호, “지자체헌법으로서 자치기본조례의 제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의정」 11(11) (2009), pp. 38-59.

의사소통을 항상 유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의회가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기 위한 것임. 그리고 ‘의회보고회’ 등 구체적인 실현수단도 기본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이들 두 의회 기본조례는 의회는 주민의 신탁을 받아 활동하는 기관이란 자각 아래서 그 책무를 이행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됨.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구리야마정의 의회기본조례는 의원들 사이의 토론에 의해 자치단체 정책의 논점이나 쟁점을 주민에게 명확히 알리는 정보공개를 중시하고 있음. 더구나 의회에 대한 주민 참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 말하자면, 의회와 주민의 관계를 중시한 기본조례인 것임. 그러나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을 기본조례에서 의회규칙보다 전향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음. 즉 의원들 사이의 토론의 방법이나 주민참여를 촉진하려면 의회규칙을 수정해도 될 것인데 일부러 의회기본조례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의회규칙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개정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 하지만 구리야마정의 의회기본조례는 일본의회개혁의 시책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다음 표는 일본의 의회 기본조례에 대한 규정내용의 전개를 나타낸 내용임.

<표 3-9> 일본 의회 기본조례의 규정 내용

			06-08년(31곳)		2009년(56곳)		06-09년(87곳)		
			규정	%	규정	%	규정	%	
개혁 기본 항목	시민 참가	참고인, 공청회	23	74.2	49	87.5	72	82.8	
		진정, 민원의 법적 의미	13	41.9	16	28.6	29	33.3	
		진정자의 설명기회	14	45.2	20	35.7	34	39.1	
		주민, NPO 등과 의견교환	24	77.4	42	75.0	66	75.9	
		의회보고회	13	41.9	35	62.5	48	55.2	
	의원 토론	의원간토론	30	96.8	51	91.1	81	93.1	
		일문일답	21	67.7	43	76.8	64	73.6	
		단체장의 반문권	20	64.5	44	78.6	64	73.6	
	정보 공개	위원회의 공개원칙	22	71.0	43	76.8	65	74.7	
		모든 회의의 원칙공개	13	41.9	30	53.6	43	49.4	
		개별의원의 찬반공개	9	29.0	18	32.1	27	31.0	
	의회 기능	정책 심의	정책정보 제시	20	64.5	48	85.7	68	78.2
			정책정보의 내용	19	61.3	42	75.0	61	70.1
			문서질문	3	9.7	15	26.8	18	20.7
			정책검토조직	10	32.3	21	37.5	31	35.6
의회 권한		의결책임	3	9.7	6	10.7	9	10.3	
		의결사항의 추가	12	38.7	24	42.9	36	41.4	
		설명책임	21	67.7	52	92.9	73	83.9	
전문 성	보좌 기관	부속기관	3	9.7	4	7.1	7	8.0	
		조사기관	5	16.1	8	14.3	13	14.9	
		의회사무국 기능 확충	27	87.1	50	89.3	77	88.5	
	연수 규정	의회의 연수	23	74.2	43	76.8	66	75.9	
		의원의 연수	9	29.0	11	19.6	20	23.0	
평가, 검토	의회개혁추진조직		5	16.1	6	10.7	11	12.6	
	기본조례 평가, 재검토		26	83.9	54	96.4	80	92.0	

□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회 기본조례

○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0>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4장 현민(縣民)과 현(縣)의회	제11조(현민(縣民) 참가의 추진 등) 제12조(공청 홍보 기능의 충실)
제2장 의원	제3조(의원의 사명) 제4조(의원의 역할) 제5조(의원과 회파) 제6조(윤리 등의 유지)	제5장 현(縣)의회와 지사 등의 관계	제13조(지사 등과의 관계) 제14조(질문 등의 충실) 제15조(현(縣)의회에의 설명 등) 제16조(지사 등의 반문)
제3장 현(縣)의회	제7조(현(縣)의회 의 사명) 제8조(현(縣)의회 의 역할) 제9조(현(縣)의회 의 운영) 제10조(현(縣)의회 의 기능 강화 등)	제6장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조례의 재검토)

□ 오이타시(大分市)의회 기본조례

○ 「오이타시(大分市)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1> 「오이타시(大分市)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목적	제1조	제6장 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제2장 의회 및 의원의 활동 원칙	제2조(의회의 활동 원칙) 제3조(의원의 활동 원칙) 제4조(회파)	제7장 정치윤리	제12조
		제8장 정무조사비	제13조
제3장 시민과 의회의 관계	제5조	제9장 의원의 정수 및 의원보수	제14조(의원정수) 제15조(의원보수)
제4장 시장 등과 의회의 관계	제6조(시장 등과의 관계의 기본원칙) 제7조(일문일답에 의한 질의 응답 등) 제8조(정책 등의 감시 및 평가) 제9조(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의 정책설명 자료의 작성)	제10장 의회 및 의회사무국의 체제 정비	제16조(의원정책연구회 및 의회활성화 추진 회의) 제17조(의원연수의 충실) 제18조(의회홍보의 충실) 제19조(의회사무국의 체제 강화) 제20조(의회도서관)
제5장 자유토의에 의한 합의 형성	제10조	제11장 최고 규범성	제21조(최고규범성) 제22조(의회 및 의원의 책무)

□ 미에현 이가시(三重縣伊賀市)의회 기본조례

○ 「미에현 이가시(三重縣伊賀市)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2> 「미에현 이가시(三重縣伊賀市)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장 위원회의 활동	제13조(위원회의 활동)
제2장 의회 및 의원의 활동원칙	제3조(의회의 활동원칙) 제4조(의원의 활동원칙) 제5조(회파)	제7장 정무조사비	제14조(정무조사비의 집행 및 공개)
제3장 시민과 의회와의 관계	제6조(시민참여 및 시민과의 제휴) 제7조(의회보고서)	제8장 의회 및 의회사무국의 체제정비	제15조(의원연수의 충실강화) 제16조(의회사무국의 체제 정비) 제17조(의회 도서실의 이용) 제18조(의회광보의 충실)
제4장 의회와 행정과의 관계	제8조(의원과 시장 등 집행기관과의 관계) 제9조(의회 심의에 있어서의 논점정보의 형성) 제10조(예산 및 결산에서의 정책 설명)	제9장 의원의 정치윤리, 신분 및 의무	제19조(의원의 정치윤리) 제20조(의원정수) 제21조(의원보수)
제5장 자유토의의 보장	제11조(의회의 합의 형성) 제12조(정책토론회)	제10장 최고규범성과 재검토 절차	제22조(최고규범성) 제23조(재검토 절차)

### □ 나고야시의회 기본조례

○ 「나고야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3> 「나고야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의회의 역할 및 활동 원칙) 제3조(의원의 활동 원칙)	제4장 의회의 운영	제9조(회의의 운영 원칙) 제10조(회기 등) 제11조(위원회 활동) 제12조(질의응답의 기본 원칙) 제13조(회파의 자리 매김) 제14조(정책 입안 기능 및 조사 기능의 강화) 제15조(도서관의 충실)
제2장 시민과 의회	제4조(시민참가의 촉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의 반영) 제5조 제6조(정보의 공개)	제5장 의원 정수·의원 보수 등	제16조(의원 정수 및 의원 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제17조(정무 조사비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제3장 의회와 시장	제7조(시장등과의 관계) 제8조(예산 등에 대한 의회의 역할)		

### □ 교토부의회 기본조례

○ 「교토부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4> 「교토부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5장 의회의 운영 등	제15조(의회의 운영의 원칙) 제16조(본회의) 제17조(위원회) 제18조(심의회 충실) 제19조(의회의 의사의 발신) 제20조(조사 연구)
제2장 의회 및 의원의 활동의 원칙	제3조(의회의 사명) 제4조(의회활동의 원칙) 제5조(의원의 사명) 제6조(의원활동의 원칙) 제7조(회파)	제6장 의회 활동의 기반	제21조(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제22조(의회의 기능의 강화) 제23조(의회 사무국) 제24조(의회 도서관)
제3장 부민과 의회	제8조(부민과 의회와의 관계) 제9조(홍보·광청기능의 충실과 부민의 의견) 제10조(투명성의 향상)	제7장 보칙	제2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26조(조례의 재검토)
제4장 의회와 지사 등	제11조(의회와 지사와의 관계) 제12조(사무 사업 등의 점검, 감시 및 평가) 제13조(정책의 제언 및 제안) 제14조(심의회에 관한 자료의 청구 등)		

### 3. 미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 □ 뉴욕(New York) 시의회 자치법규

○ 「뉴욕(New York)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5> 「뉴욕(New York)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1장 시의회 소집	1.00 정기와 특별 회기	5장 서기와 직원 - 임무	5.00 의사록 5.10 공공 공개 5.20 의사일정 5.30 확인서 5.40 기록 5.50 규칙과 도시 헌장 5.60 경호관 임무 부여 5.70 경호관: 부채시 5.80 경호관: 임무 5.90 시 서기에 대한 문서발송
2장 의회 의장 :기타 공무원	2.00 의회 의장 : 기타 공무원 2.05 의장실 2.10 의제 2.20 의회 의사당 2.25 의회 라운지 2.30 전체위원회 2.40 인사 및 회계 보고 2.50 제안된 의회 예산 2.60 시의회 구성원의 운영비용 2.65 특정 광고에 대한 운영비용의 기금 사용 금지 2.70 차별 및 회롱에 대한 정책 2.80 의회 구성원의 자격요건		6장 지방법과 결의안 제출
3장 주재임원	3.00 주재임원 요건 3.10 질서, 품격 3.15 이동전화 사용 금지 3.20 순서에 의한 의원 호출 3.30 항의	7장 위원회	7.00 위원회 지명 7.10 위원회 집행부 7.20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 7.30 위원회 임무 7.40 위원회 직원 7.50 위원회 회의 7.60 공공 방청 7.65 이동전화 이용 금지 7.70 투표 7.80 시의회 위원회의 보고 7.90 위원회 활동 7.100 발기인의 특권 7.110 위원회 집행부의 권리 7.120 위원회 회의의 참여
4장 다수당과 소수당 대표	4.00 다수당 대표 4.10 소수당 대표	8장 정기회의 - 절차	8.10 흠률 청원 8.20 의회 회의실에서의 입장 허가 8.21 정기회의시 위원회 입장 허가 8.30 명단 호출 순서 8.40 투표 8.50 결의안 심의

□ 샌디에고(San Diego) 시의회 자치법규

○ 「샌디에고(San Diego)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6> 「샌디에고(San Diego)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장 구분
Sec 11: 입법권 Sec 11.1: 입법권 - 위임불가	Sec 15: 정족수
Sec 12: 시의회 Sec 12.1: 의원 급료	Sec 16: 법령 및 결의안의 인증 및 출판
Sec 13: 의회 회의	Sec 17: 기타 법령의 효과
	Sec 20: 법령의 법전 편찬
Sec 14: 의회 규칙	Sec 21: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시의회 자치법규

○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7>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장 구분
1장: 시 공무원의 선거와 임명	8장: 투표
2장: 공공 공지, 출석 및 논평	9장: 특별회의
3장: 주재임원	10장: 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
4장: 의회 회의 일시와 순서 및 정족수	11장: 시 규칙
5장: 의회 토론 및 시간 제한	12장: 임무부여
6장: 시 위원 및 공무원의 지명 및 해임	13장: 로스엔젤레스 시의회에 대한 견책 절차
7장	

□ 산호세(San Jose) 시의회 자치법규

○ 「산호세(San Jose)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8> 「산호세(San Jose)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장 구분
Sec 400: 의회의 보장된 권한	Sec 409: 의석이나 시장직이 공석일 경우
Sec 401: 의회의 구성	Sec 410: 공석의 보궐
Sec 402: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 제한	Sec 411: 시의회 : 행정 사무에 대한 간섭 Sec 411.1: 부서장, 정책 대상, 고용의 동의
Sec 403: 선거구	
Sec 404: 의회의원 및 시장의 자격	Sec 412 의회 회의
Sec 405: 자격 심사	Sec 413 시민참여
Sec 406: 임기중 타 사무실 및 직원의 보유	Sec 414 정족수
Sec 407: 시의회 : 보수	Sec 415 규칙과 절차
Sec 408: 변제	Sec 416 조사권한

□ 보스톤(Boston) 시의회 자치법규

○ 「보스톤(Boston)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9> 「보스톤(Boston) 시의회 자치법규」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장 구분
1항: 회의 시기	16항: 발의안 제출
2항: 정족수	17항: 발의안 철회
3항: 주재 임원	18항: 위원회 할당과 조치
4항: 의장 결정에 대한 항의	19항: 다수결
5항: 휴회	20항: 의원의 부재
6항: 질문결정	21항: 위원회 임명, 구조와 역할
7항: 질문분할	22항: 시의회의 행동규정
8항: 투표에 대한 의혹 제기	23항: 연설 제한 시간
11항: 의석 부재	24항: 의원의 품행
12항: 의제	25항: 의회장의 공공방청
13항: 시 서기의 임무	26항: 의회장의 직원
14항: 집무와 토론의 순서	27항: 의회장의 언론실
15항: 발의의 순서	28항: 조례의 채택

#### 4. 영국 지방의회 기본조례 사례

##### □ 에딘버러(Edinburgh) 시의회 의사규정

○ 「에딘버러(Edinburgh) 시의회 의사규정」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20> 「에딘버러(Edinburgh) 시의회 의사규정」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서문	1조 정의 2조 시행시기	시의회 회의	17조 정회 18조 토론의 질서 19조 연설 시간 20조 의원에 의한 의사방해 및 공격 행위 21조 결의안 철회 22조 회의 의사록 23조 질의 25조 발의에 대한 서명 26조 위원회 제출용 발의안 의회 상정 27조 투표방식 28조 투표하기 29조 발의 방식 30조 공직자 선거, 지명 및 임명
	3조 선거후 첫 의회 회의 4조 시장과 부의장 - 임기 5조 보통 회의 6조 특별 회의 7조 회의 공고 8조 의회의장 9조 의회출석 10조 의회 출석 실패 11조 정족수 12조 투표 정족수 미달 13조 대중과 언론 접촉 15조 의사 진행 순서 16조 시장 - 권한과 임무		

##### □ 글래스고우(Glasgow) 시의회 및 위원회 의사규정

○ 「글래스고우(Glasgow) 시의회 및 위원회 의사규정」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21> 「글래스고우(Glasgow) 시의회 및 위원회 의사규정」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장 구분
1조 시의회의 정기 및 특별 회의	14조 시의회의 결정
2조 회의 소집	15조 시의회의 궁극의 권한
3조 정족수	16조 의사규정의 유예
4조 회의에서 거론되는 업무사항	17조 연례 예산평가
5조 시장 - 권한과 임무- 캐스팅 보트	18조 이해관계 신고
6조 시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의원	19조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 임무
8조 발의의 공고	20조 서면제출
9조 연설	21조 지역 또는 특별 문제에 관련된 위원회의 비회원 호출
10조 이의제기	22조 위원회 투표 방식
11조 정회를 위한 발의	23조 의사 기록
12조 투표 방식	24조 존속되어야 할 의사규정
13조 공석의 충원	25조 의사규정의 변형 및 파기

□ 버밍햄(Birmingham) 시의회 규약

○ 「버밍햄(Birmingham) 시의회 규약」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22> 「버밍햄(Birmingham) 시의회 규약」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1조 시의회 규약	1.1 시의회의 권한 1.2 규약 1.3 규약의 목적	3조 시민과 시의회	3.1 시민의 권리 3.2 시민의 책임
2조 시의회 멤버	2.1 구성 및 자격 2.2 시의원의 선거와 임기 2.3 전체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2.4 품행	4조 전체 시의회	4.1 개념 4.2 전체 시의회에 부여된 기능 4.3 시의회 회의
		5조 시의회 의장직	5.1 시장의 역할과 기능 5.2 시장과 부시장의 제휴

□ 글로스터(Gloucester) 시의회 규약

○ 「글로스터(Gloucester) 시의회 규약」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23> 「글로스터(Gloucester) 시의회 규약」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1조 규약	1.01 시의회의 권한 1.02 규약 1.03 규약의 해석과 접점	3조 시민과 시의회	3.01 시민의 권리 3.02 시민의 책임
2조 시의회 구성원	2.01 구성과 자격 2.02 공직의 선거와 임기 2.03 전체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2.04 품행 2.05 의원수당	4조 전체 시의회	4.01 정의 4.02 전체 시의회의 기능 4.03 시의회 회의 4.04 기능을 위한 책무
		5조 시의회 의장	5.01 시장(시의회 의장)의 역할과 기능

□ 맨체스터(Manchester) 시의회 규약

○ 「맨체스터(Manchester) 시의회 규약」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lt;표 3-24&gt; 「맨체스터(Manchester) 시의회 규약」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1조 규약	1.1 시의회의 권한 1.2 규약 1.3 규약의 목적 1.4 규약의 점검	4조 전체 시의회	4.1 의미 4.2 전체 시의회의 기능 4.3 시의회 회의 4.4 기능에 대한 책무
2조 시의회의 구성원	2.1 구성과 자격 2.2 시의원의 선거와 임기 2.3 전체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2.4 품행 2.5 의원수당	5조 시의회의 의장	5.1 시장의 역할과 기능 5.2 시장과 부시장은 매년 연례회의에서 선출된다. 5.3 위의 조항 5.2와는 상관없이 의회의 정치그룹의 지도자는 정치그룹이 차기 년도의 시장과 부시장을 결정하는 의정서에 동의할 수 있다.
3조 시민과 시의회	3.1 시민의 권리 3.2 시민의 책무		



## | 제4장 ·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사례 |

### 제1절. 수원시의회 일반조례

#### 1. 본 절의 개요

□ ‘제1절 수원시의회 일반조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 ① 수원시의회 일반조례 현황, ②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의 조문 구성, ③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의 조문 구성, ④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⑤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⑥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⑦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의 조문 구성, ⑧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⑨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⑩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⑪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의 조문 구성, ⑫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의 조문 구성, ⑬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조문 구성, 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조문 구성, ⑮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⑯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 기 제정된 수원시의회 일반조례의 사례들을 전반적, 개괄적으로 이해한 후, 각 기본조례의 장 구분, 조문 배열, 조문의 핵심 내용 등을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2. 수원시의회 일반조례 현황

□ 현행 수원시의회 일반조례의 현황을 개관(공포일자, 공포번호 順)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1> 수원시의회 일반조례 현황 개관(공포일자, 공포번호 順)

번호	조례명칭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
1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3494호	2016.2.16.	제정
2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3495호	2016.2.16.	일부개정
3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496호	2016.2.16.	일부개정
4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492호	2016.1.8.	일부개정

5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413호	2015.7.31.	일부개정
6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제3369호	2015.2.12.	일부개정
7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353호	2015.1.6.	일부개정
8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356호	2015.1.6.	일부개정
9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3230호	2013.7.31.	제정
10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제3159호	2012.11.14.	일부개정
11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제3160호	2012.11.14.	일부개정
12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161호	2012.11.14.	일부개정
13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162호	2012.11.14.	일부개정
14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제3054호	2011.9.27.	제정
15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012호	2011.4.5.	일부개정

### 3.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위원회와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구성

-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2>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연구활동 범위 제4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	제3장 연구활동 등록 등	제13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제14조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제15조 등록취소 제16조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제17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18조 시행규칙
	제2장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 4.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구성

-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3>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조 목적 제2조 회의총일수 제3조 회기 제4조 정례회 개최		제5조 정례회 집회 제6조 정례회 심의 제7조 준용규정

#### 5.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수원시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구성

-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4>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조 목적 제2조 감사 제3조 조사 제4조 감사, 조사위원회 제5조 소위원회 등 제6조 사무보조자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1조의2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제12조 증언 등의 거부 제13조 증언 등의 출석요구 등 제14조 증언선서		제15조 증언범위, 방식 제16조 증인의 보호 제17조 여비 등 비용지급 제18조 불출석 등의 통보 제1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20조 공개의 원칙 제21조 제척과 회피 제22조 주의의무 제23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24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25조 징계 제26조 고발 제26조의 2 과태료 제27조 준용규정 제28조 의회규칙

## 6.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구성

-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5>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조 목적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3조 월정수당 제4조 여비지급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제7조 여비 지급기준 제8조 의회소제지 내에서의 출장 시의 여비 제9조 준용규정

## 7.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 목적

-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위원회와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구성

-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6>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조 목적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7조 상임위원장		제8조 특별위원회 제9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10조 위원의 선임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간사 제13조 소위원회 제14조 준용규정

## 8.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 □ 목적

-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구성

-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7>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조 목적 제2조 포상대상 제3조 포상권자 제4조 포상의 종류 제5조 표창장 제6조 감사장 제7조 상장 제7조의2 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 포상절차 제10조 공적예비심사 제11조 공적심사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 포상시기 제14조 이증 포상금지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 시행규칙

## 9.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에 따라 수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 □ 구성

-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8>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조 목적		제2조 범위

## 10.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의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구성

-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9>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3조 심의회 회의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 11.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 목적

-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구성

-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10>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0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0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등 제11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2조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제6장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2조 구성 및 임기 제23조 위원장 제24조 위원의 제척 회피 제25조 회의 제26조 간사 제27조 의견청취 등 제28조 의결사항 통지 제29조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제30조 회의록 제31조 자문료 지급 제32조 운영세칙 제33조 행동강령의 운영, 처리 등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공 토의 조성	제13조 국내의 활동 제한 등 제14조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제15조 영리행위의 신고 제16조 금전 거래 등 제한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제18조 성희롱 금지		

## 12.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 □ 목적

-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구성

-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11>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조 목적 제2조 종류 제3조 인영의 내용 제4조 규격 제5조 발급 및 등록		제6조 관리 제7조 날인위치 제8조 재발급 및 폐기 제9조 공고

### 13.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 목적

-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와 외국도시 의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우호를 맺고 경제, 사회, 문화, 체육교류를 증진시켜 수원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구성

-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12>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제3조 구성 제4조 기능 제5조 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6조 임원의 직무 제7조 회의 제8조 실무위원회 제9조 재정 제10조 운영세칙

### 14.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 목적

-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구성

-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lt;표 4-13&gt;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조 목적 제2조 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 직무		제4조 소송비용 및 수당 제5조 사건 실적부 비치 제6조 시행규칙

## 15.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함.

### □ 구성

-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lt;표 4-14&gt;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 준수 제3조 품위유지 제4조 청렴의무 제5조 직권남용 금지 제6조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제7조 기밀의 누설금지		제8조 사례금 제9조 겸직금지 및 신고 제10조 회피의무 제11조 재산신고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3조 회의출석 제14조 영리행위의 제한

## 16.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 □ 목적

-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수원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구성

-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15>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조 목적 제2조 범위 제3조 대상자 제4조 장의위원회 제5조 간사		제6조 장의기간 등 제7조 장의비용 제8조 조기계양 제9조 협조요청

## 17.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구성

-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16>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조 목적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제3조 사무국장		제4조 전문위원 제5조 직원의 정원 제6조 시행규칙

## 제2절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

### 1. 본 절의 개요

- ‘제2절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은 ①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 현황과 ②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는바, 기 제정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의 장 구분, 조문 배열, 조문의 핵심 내용 등을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다만, 본 절에서는 지면 관계상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제외한 나머지, 즉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 현황에서 제시된 총 15개의 법령들을 수록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이유는

‘제5장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 첫째,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제외한 6개의 의회규칙, 및 8개의 규정 등은 이관하지 아니하였고, ㉡ 둘째,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지방자치법에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즉 ㉢ 제43조,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6조의2,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1조,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5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9조,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이관하지 아니하였으며, ㉧ 셋째,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그 성격상 기본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 제1장 총칙의 일부 조항, 즉 제2조(등록), 제3조(의석배정), 제4조(개회식), 제5조(선서),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7조(청가 및 결석) 등, ㉩ 제2장 의장과 부의장의 전부 조항, ㉪ 제6장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8장 질서의 일부 조항, 즉 제73조 경호,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76조 방청의 허가, 제55조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임.

## 2.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 현황

- 현행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의 현황을 개관(공포일자, 공포번호 順)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17> 수원시의회 규칙 및 규정 현황 개관(공포일자, 공포번호 順)

번호	규칙, 규정(훈령)명칭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
1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호	2012.11.15.	일부개정
2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25호	2012.11.15	일부개정
3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28호	2013.7.31.	제정
4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9호	2014.4.30.	일부개정
5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2호	2015.10.8.	일부개정
6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33호	2016.1.8.	일부개정
7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4호	2015.6.48.	제정
1	수원시의회 자료열람·대출관리 규정	제2호	1991.6.12.	제정

2	수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7호	1992.8.20.	전문개정
3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2호	2009.12.4.	전문개정
4	수원시의회 공청회 운영 규정	제16호	2012.6.18.	제정
5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20호	2014.7.31	일부개정
6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	제21호	2015.1.6.	전문개정
7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2호	2015.2.12	제정
8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제24호	2015.6.5.	일부개정

### 3.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 목적

-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회의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구성

-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18>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등록 제3조 의석배정 제4조 개회식 제5조 선서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3장 회의, 제6절 회의록	제45조 회의록의 작성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47조 자구의 바로잡음과 이의의 결정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3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 회기 제13조 개의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15조 휴회		
제3장 회의, 제2절 의사일정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3장 회의,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 제19조의 2 조례안 예고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20조의2 특별위원회 회부 제20조의3 심사기간 제21조 동회의 의제성립 제22조 수정동의 제23조 의안, 동회의 철회 제24조 번안 제25조 안전심의 제25조의2 재회부 제26조 의안의 정리 제27조 의		
제3장 회의, 제4절 발언	제28조 발언의 허가 제29조 발언의 장소 제30조 발언의 계속 제3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31조의2 5분 자유발언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제34조 보충보고 제35조 토론의 통지 제36조 의장의 토론참가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3장 회의, 제5절 표결	제38조 표결의 선포 제39조 표결의 참가 제40조 의사변경의 금지 제41조 표결방법 제42조 투표절차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4조 표결결과 선포	제4장 위원회	제49조 의사일정과 개최일시 제50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1조의2 위원회의 제안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제53조 위원의 발언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55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제55조의2 연석회의 제56조 공청회 제5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제59조 위원회 회의록 제60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 예산안 심의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3조 예산의 의결 제6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제65조 결산의 심사
		제6장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담변	제66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66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 제67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제68조 시장 등의 발언

	<p>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p> <p>제69조 사직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p>
	<p>제8장 질서</p> <p>제73조 경호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76조 방청의 허가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79조 방청의 제한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1조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p>
	<p>제9장 징계</p> <p>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84조 의사의 비공개 제85조 심문 및 변명 제8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87조 방청의 신청</p>

## Ⅰ 제5장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작성 Ⅰ

### 제1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설계 원칙

#### 1. 본 절의 개요

- ‘제1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설계 원칙’은 ①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원칙, ②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방안, ③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원칙과 방안의 조응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 우선, ①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원칙에서는 ㉠ 의회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의 명시: 지방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 의회의 포괄적, 기본적 사항의 명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포괄적,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는 것, ㉢ 기존 및 향후 의회 관련 조례의 정렬: 산재해 있는 의회 관련 조례를 정렬함과 동시에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 등 크게 세 가지의 설계 원칙을 제시하였음.
- 다음으로, ②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방안에서는 ㉣ 제1안: 신설 기본 조문만으로 구성하는 방안, ㉤ 제2안: 기존 조례 및 의회규칙을 전부 포괄하는 방안, ㉥ 제3안: 신설 기본 조문과 기존 조례 및 규칙 중 일부를 채택하는 방안, ㉦ 제4안: 제3안에 따르되 제1안 및 제2안의 의의를 포함하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③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원칙과 방안의 조응에서는 각 세 가지로 구성된 ①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원칙, ②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방안을 상호 조응시켰음.

#### 2.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원칙

-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원칙 구분
  -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제정 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음.

&lt;표 5-1&gt;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 제정 사례(제정일자 順)

구분	조례명	구성	시행일자	제정일자
광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총 7장, 64개조, 부칙	2016.3.24.	2013.1.10.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총 7장, 56개조, 부칙	2014.12.30.	2013.7.30.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총 9장, 66개조, 부칙	2015.2.15.	2014.6.30.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총 5장, 20개조, 부칙	2016.1.4.	2016.1.4.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총 7장, 54개조, 부칙	2016.1.29.	2016.1.29.
기초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총 7장, 58개조, 부칙	2015.4.1.	2014.8.1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총 7장, 59개조, 부칙	2015.5.6.	2015.5.6.

#### □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원칙 구분

-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원칙은 ① 의회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의 명시: 지방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② 의회의 포괄적, 기본적 사항의 명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의회 운영에 관한 포괄적,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는 것, ③ 기존 및 향후 의회 관련 조례의 정렬: 산재해 있는 의회 관련 조례를 정렬함과 동시에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2.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기본 방안

#### □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방안 구분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작성에 앞서 기존 지방의회 기본조례를 검토한 결과 ① 제1안: 신설 기본 조문만으로 구성하는 방안, ② 제2안: 기존 조례 및 의회규칙을 전부 포괄하는 방안, ③ 제3안: 신설 기본 조문과 기존 조례 및 규칙 중 일부를 채택하는 방안, ④ 제4안: 제3안에 따르되 제1안 및 제2안의 의의를 포함하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의 설계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 □ 제1안: 신설 기본 조문만으로 구성하는 방안

- 제1안: 신설 기본 조문만으로 구성하는 방안은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제정 사례 중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총 4장, 20개조, 부칙, 2016.1.4., 제정, 2016.1. 4., 시행)가 이에 해당되는바, 의회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의 명시라는 제1원칙에는 강점을 보이나, 의회의 포괄적, 기본적 사항의 명시라는 제2원칙에는 약점으로 보이며, 기존 및 향후 의회 관련 조례의 정렬이라는 제3원칙에는 매우 취약한 한계를 보임.

#### □ 제2안: 기존 조례 및 의회규칙을 전부 포괄하는 방안

- 제2안: 기존 조례 및 의회규칙을 전부 포괄하는 방안은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제정 사례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한 방안인바, 기존 및 향후 의회 관련 조례의 정렬이라는 제3원칙에는 강점을 보이나, 의회의 포괄적, 기본적 사항의 명시라는 제2원칙에는 약점으로 보이며, 의회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의 명시라는 제1원칙에는 매우 취약한 한계를 보임.
- 제3안: 신설 기본 조문과 기존 조례 및 규칙 중 일부를 채택하는 방안
  - 제3안: 신설 기본 조문과 기존 조례 및 규칙 중 일부를 채택하는 방안은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제정 사례 중 「경기도의회 기본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방의회 기본조례가 이에 해당되는바, 의회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의 명시라는 제1원칙, 그리고 의회의 포괄적, 기본적 사항의 명시라는 제2원칙, 기존 및 향후 의회 관련 조례의 정렬이라는 제3원칙을 골고루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짐.
- 제4안: 제3안에 따르되 제1안 및 제2안의 의의를 포함하는 방안
  - 제4안: 제3안에 따르되 제1안 및 제2안의 의의를 포함하는 방안은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제정에서 채택된 제1안 및 「경기도의회 기본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제정 과정에서 채택된 제3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미를 가지는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작성에서 채택된 방안임.

### 3.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원칙과 방안의 조응

-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원칙과 방안의 조응관계
  -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원칙과 방안의 조응관계는 아래의 표와 같음.

&lt;표 5-2&gt; 지방의회 기본조례 설계의 원칙과 방안의 조응관계

구분	제1방안: 신설 기본 조문만으로 구성	제2방안: 기존 조례 및 의회규칙을 전부 포괄	제3방안: 신설 기본 조문과 기존 조례 및 규칙 중 일부를 채택	제4방안: 제3안에 따르되 제1안 및 제2안의 의의를 포함
제1원칙: 의회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의 명시	강	약	중	강
제2원칙: 의회 포괄적, 기본적 사항의 명시	약	약	중	강
제3원칙: 기존 및 향후 의회 관련 조례의 정렬	약	강	중	강
국내사례: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해당 없음.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외 모든 지방의회 기본조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 제2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목차 설계

### 1. 본 절의 개요

- ‘제2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목차 설계’는 ①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 ② 국내 동위 법령과의 관계, ③ 국내 상위 및 동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목차 설계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 우선, ①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현행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의 조문 구성을 개관한 후, 양 법령 각각의 장 구분, 조문 배열, 조문의 핵심 내용 등을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다음으로, ② 국내 동위 법령과의 관계 역시 국내 동위 법령의 조문 구성 개관한 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등 국내 동위 법령 각각의 장 구분, 조문 배열, 조문의 핵심 내용 등을 구조적 측면에서 확인하였음.
  - 마지막으로 ③ 국내 상위 및 동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목차 설계에서는 ①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 및 ② 국내 동위 법령과의 관계 하에서 본 연구가 표방하는 전략적 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운데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목차를 설계하였음.

## 2.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

### □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의 조문 구성 개관

- 현행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의 조문 구성을 개관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3>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의 조문 구성 개관

관련법률	장 구분	조문 구분
국회법 (시행 2015.3.19., 총 16장, 169개조)	제1장 총칙	6개조: 목적 등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2개조: 회기 등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15개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등
	제4장 의원	9개조: 선서 등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39개조: 교섭단체 등
	제6장 회의	43개조: 개의 등
	제7장 회의록	4개조: 회의록 등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4개조: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임면통지 등
	제9장 청원	4개조: 청원서의 제출 등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3개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
	제11장 탄핵소추	5개조: 탄핵소추의 발의 등
	제12장 사직·퇴직·결원과 자격심사	8개조: 사직 등
	제13장 질서와 경호	10개조: 의장의 경호권 등
	제14장 징계	10개조: 징계 등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3개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등
	제16장 보칙	2개조: 기간의 기산일 등
	부칙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제5장 지방의원, 총 12절, 63개조)	제1절 조직	2개조: 의회의 설치 등
	제2절 지방의회의원	7개조: 의원의 임기 등
	제3절 권한	5개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
	제4절 소집과 회기	4개조: 정례회 등
	제5절 의장과 부의장	8개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등
	제6절 위원회	7개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7절 회의	10개조: 의사정족수 등
	제8절 청원	4개조: 청원서의 제출 등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5개조: 의원의 사직 등
	제10절 질서	4개조: 회의의 질서유지 등
	제11절 징계	4개조: 징계의 사유 등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3개조: 사무처 등의 설치 등

□ 「국회법」(시행 2015.3.19.)의 조문 구성

○ 현행 「국회법」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4> 「국회법」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당선통지 및 등록) 제3조(의석배정) 제4조(정기회) 제5조(임사회)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제6조(개회식)	제4장 의원	제24조(선서)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제27조(의원체포의 통지) 제28조(석방요구의 절차) 제29조(겸직 금지)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30조(수당·여비) 제31조 제32조(청가 및 결석)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7조(회기) 제8조(휴회)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9조(의장·부의장의임기) 제10조(의장의직무) 제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13조(임시의장)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16조(보궐선거) 제17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8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제21조(국회사무처) 제21조의2 제22조(국회도서관)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제23조(국회의경비)	제5장 교섭단체 ·위원회와 위원	제33조(교섭단체) 제34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제35조(위원회의 종류)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41조(상임위원장)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제43조(전문가의 활용) 제44조(특별위원회)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제50조(간사) 제51조(위원회의 제안) 제52조(위원회의 개최)
	제53조(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 제56조(본회의중 위원회의 개최) 제57조(소위원회)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제85조(심사기간)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p>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제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제60조(위원의 발언)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제62조(비공개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3조(연석회의)                  제63조의2(전원위원회)                  제64조(공청회)                  제65조(청문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7조(위원장의 보고)                  제68조(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제69조(위원회회의록)                  제70조(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제71조(준용규정)</p>		<p>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86조(체계·자구의심사)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8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제89조(동의)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제91조(변안)                  제92조(일사부재의)                  제3절 의사와 수정                  제93조(안건심의)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제94조(재회부)                  제95조(수정동의)                  제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97조(의안의 정리)                  제98조(의안의 이송)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                  제4절 발언                  제99조(발언의 허가)                  제100조(발언의 계속)                  제101조(보충보고)                  제102조(의제의 발언의 금지)                  제103조(발언횟수의 제한)                  제104조(발언원칙)                  제105조(5분자유발언)                  제106조(토론의 통지)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제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5절 표결                  제109조(의결정족수)                  제110조(표결의 선포)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제112조(표결방법)                  제113조(표결결과선포)</p>
<p>제6장 회의</p>	<p>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제72조(개의)                  제73조(의사정족수)                  제74조(산회)                  제75조(회의의 공개)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7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                  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제82조의2(입법예고)                  제83조(관련위원회회부)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제114조(기명·무기명투표절차)                  제114조의2(자유투표)</p>		<p>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제147조(발언방해등의 금지)                  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제151조(회의장출입의 제한)</p>
<p>제7장 회의록</p>	<p>제115조(회의록)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반포)</p>		<p>제13장 질서와 경호</p>
<p>제8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 위원과 질문</p>	<p>제119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                  제120조(국무위원등 의발언)                  제121조(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p>	<p>제13장 질서와 경호</p>	<p>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제147조(발언방해등의 금지)                  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제151조(회의장출입의 제한)</p>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3절 권한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0조(서류제출요구)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43조(회의규칙)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제71조(회의규칙) 제72조(회의록)
제4절 소집과 회기	제44조(정례회) 제45조(임사회)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제8절 청원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49조(의장의 직무)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52조(임시의장) 제53조(보궐선거)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제9절 의원의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제77조(의원의 사직) 제78조(의원의 퇴직) 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 제80조(자격상실의결) 제81조(결원의 통지)
제10절 질서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제11절 징계	제86조(징계의 사유) 제87조(징계의 요구)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3. 국내 동위 법령과의 관계

□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개관

○ 현행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을 개관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6>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개관(제정일자 順)

의회	장 구분	조문 구분
서울특별시 의회 (시행 2015.1.2., 총 7장, 64개조)	제1장 총칙	4개조: 목적 등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7개조: 연간 회의일수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9개조: 의장의 직무 등
	제4장 의원	8개조: 등록 등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20개조: 교섭단체의 구성 등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10개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등
	제7장 질서와 경호	6개조: 경호 등
충청남도의회	제1장 총칙	2개조: 목적 등

(시행 2014.12.30., 총 7장, 56개조)	제2장 회의운영	7개조: 연간 회의 총 일수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7개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등
	제4장 의원	7개조: 등록 등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19개조: 교섭단체의 구성 등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9개조: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등
	제7장 질서 및 경호	5개조: 경호 등
	광주광역시 의회 (시행 2015.2.15., 총 9장, 66개조)	제1장 총칙
제2장 의원		6개조: 등록 등
제3장 회의운영		5개조: 연간 회의일수 등
제4장 의회의 기관 등		9개조: 의장 등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		16개조: 교섭단체 구성 등
제6장 발언		7개조: 발언 허가 등
제7장 시장 등의 출석답변		7개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등
제8장 질서와 경호 등		5개조: 질서유지 등
제9장 의원 연구활동 및 시민참여 등		7개조: 연구활동 등
경기도의회 (시행 2016.1.4., 총 5장, 20개조)	제1장 총칙	3개조: 목적 등
	제2장 도민	1개조: 도민의 권리
	제3장 의회	7개조: 의회의 사명 등
	제4장 의원	4개조: 의원의 사명 등
	제5장 의회와 도지사 등과의 관계	5개조: 도지사, 교육감과의 관계 등
전라북도의회 (시행 2016.3.25., 총 7장, 54개조)	제1장 총칙	4개조: 목적 등
	제2장 회의운영	6개조: 연간 회의 총일수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8개조: 의장 등
	제4장 의원	7개조: 등록 등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16개조: 교섭단체의 구성 등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8개조: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등
	제7장 질서 및 경호	5개조: 경호 등
부천시의회 (시행 2015.4.1., 총 7장, 58개조)	제1장 총칙	4개조: 목적 등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13개조: 연간 회의 총일수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5개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등
	제4장 의원	12개조: 등록 등
	제5장 위원회와 위원	12개조: 상임위원회 설치 등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7개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등
	제7장 질서 및 경호	5개조: 경호 등
서울 강동구의회 (시행 2015.5.6., 총 7장, 59개조)	제1장 총칙	4개조: 목적 등
	제2장 의원	9개조: 등록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9개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등
	제4장 회기운영	6개조: 연간 회의 총일수 등
	제5장 위원회와 위원	18개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7개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등
	제7장 질서와 경호	6개조: 경호 등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9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0조(위원회의 설치) 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3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3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36조(상임위원장) 제37조(특별위원회) 제3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제4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4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42조(위원장의 직무) 제43조(부위원장) 제44조(소위원회) 제45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46조(전문위원과 공무원) 제47조(전문가의 활용) 제47조의2(공청회 등) 제48조(입법·법률고문)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제7조(회기)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제9조(십의)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제11조(개회식)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50조(시정질문) 제51조(시장 등에 대한 서면질문)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제53조(긴급현안질문) 제54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55조(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 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제57조(의회의 예산) 제58조(회의록)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2조(의장의 직무)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14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16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7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8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제19조(사무처) 제20조(정책연구위원회)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장 의원	제21조(등록) 제22조(의석배정) 제23조(선서)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제25조(의원의 사직)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27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8>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4조(교섭단체 구성)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제26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27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28조(상임위원회 위원) 제29조(상임위원의 임기) 제30조(상임위원장)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제32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조(윤리특별위원회)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36조(위원장의 직무) 제3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38조(부위원장) 제39조(소위원회) 제4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41조(전문가의 활용) 제42조(입법·법률고문)
제2장 회의운영	제3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4조(회기) 제5조(정례회의 집회일)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7조(정례회의 운영) 제8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제9조(개회식)		제43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제44조(도정에 대한 질문) 제45조(긴급 현안질문)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제47조(도지사 등의 발언) 제48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49조(중기재정계획 등의 보고) 제50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제51조(회의록의 작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0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11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3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4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제15조(사무처) 제16조(의정자문위원회)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4장 의원	제17조(등록) 제18조(의석배정) 제19조(선서) 제20조(품위유지 의무) 제21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22조(청가 및 결석) 제23조(의원의 사직)	제7장 질서 및 경호	

□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9>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6장 발언	제41조(발언 허가) 제42조(발언 장소) 제43조(발언의 계속) 제44조(의제 외 발언 금지) 제45조(발언횟수 제한) 제46조(5분 자유발언) 제47조(발언시간 제한)
	제2조(의회 지위와 기본방향)		
	제3조(의회 운영 원칙) 제4조(의정활동 원칙)		
제2장 의원	제5조(등록) 제6조(의석배정) 제7조(선서) 제8조(품위유지 의무) 제9조(청가 및 결석) 제10조(사직)	제7장 시장 등의 출석·답변	제48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49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제50조(서면질문) 제51조(서면질문) 제52조(긴급현안질문) 제53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54조(시장 등의 발언)
제3장 회의 운영	제11조(연간 회의일수) 제12조(회기) 제13조(정례회) 제14조(정례회 심의사항) 제15조(회의록)		
제4장 의회의 기관 등	제16조(의장) 제17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8조(임시의장) 제19조(의장·부의장 선거) 제20조(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21조(의장·부의장 임기) 제22조(의장·부의장 사임) 제23조(의장·부의장 겸직 제한) 제24조(사무처)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	제25조(교섭단체 구성) 제26조(위원회 설치) 제27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28조(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 제29조(상임위원회 위원) 제30조(상임위원 임기) 제31조(상임위원장) 제32조(특별위원회)	제8장 질서와 경호 등	제55조(질서유지) 제56조(경호) 제57조(회의장 출입 제한 등) 제58조(방청) 제59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제33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34조(위원 선임과 개선) 제35조(위원장 직무) 제36조(부위원장) 제37조(소위원회) 제38조(위원 아닌 의원 발언 청취) 제39조(전문위원과 공무원) 제40조(전문가 위촉)		

□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10>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장 의원	제12조(의원의 사명) 제13조(의원의 역할) 제14조(윤리와 품위의 유지) 제15조(비용 추계)
제2장 도민	제4조(도민의 권리)		
제3장 의회	제5조(의회의 사명) 제6조(의회의 역할) 제7조(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제10조(인사청문회) 제11조(의회사무처)		제16조(도지사, 교육감과의 관계) 제17조(감시 및 평가) 제18조(의회에 대한 설명) 제19조(시정요구 등)

□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11>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의회운영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6조(교섭단체의 구성) 제27조(위원회의 설치) 제28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29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0조(상임위원회 위원) 제31조(상임위원의 임기) 제32조(상임위원장) 제33조(특별위원회)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36조(위원장의 직무) 제37조(부위원장) 제38조(소위원회) 제39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40조(전문가의 활용) 제41조(입법·법률교문)
제2장 회의운영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6조(의회 운영 기본일정) 제7조(회기운영) 제8조(정례회 집회일) 제9조(정례회 및 임시회 심의안건) 제10조(개회식)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 제12조(의장·부의장 선거)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14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5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6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제17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제18조(사무처)		
제4장 의원	제19조(등록) 제20조(의석배정) 제21조(선서)	제6장 도지사 또는	제42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제43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제44조(도정 등에 관한 질문)

제22조(품위유지 의무) 제23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24조(청가 및 결석) 제25조(의원의 사직)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45조(긴급현안질문)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제47조(도지사 등의 발언) 제48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49조(회의록의 작성)
	제7장 질서 및 경호	제50조(경호) 제51조(회의의 질서유지) 제5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제53조(방청의 허가) 제54조(녹음, 녹화 등)

□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12>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의회운영원칙) 제4조(의정활동원칙)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35조(상임위원회 설치) 제36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37조(상임위원회 위원) 제38조(상임위원의 임기) 제39조(상임위원장) 제40조(특별위원회) 제41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42조(위원의 선임) 제43조(위원장의 직무) 제44조(간사) 제45조(직무대리) 제46조(소위원회)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6조(회기) 제7조(집회일) 제8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9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10조(개회식) 제11조(개회 및 폐회) 제12조(개의) 제13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휴회) 제15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제19조(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제20조(임시의장의 직무 및 선거) 제21조(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제22조(사무국)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7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48조(시정질문·답변) 제49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제50조(시장 등의 발언) 제5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52조(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제53조(회의록의 작성)
제4장 의원	제23조(등록) 제24조(의석배정) 제25조(선서) 제26조(청가 및 결석) 제27조(의원의 사직) 제2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2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30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31조(의정활동비 지급)	제7장 질서 및 경호	제54조(경호) 제55조(회의의 질서유지) 제5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57조(방청의 허가) 제58조(녹음 및 녹화 등)

제3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제33조(결직신고)  
제34조(영리행위의 제한)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 현행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1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의 조문 구성

장 구분	조문명	장 구분	조문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의회운영원칙) 제4조(의정활동원칙)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제30조(상임위원회의 소관)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제33조(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34조(상임위원장) 제35조(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제36조(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 제37조(특별위원회) 제3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제4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41조(위원의 선임) 제42조(위원장의 직무) 제43조(부위원장) 제44조(소위원회) 제45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46조(전문가의 활용)
	제5조(등록) 제6조(의석배정) 제7조(선서) 제8조(의원의 청가와 결석) 제9조(의원의 사직) 제10조(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 제출) 제1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3조(자격심사에 관한 본회의 의결)		
제2장 의원	제14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16조(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제17조(정견발표) 제18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9조(임시의장의 선거) 제2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21조(사무국) 제22조(의원연구단체)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7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제48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제49조(구청장에 대한 질문) 제50조(긴급현안질문) 제51조(구청장 등의 발언) 제52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53조(회의록)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23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4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25조(회기) 제26조(정례회의 집회일) 제27조(정례회의 안전) 제28조(개회식)	제7장 질서와 경호 등	제54조(경호) 제55조(회의의 질서유지) 제56조(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제5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58조(방청) 제59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 4. 국내 상위 및 동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목차 설계

□ 국내 상위 및 동위 법령과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목차 설계 비교

- 현행 국내 상위 및 동위 법령과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목차 설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14> 국내 주요 상위 및 동위 법령과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목차 설계 비교

국회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전문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2장 회의운영	제2장 의원	제2장 도민	제2장 회의운영	제1장 총칙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3장 회의운영	제3장 의회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2장 시민과 의회의 관계
제4장 의원	제4장 의원	제4장 의원	제4장 의회의 기관 등	제4장 의원	제4장 의원	제3장 의회의 회기 등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	제5장 의회와 도지사 등과의 관계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4장 의회의 기관 등
제6장 회의 제7장 회의록 제8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과 질문 제9장 청원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제11장 탄핵소추 제12장 사직, 퇴직, 결원과 자격심사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6장 발언	부칙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5장 의원
			제7장 시장 등의 출석, 답변			제6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장 징계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장 보칙	제7장 질서와 경호	제7장 질서 및 경호	제8장 질서와 경호 등	제7장 질서 및 경호	제7장 질서와 경호	제8장 질서와 경호
			제9장 의원 연구활동 및 시민참여 등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 제3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조문 설계

### 1. 본 절의 개요

- ‘제3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조문 설계’는 ①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 ② 수원시 동위 법령과의 관계, ③ 수원시 하위 법령과의 관계, ④ 수원 동위 및 하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설계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되었음.
- 우선, ①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 자치법규를 크게 ㉠ 조례로 정할 사항, ㉡ 의회규칙으로 정할 사항, ㉢ 의회의결로 정할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파악하였음.
- 다음으로, ② 수원시 동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 첫째, 현행 15개의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 중 ㉠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3개의 조례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로 전부 이관할 것, ㉣ 둘째, 상기한 바와 같은 3개의 조례를 제외한 12개의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는 이관하지 아니할 것, ㉤ 셋째, 12개의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 중 주요한 일부 조항의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나, 법적 안정성과 입법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이관 대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에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본조례와 일반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할 것 등을 결정하였음.
- 그리고 ③ 수원시 하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 첫째,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제외한 6개의 의회규칙, 및 8개의 규정 등은 이관하지 아니하였고, ㉡ 둘째,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지방자치법에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즉 ㉠ 제43조,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6조의2,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1조,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5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9조,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이관하지 아니하였으며, ㉥ 셋째,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그 성격상 기본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 제1장 총칙의 일부 조항, 즉 제2조(등록), 제3조(의석배정), 제4조(개회식), 제5조(선서),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7조(청가 및 결석) 등, ㉡ 제2장 의장과 부의장의 전부 조항, ㉢ 제6장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8장 질서의 일부 조항, 즉 제73조 경호,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76조

방청의 허가, 제55조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으로 이관할 것 등을 결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④ 수원 동위 및 하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설계에서는 상기의 결정 하에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조문을 장 구분, 조문명, 축조유형, 관계법령 등의 측면에서 구체화하였음.

## 2. 국내 상위 법령과의 관계

### □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규정

-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 자치법규를 크게 ① 조례로 정할 사항, ② 의회규칙으로 정할 사항, ③ 의회의결로 정할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작성함.

### □ 조례로 정할 사항

-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15> 조례로 정할 사항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33② 의정비 지급기준	§33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
§34② 보상금 지급기준	§34⑩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35③ 겸직 금지 규정 외 직의 신고방법, 절차	§35①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35⑥ 금지 영리행위의 범위	§35⑥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8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38② 서류제출 요구 방법
§39② §39① 외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	§39① 행사사무 감사 실시시기
§42③ 의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41①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작성 사항
§44② 정례회, 집회일, 그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3②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시 서류제출,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관계기관의 협조
§47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43④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증언거부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56 위원회의 설치	§44③ 서류제출, 증언, 진술 위해 출석 한 자의 실비지급
§57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52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
§62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4③ 정례회의 집회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66의3②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90 사무처의 설치	
§91 사무직원의 정수	

### □ 의회규칙으로 정할 사항

-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의회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16> 의회규칙으로 정할 사항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43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66의2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회의규칙) §71 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회의규칙) §85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한 필요한 사항(회의규칙) §89 정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회의규칙)	§57③ 회의록에 관한 필요한 사항(회의규칙) §60 청원에 필요한 사항

□ 의회의결로 정할 사항

-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의회의결로 정할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17> 의회의결로 정할 사항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34① 보상금 지급기준(직무의 범위) §39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41① 행정사무 조사권 §41의2①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결과 처리 §47① 지방의회의 개최·휴회·폐회·회기 §61 위원회의 개최 §64 의결정족수 §83② 모욕한 의원의 징계요구 §86 의원의 징계 §107② 재의요구, 확정 §108①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108② 경비를 줄이는 의결 §109①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지방의회 보고·승인	§36④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규정에 의해 의결받은 경우 의결로 봄 §36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 다른 법령에서 의결받은 경우 의결로 봄 §39② 행정사무 조사여부 §41②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검토 §41④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작성 §42②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사무 해당시 협의 §44① 증인, 참고인의 회의의 비공개 요구 §46②③④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제척, 제척의 이익제기, 회피 §48 감사나 조사의 비공개 §51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처리 §55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의결 §56① 특별위원회의 설치 §56②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61②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

3. 수원시 동위 법령과의 관계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작성에 따른 현행 조례의 변화

- 현행 15개의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 중 ①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②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③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3개의 조례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로

전부 이관함.

- 상기한 바와 같은 3개의 조례를 제외한 12개의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는 이관하지 않음.
- 12개의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 중 주요한 일부 조항의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나, 법적 안정성과 입법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이관 대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에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본조례와 일반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함.

<표 5-18>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작성에 따른 현행 조례의 변화(공포일자, 공포번호 順)

번호	조례명칭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	존폐여부	비고
1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3494호	2016.2.16.	제정	존치	관련조항신설
2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3495호	2016.2.16.	일부개정	폐지	전부이관
3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496호	2016.2.16.	일부개정	존치	관련조항신설
4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492호	2016.1.8.	일부개정	존치	관련조항신설
5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413호	2015.7.31.	일부개정	폐지	전부이관
6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제3369호	2015.2.12.	일부개정	존치	관련조항신설
7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353호	2015.1.6.	일부개정	폐지	전부이관
8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356호	2015.1.6.	일부개정	존치	관련조항신설
9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3230호	2013.7.31.	제정	존치	관련조항신설
10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제3159호	2012.11.14.	일부개정	존치	관련조항신설
11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제3160호	2012.11.14.	일부개정	존치	관련조항신설
12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161호	2012.11.14.	일부개정	존치	관련조항신설
13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162호	2012.11.14.	일부개정	존치	관련조항신설
14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제3054호	2011.9.27.	제정	존치	관련조항신설
15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012호	2011.4.5.	일부개정	존치	관련조항신설

#### 4. 수원시 하위 법령과의 관계

#####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작성에 따른 현행 의회규칙 및 규정의 변화

-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제외한 6개의 의회규칙, 및 8개의 규정 등은 이관하지 않음.
-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지방자치법에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즉 ① 제43조,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71조,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85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89조,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이관하지 아니함.

-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현행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 중 그 성격상 기본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① 제1장 총칙의 일부 조항, 즉 제2조(등록), 제3조(의석배정), 제4조(개회식), 제5조(선서),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7조(청가 및 결석) 등, ② 제2장 의장과 부의장의 전부 조항, ③ 제6장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④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⑤ 제8장 질서의 일부 조항, 즉 제73조 경호,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76조 방청의 허가, 제55조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으로 이관함.

<표 5-19>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작성에 따른 현행 규칙, 규정(훈령)의 변화(공포일자, 공포번호 順)

번호	규칙, 규정(훈령)명칭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	존폐 여부	비고
1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호	2012.11.15.	일부개정	존치	
2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25호	2012.11.15	일부개정	존치	
3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28호	2013.7.31.	제정	존치	
4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9호	2014.4.30.	일부개정	존치	
5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2호	2015.10.8.	일부개정	개정	일부이관
6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33호	2016.1.8.	일부개정	존치	
7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4호	2015.6.48.	제정	존치	
1	수원시의회 자료열람·대출관리 규정	제2호	1991.6.12.	제정	존치	
2	수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7호	1992.8.20.	전문개정	존치	
3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2호	2009.12.4.	전문개정	존치	
4	수원시의회 공청회 운영 규정	제16호	2012.6.18.	제정	존치	
5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20호	2014.7.31	일부개정	존치	
6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	제21호	2015.1.6.	전문개정	존치	
7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22호	2015.2.12	제정	존치	
8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제24호	2015.6.5.	일부개정	존치	

## 5. 수원 동위 및 하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설계

### □ 국내 상위 및 동위 법령과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목차 설계 비교

- 현행 수원 동위 및 하위 법령과의 관계 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설계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20>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문 설계

장 구분	조문명	축조유형	관계 법령
전문		신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신설	
	제2조 기본이념	신설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	신설	
	제4조 의원의 활동원칙	신설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장 시민과 의회의 관계	제5조 시민의 권리	신설	
	제6조 시민의 의무	신설	
제3장 의회의 회기 등	제7조 회의총일수	이관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2조
	제8조 회기	이관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3조
	제9조 정례회 개최	이관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4조
	제10조 정례회 집회	이관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
	제11조 정례회 심의	이관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6조
	제12조 개회식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조
	제13조 의회의 개폐선포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조
제4장 의회의 기관 등	제14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5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
	제16조 임시의장의 선거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0조
	제17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
	제18조 의장의 포상	신설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제19조 의회사무국	신설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의원연구단체	신설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 국제친선협의회	신설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제22조 공인	신설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제5장 의원	제23조 등록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조
	제24조 의석배정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
	제25조 선서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제26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신설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7조 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신설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8조 의회장	신설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제29조 청가 및 결석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30조 사직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제31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
	제32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33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제6장 교섭단체 ·위원회와 의원	제34조 교섭단체의 구성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조
	제35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이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7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이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8조 상임위원회의 임기	이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9조 상임위원장	이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0조 특별위원회	이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1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이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2조 위원의 선임	이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3조 위원장의 직무	이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4조 간사	이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45조 소위원회	이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46조 법률고문	신설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7장	제47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제48조 시정에 관한 질문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9조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제50조 시장 등의 발언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제51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신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장 질서와 경호	제52조 경호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제53조 회의의 질서유지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54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55조 방청의 허가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제56조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이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
부칙	시행일	신설	
	다른 조례의 폐지	신설	
	경과조치	신설	

## 제4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내용 작성

### 1. 본 절의 개요

- ‘제4절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내용 작성’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① 제안이유와 ② 주요골자를 제시하였음.

### 2.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안)의 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의회 기본조례는 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를 근본이념으로 표방하는 지방의회가 자체의 제도, 정책,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대강, 준칙, 원칙, 방침 등을 명시함으로써,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이상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자치 의지의 표명이자 제도적 초석이라 할 수 있음.
- 선발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제도적 초석을 확보해 왔고, 후발국가인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 기본조례의 제정이 급증하고 있음. 한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을 반영하여, 2010년대 들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조례의 제정이 확산되고 있음.
- 수원시의회회의 자치법규는 입법체계상 현재 15개의 일반조례, 7개의 의회규칙, 8개의 규정(훈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작 골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부재한 실정이므로, 그 제정의 시급성이 강조된다 하겠음.

- 이에, 본 기본조례안에서는 우선, 전문을 통하여 수원시의회의 사실적, 규범적 토대, 사명, 근본이념, 이념목표, 지방, 국가, 세계 수준의 전략, 궁극적 가치 등을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원시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
- 또한, 총칙규정을 통하여, 수원시의회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원칙, 의원의 활동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전체의 원칙적,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기술하고자 함.
- 아울러, 본칙규정을 통하여, 일반조례와 의회규칙, 규정(훈령)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수원시의회 관련 자치법규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함으로써, 유능한 의회로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사명으로 할 것, 자생적 민주주의의, 참여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를 근본이념으로 할 것, 시민의 우애적 관념, 주체적 의사, 자발적 참여를 이념목표로 할 것, 시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리민복, 인류공영을 각각 지방, 국가, 세계수준의 전략으로 할 것,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궁극적 가치로 할 것 등을 천명함(안 전문).
- 나. 일반의사가 발현되는 민주적 의회의 토대 구축,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 유능한 의회의 기능 확보를 의회의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다.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것,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 시민의 복리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 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의 반영,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의 개선 등을 의회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마. 시의 균형적 발전,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할 것, 자유로운 의견개진, 타 의원의 의견 존중을 토론의 규칙으로 할 것,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을 준수할 것 등을 의원의 활동원칙으로 규정함(안 제4조).
- 바. 주권자로서의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확인되고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의회는 시민의 권리 향유에 봉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 사. 주권자로서의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여된 의무를 지니며, 의회는 시민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규정함(안 제6조).
- 아. 수원시의회 관련 기존 일반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46조, 제51조).

## | 제6장 · 결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

### 수원시의회 기본조례<sup>6)</sup>

[시행 2016.6.14.]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535호, 2016.6.14., 제정]

#### 전문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구성된 우리 수원시의회는 존엄한 수원시민의 행복과 권리 보장의 사명에 입각하여, 자생적 민주주의의 정착과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지방분권주의의 구현을 근본이념으로 삼아, 시민의 우애적 관념을 고양하며, 시민의 주체적 의사 표명을 장려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여, 안으로는 시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국민민복과 인류공영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이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의 대리인으로써 구성된 의회에서 이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대의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의회는 시민의 의사에 따라 시민과 수원시의회 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활동원칙) 의원은 시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짐과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시에 다른 의원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및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시민과 의회의 관계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정과 관련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 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6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지니며, 의회는 시민의 부여된 의무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장 의회

제7조(회의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회기)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6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정례회 개최) 의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10조(정례회 집회)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에 집회한다.

제11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및 제13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3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 제4장 의회의 기관 등

제14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00까지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서 또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접수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의장·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6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의원연구단체) ① 의회는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21조(국제친선협의회) ① 의회와 외국도시 의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의회에 국제친선 협의회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국제친선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22조(공인) ① 의회는 의회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에 따른다.

## 제5장 의원

제23조(등록) 의회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6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의회장) ①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의회장을 집행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장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0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31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따라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33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6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34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
2. 기획경제위원회 10명 이내
3. 문화복지교육위원회 10명 이내
4. 안전교통건설위원회 10명 이내
5. 도시환경위원회 10명 이내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체납세징수단 소관에 관한 사항

3.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복지여성국, 문화교육국, 화성사업소,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4.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안전교통국, 전략사업국, 상수도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5.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정책실, 환경국, 마을만들기추진단,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3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호 협의하여 추천한 10명 이내의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 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임위원은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39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상임위원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0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한다.

제4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6조(법률고문) ① 의장은 의회의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른다.

## 제7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7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부시장·제2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과장급(담당관, 단장, 기획관, 소장, 센터장)공무원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제48조(시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9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0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장 질서와 경호

제52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53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제5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과 의장이 허가 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5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56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의장의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2016.6.14 조례 제3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1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 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 참고 문헌 |

### <국문 자료>

#### ■ 단행본

- 권영성(2014), 「개정판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김철수(2013),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서울: 박영사  
 성낙인(2015), 「헌법학(제15판)」, 서울: 법문사  
 허영(2015), 「한국헌법론(전정11판)」, 서울: 박영사

#### ■ 학술지/학위논문

- 문상덕(2004), “자치기본조례의 구상,”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포럼」, 15.  
 박병욱(200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에 관한 연구: 일본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정훈(2009),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 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법조」, 639  
 임경호(2009), “지자체헌법으로서 자치기본조례의 제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  
 의회발전연구원, 「자치의정」 11(1)

#### ■ 보고서

- 박영도(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_\_\_\_\_(1998),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_\_\_\_\_(2013), “자치법규 중요 쟁점 해설집,” 법제처  
 신원득 외(2014),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 제정 구상,” 경기연구원  
 \_\_\_\_\_(201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연구,” 경기연구원  
 이자성(2012), “일본의 자치기본조례 주요내용 및 시사점,” 경남발전연구원  
 최환용·정명운(2014), “자치기본조례의 현황과 입법체계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한상우 외(2011),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 부록 |

### 부록 1: 수원시의회 일반조례, 규칙 및 규정

#### 1.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16.2.16.]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494호, 2016.2.16.,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2.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정책 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등
2.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4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의장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17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장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10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되,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 3명을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임기) ①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공무원인 서기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해제 등) ① 의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는 의원 연구활동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장과 간사를 보좌하여 심의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승인
3.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비 조정
4.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평가
5.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참여)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활동 등록 등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선거에 의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는 8월 말까지 의원연구단체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활동 개최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해당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①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 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7일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고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3494호, 2016.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는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의원 연구활동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된 것으로 보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시행 2016.2.16.]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495호, 2016.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4.05)

제2조(회의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4.05)

제3조(회기) 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4.05)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6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22)

2.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 개최) 의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4.05)

제5조(정례회 집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4.0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6.2.16)

제6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및 제13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4.05) (개정 2016.2.1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4.05) (개정 2011.04.05) (개정 2016.2.16)

제7조(준용규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4.05)

부칙 <제3495호, 2016.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1.22 조례 제2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4.05 조례 제3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2.16 조례 제3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2.16.]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496호, 2016.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수원시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6.17)

제2조(감사) ①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02.18) (개정 2001.01.15) (개정 2011.06.17) (개정 2011.09.27) (개정 2016.2.16)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8)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06.17)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6.17)

제5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6.15)

제6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부터 제116조에 따른 수원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7.11.22) (개정 2011.06.17)
3. 수원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1.22) (개정 2011.06.17)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6.17)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수원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수원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6.17)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7)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
2. 수원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14.01.08)
-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한다.
-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1.06.17)
-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수원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7)
-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7)
- 제11조의2(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①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4.01.08>
- 제12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17)
- 제13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한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14조(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증언범위·방식)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증인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16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7)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여비 등 비용지급)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1.06.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17)

1. 시장 및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1.06.17)

2. 제7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제5호가 정하는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 (개정 2011.06.17)

3. 수원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 (개정 2011.06.17)

③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당,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④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국내여비 규정 별표 2의 제4호를 준용한다.

⑤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⑥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불출석 등의 통보) 의장은 제11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06.17)

제1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제20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7)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7)

제25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1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제26조(고발) ① 의회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또는 관계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관계 위원장이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26조의2(과태료) <조 신설 2000.02.18>

① 제11조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09.27)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개정 2011.06.17)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수원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6.17)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부과권자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 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7)

⑦ 부과권자는 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6.17)

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2.06.11)

제28조(의회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6.17)

부칙 <제3496호, 2016.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2.18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1.15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1.22 조례 제2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6.17 조례 제3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9.27 조례 제3053호)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6.11 조례 제31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와 규칙의 개정)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와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7조 중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2014.01.08 조례 제3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2.16.조례 제3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8.]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492호, 2016.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7.11.22) (개정 2012.01.06) (개정 2016.01.0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의원" 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등으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2.01.06)

② 의정활동비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수원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05.19)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01.08)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000원,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4.03.05)

제6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2,943,470원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2.18) (개정 2005.09.28) (개정 2006.05.19) (개정 2008.01.10) (개정 2012.01.06) (개정 2015.01.06) (개정 2016.01.08)

제7조(여비 지급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 별표 6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를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8.01.10) (개정 2016.01.08)

제8조(의회소제지 내에서의 출장 시의 여비) 의회소제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수원시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3492호, 2016.1.8>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3.17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10.15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09.16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8.25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07.01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12.30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2.28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4.30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3.17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1.11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2.18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6조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지급개시일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03.05 조례 제2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09.28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5.19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칙(2007.11.22 조례 제2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1.10 조례 제2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부터 지급한다.

부칙 (2012.01.06 조례 제3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01.06 조례 제3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1.08 조례 제3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

## 5.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31.]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413호, 2015.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위원회와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0.03.29) (개정 2010.06.28.) (개정 2012.06.11)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수원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4.01.08)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11> (개정 2013.02.05) (개정 2014.01.08)

제3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수원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

2. 기획경제위원회 10명 이내 (개정 2013.02.05)

3. 문화복지교육위원회 10명 이내 (개정 2010.12.30)

4. 안전교통건설위원회 10명 이내 (개정 2015.04.03)

5. 도시환경위원회 10명 이내 (본조 개정 2010.06.28.) (본조 개정 2012.06.11)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7.06) (개정 2010.03.29)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위원회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 서울사무소, 체납세징수단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0) (개정 2011.04.05)(개정 2012.03.30)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4.03.25) (개정 2014.04.30) (개정 2015.04.03)

3. 문화복지교육위원회복지여성국, 문화교육국, 화성사업소,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0.) (개정 2011.11.10) (개정 2014.03.25) (개정 2014.04.30)

4.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개정 2015.04.03.) 안전교통국, 전락사업국, 상수도사업소, 도시안전 통합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0) (개정 2013.07.31) (개정 2014.04.30) (개정 2015.04.03)

5. 도시환경위원회도시정책실, 환경국, 마을만들기추진단,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0) (개정 2011.12.27.) (개정 2012.03.30) (본조 개정 2012.06.11) (개정 2014.03.25) (개정 2014.07.31) (개정 2015.04.03)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겸 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10.03.29) (개정 2014.07.31)

1. 각 상임위원회 간사 1명 <신설 2014.07.31>

2.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신설 2014.07.31>

3.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 <신설 2014.07.31>

②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03.29>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03.29)(본조 개정 2012.06.11)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개정 2012.06.11)

제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0.06.28)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01.05.19) (개정 2005.12.28)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상임위원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05.19> (개정 2014.01.08)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01.05.19)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1.05.19) (개정 2005.12.28.) (본조 개정 2012.06.11)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06.30)
-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06.30> (개정 2014.01.08)
-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6.11)
-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06.28)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1.08)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2.06.11)
-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04.05.) (본조 개정 2012.06.11.) (개정 2015.07.31)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본조 개정 2012.06.11)
-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06.28)
-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4.05.) (본조 개정 2012.06.11)
- ④ 위원장과 간사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01.08>
-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2.05)
-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본조 개정 2012.06.11)
- 제14조(준용규정)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4.05.) (본조 개정 2012.06.11) (개정 2014.01.08)

부칙 <제3413호, 2015.7.31.>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4대 수원시의회 상임위원의 임기) 제4대 수원시의회 최초 상임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제5조제1항 전단(前段)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대 수원시의회 전기(前期) 의장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부칙(1993.06.07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5.03.25 조례 제194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07월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5대 수원시의회 상임위원의 임기) 제5대 수원시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 부칙(1995.08.25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6.02.12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6.11.30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1997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8.07.01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1998년07월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8.10.13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1.05.19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2.07.06 조례 제2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4.06.23 조례 제2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5.12.28 조례 제2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5.19 조례 제2604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30 조례 제262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7.06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8.14 조례 제2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2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12 조례 제2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4 조례 제2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07 조례 제2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0 조례 제2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3.29 조례 제2918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6.28 조례 제2926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조례 제2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4.05 조례 제3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0 조례 제3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7 조례 제3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2.03.30 조례 제3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6.11 조례 제31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와 규칙의 개정)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와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7조 중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2013.02.05 조례 제3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31 조례 제3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1.08 조례 제3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3.25 조례 제3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4.30 조례 제3303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7.31 조례 제3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4.03 조례 제3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7.31 조례 제3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 2015.2.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369호, 2015.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02.12)

### 1. 의정발전 부문

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협조한 경우

나. 정례회 및 임시회 중 의회방청에 출선 참여하는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5.02.12)

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 2. 지역사회 봉사부문

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나.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의 명예를 높여 떨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02.12)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의2(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상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개정 2015.02.12)

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개정 2015.02.12)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5.02.12)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02.12)

1.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장수여·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4. 상장문안

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상장은 동일(대표자가 같고 설립목적 또는 사무가 유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수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07.31>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제9조(포상절차)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2.12)

-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
-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1조(공적심사) ① 공적 예비심사를 마친 사람의 표창 적부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07.31)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명과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등 5명으로 구성한다.(2015.02.1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369호, 2015.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31 조례 제3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12 조례 제3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수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6.]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353호, 201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에 따라 수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부시장·제2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과장급(담당관, 단장, 기획관, 소장, 센터장)공무원 (개정 2015.01.06)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부칙 <제3353호, 201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1.06 조례 제3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8.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6.]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356호, 201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의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07.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로 출장·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6.14)
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07.12.27)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6.06.30) (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3.06.14)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3.06.14)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06.06.30)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06.30)(개정 2013.06.14)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06.30.) (개정 2013.06.14)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6.06.30)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의회의원이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2.01.06)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제1항 별표 3호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06.14)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3.06.14)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6.06.3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06.06.30) (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3.06.14)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06.14)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시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13.06.14)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10.12.22)

1. 시의회 의원 1명
2. 시 분청 관련 실·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06)(본조개정 2013.06.14)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06.06.30)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6.14)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관할한다. (개정 2013.06.1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개정 2013.06.14)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6.06.30) (개정 2013.06.14)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 관련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14)

부칙 <제3356호, 201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2.14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30 조례 제26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12.27 조례 제2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2.01.06 조례 제 3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14 조례 제3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제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 9.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 2013.7.31.]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230호, 2013.7.31.,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수원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수원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칙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1인당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수원시 소속 공무원
2. 수원시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에 따라 부의 안전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수원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1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3230호, 201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시행 2012.11.14.]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159호, 2012.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4)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수원시의회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1.14)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원시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신설 1992.03.17>
3. 수원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1992.03.17)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4)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수원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03.17> (개정 2012.11.14)

제3조(인영의 내용) ① 관인의 인영은 수원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2.11.14)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발급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발급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2.11.14)

제7조(날인위치) ① 관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12.11.14)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발급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12.11.14)

제8조(재발급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03.17) (개정 2012.11.14)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3.17) (개정 2012.11.14)

제9조(공고) 공인을 발급, 재발급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부칙 <제3159호, 2012.11.14>

①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부칙(1992.03.17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4 조례 제3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시행 2012.11.14.]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160호, 2012.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와 외국도시 의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우호를 맺고 경제, 사회, 문화, 체육교류를 증진시켜 수원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2.11.14)

제2조(설치) 협의회는 수원시의회에 둔다. (개정 1997.01.18)

제3조(구성) ①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수원시의회에 둔다. (개정 1997.01.18) (개정 2011.06.17)

② 협의회 회원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③ 회장은 의장이, 부회장은 부의장이 되며 총무, 감사, 교류국 도시별 협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7.01.18)

④ 교류국 도시별 협회 부회장 및 간사는 해당 협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7.01.18)

제4조(기능) 협의회는 외국도시 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도시의회 간 우호친선을 도모하고 각 분야에서의 교류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1997.01.18)

1. 도시의회 간의 우호, 친선, 이해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도시의회 간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1997.01.18)
3.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6.17)

제5조(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임원의 임기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수원시의회 의장과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12.11.14)

②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4)

③ 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1.06.17)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2.11.14)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6.17)

③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11.14)

④ 감사는 협의회 회계를 검사한다.

⑤ 교류국 도시별 협회장은 외국도시 의회 간의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되 회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개정 1997.01.18)

제7조(회의)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교류국 도시별 협회 회의는 교류국 도시별 협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7.01.18)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할 사항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부회장, 총무, 감사와 교류국 도시별 협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01.1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이 되며, 간사는 협의회 총무가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임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재정)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그 밖의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1.06.17)

제10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06.17)

부칙 <제3160호, 201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1.08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6.17 조례 제3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4 조례 3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2.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 2012.11.14.]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161호, 2012.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4)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수원시의회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 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때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필요하였을 때
4.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법령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본조개정 2012.11.14)

제3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1.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개정 2012.11.14)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수원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소송비용 및 수당)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11.14)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4)

부칙 <제3161호, 201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4 조례 제3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시행 2012.11.14.]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162호, 2012.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2.11.14)

제2조(윤리강령 준수) 수원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별표" 의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14)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14)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14)

③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14)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그 밖에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여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14)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14)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14)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14)

② 의원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1.14)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장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9.06.19)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14)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선물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14)

제13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 신고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14)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06.19> (개정 2012.11.14)

부칙 <제3162호, 2012.11.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1995년 12월 20일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정한 "별표"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계속적인 효력을 갖는다.

부칙(2007.11.22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19 조례 제28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 및 제14조의 개정조항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4 조례 제3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시행 2011.9.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054호, 2011.9.2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수원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된다.

제6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수원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8조(조기계양) 의회장 기간에는 시의회 구내에 조기를 계양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3054호, 201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5.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4.5.]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012호, 2011.4.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4.05)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04.05)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04.05)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04.05)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012호, 201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2 조례 제2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4.05 조례 제3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6.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시행 2015.10.8.] [경기도수원시규칙 제32호, 2015.10.8.,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6) (개정 2011.03.21) (개정 2012.06.18)

제2조(등록)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03.04) (개정 2011.03.21) (개정 2014.04.30)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개정 1992.03.04) (개정 2012.06.18)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1992.03.04)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개정 2012.06.18)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2.06.18)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개정 2012.06.18)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03.21.) (개정 2012.06.18)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00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서 또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한 등록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2012.06.18>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접수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2.06.18>

제9조(의장·부의장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2.06.18) (개정 2014.04.30)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6.24)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3장 회의

##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8)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개정 2011.03.21)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 할 수 있다. (개정 2007.11.06) (개정 2011.03.21)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 제2절 의사일정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06.18)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신설 1992.03.04> (개정 2012.06.18)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1992.03.04)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12.06.18)

##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의한다. (개정 2008.06.24)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이 필요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06.24> (개정 2009.03.19) (개정 2012.06.18) (개정 2014.04.30)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신·구 조문 대비표플 포함한다),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11.10.31) (개정 2012.06.18)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2.03.04) (개정 2012.06.18) (개정 2014.04.30)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1992.03.04) (개정 2014.04.30)

③ ~ ⑤ <삭제 1992.03.04>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조 신설 1992.03.04>

① 의원이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2.06.18)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3(심사기간) <조 신설 1992.03.04>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개정 2012.06.18) (개정 2014.04.30)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조 신설 1992.03.04>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06.24) (개정 2012.06.18)

제21조(동회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회는 동 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1.03.21)

제22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4)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2.06.18)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의안·동회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24) (개정 2011.03.21)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24)

제24조(변안) 변안동의를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외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재회부) <조 신설 1992.03.04>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을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개정 2012.06.18)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2.06.18)

#### 제4절 발언

제28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개정 2008.06.24)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31조의2(5분 자유발언) <조 신설 2003.03.19>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안전처리 직후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청원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개정 2012.06.18)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회일 전날 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8)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06.24) (개정 2014.04.30)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을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5절 표결

제3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12.06.18)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 전까지 제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08.06.24)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06.20) (개정 2008.06.24) (개정 2012.06.18)

②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비밀전자투표의 방법에 의하거나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08.06.24)

③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개정 2008.06.24) (개정 2012.06.18)

제42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개정 2012.06.18)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06.18)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⑤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누른다. <신설 2008.06.24>

⑥ 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신설 2008.06.24>

⑦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한다. <신설 2008.06.24>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개정 2014.04.30)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이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12.06.18)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개정 2014.04.30)

제44조(표결결과 선포) 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4)

(개정 2009.06.01)

② 의장은 별표1의 전자투표 개표결과 집계표를 출력 확인하여 서명날인하고 2년간 보관한다. <신설 2008.06.24>  
(개정 2012.06.18)

제6절 회의록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모든 보고사항 (개정 2012.06.18)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3.21)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개정 1992.03.04) (개정 2011.03.21)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바로잡음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의회의록이 전자회의록에 등록된 후 15일 이내에 그 자구의 바로잡음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10.03.11) (개정 2011.03.21)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바로잡음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4.04.30)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공개회의록에 등록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3.1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03.21) (개정 2012.06.18)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0.03.11)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1.03.21)

제51조의 2(위원회의 제안) <조 신설 1992.03.04>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 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06.18)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문을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 2(연석회의) <조 신설 1992.03.04>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전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03.21) (개정 2012.06.18) (개정 2014.04.30)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전·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24) (개정 2011.03.21)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전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결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개정 2014.04.3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개정 2012.06.18) (개정 2014.04.30)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개정 2012.06.18)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최·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개정 2014.04.30)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전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전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3.21)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2.06.18)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1.03.21) (개정 2012.06.18.)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3.04) (개정 2012.06.18) (개정 2014.04.30)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1992.03.04) (2012.06.18)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2.03.04) (개정 2012.06.18) (개정 2014.04.30)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예산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개정 2014.04.30)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2.03.04)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1992.03.04.) (개정 2012.06.18)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2.03.04.)

제6장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6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④ <삭제 2007.12.23>

제66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조 신설 2007.12.23>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8.06.24)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4)

⑤ 그 밖에 시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03.21) (개정 2014.04.30)

제67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2.06.18)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휴무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4) (개정 2012.06.18)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8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6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06.20) (개정 2007.11.06) (개정 2011.03.21)  
 ②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개정 2014.04.30)
-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06.20) (개정 2012.06.1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06.20) (개정 2014.04.30)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0) (개정 2012.06.18)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4.04.30)
-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06.20) (개정 2014.04.30)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6.20)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8장 질서

- 제7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2.03.04) (개정 2014.04.30)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06.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개정 2014.04.30)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개정 2011.03.21)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08.06.24)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개정 2011.03.21)
-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과 의장이 허가 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1.03.21)
-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중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중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2.03.04)  
 ②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1.03.21)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3.11) (개정 2012.06.18)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08.06.24) (개정 2010.03.11)

2. 술 기운이 있는 사람 (개정 2008.06.24) (개정 2010.03.11)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0.03.11) (개정 2010.09.20) (개정 2011.03.21)
  - ②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3.11)
-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이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08.06.24)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 (개정 2011.03.21)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11.03.21)
- 제81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1.06)·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5.10.08>
-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의장의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5.10.08>
-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 ⑥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03.21) (개정 2012.06.18) (개정 2015.10.08.)

#### 제9장 징계

-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 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06.20) (개정 2007.11.06) (개정 2012.06.18)
-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06.20) (개정 2011.03.21) (개정 2012.06.18)
-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06.24) (개정 2011.03.21)
-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06.20) (개정 2012.06.18)
-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개정 2012.06.18)
-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06.20)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0) (개정 2012.06.18)

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14.04.30)

제87조(방청의 신청) 방청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의시작 2시간 전까지 서면 신청해야 하며, 본회의 방청은 의장에게, 위원회 방청은 해당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2.06.18>

부칙 <제32호, 2015.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3.19 의회규칙 제00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20 의회규칙 제0005호)

이 규칙은 2006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06 의회규칙 제0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3 의회규칙 제00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24 의회규칙 제0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3.19 의회규칙 제00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01 의회규칙 제0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3.11 의회규칙 제0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9.20 의회규칙 제00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3.21 의회규칙 제0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31 의회규칙 제0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6.18 의회규칙 제0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4.30 의회규칙 제0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08 의회규칙 제0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2: 국내 지방의회 기본조례

###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시행 2016.3.24.] [서울특별시조례 제6163호, 2016.3.24.,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13.5.16, 2014.5.14, 2016.3.2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로 한다.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14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4.12.30>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70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6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사무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정책연구위원회) ① 의회의 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의 심사·수행을 위하여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정책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장 의원

제21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3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의원은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위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위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위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위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9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

제30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1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는 9명 이상으로 한다.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전문개정 2014.7.14]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14., 2014.12.30., 2015.7.30., 2015.9.17., 2016.1.7.>

1. 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정부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 가.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평생교육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아. 정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자. 신속행정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차.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카.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 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 파.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 하.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획경제위원회
-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경제진흥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일자리노동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농수산식품공사에 관한 사항
  - 마. 서울연구원에 관한 사항
  - 바. 서울산업진흥원에 관한 사항
  - 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 아. 서울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4. 환경수자원위원회
- 가. 기후환경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푸른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가. 문화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관광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
  - 바. 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 사.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
  - 아.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의 출자 등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 자. 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
  - 차. 교통방송에 관한 사항
  - 카. 서울역사편찬원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위원회
- 가. 복지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시민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 마.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 바.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가. 안전총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물순환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소방재단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주택건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도시공간개선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에스에이치(SH)공사에 관한 사항

9. 교통위원회

- 가. 도시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도시철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서울메트로에 관한 사항
- 라.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 마.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10. 교육위원회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신설 2014.12.30>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④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제3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7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6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37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4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결원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5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제46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7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7조의2(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 등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의 의견수렴 형식을 포함한다)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8]

제48조(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및 부교육감
2.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및 본부장급과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장
5. 제4호에 따른 하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7.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④ 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9>

1.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원의 질문시간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의회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의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 또는 교육감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51조(시장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0조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

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②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회의 예산) 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58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④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⑤ 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14.12.30.>
  -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 제7장 질서와 경호

- 제59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석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61조(의장, 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제6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①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3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4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9>

부칙 <제6163호, 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시행 2013.7.30.] [충청남도조례 제3771호, 2013.7.30.,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도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양한 도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 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회의운영

제3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회기) 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8일로 하며,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42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6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상호 연장·단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③ 2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5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2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일 이내에서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례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을 심의·의결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다음연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연설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분기말까지 다음분기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0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4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5조(사무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6조(의정자문위원회) ①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과제 연구를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자문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제4장 의원

제17조(등록) 의회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19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0조(품위유지 의무) ①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질병,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명시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4조(교섭단체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서명·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이 이동하거나 소속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일어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6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 2. 행정자치위원회 9명 이내
- 3. 문화복지위원회 9명 이내
- 4. 농수산경제위원회 9명 이내
- 5. 건설소방위원회 9명 이내
- 6. 교육위원회 9명

제27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2. 행정자치위원회

가. 홍보협력관, 기획관리실, 안전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충청남도립청양대학,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문화복지위원회

가. 여성가족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보건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농수산경제위원회

가. 경제통상실,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5. 건설소방위원회

가. 건설교통국,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방본부에 속하는 사항

- 6. 교육위원회

가. 교육, 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9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교육위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0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등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둔다.

④ 제2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0조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2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0조 제3항을 준용하고,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3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제41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2조(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43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지사,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4.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의 장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도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8. 제5호 및 6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9.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10.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자를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도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에 기간을 정하여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도정질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도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는 본 질문을 실시한 후에 이에 대한 보충질문(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해야 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다.

③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모두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도정질문 첫날 3일전(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질문일 2일 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제45조(긴급 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44조에 따라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한 사건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이하“긴급 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본회의 개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긴급 현안질문은 3명 이내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의원 1명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 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제44조에 따른다.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소관별로 이송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7조(도지사 등의 발언)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중기재정계획 등의 보고)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중기재정계획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의회 보고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 한다.

제50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으로서 도지사가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 10. 의사

11.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사항은「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장 질서 및 경호

제52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 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53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회의장 내에서의 휴대전화 등의 사용행위

7.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①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를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56조(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칙 &lt;제3771호, 2013.7.30&gt;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 또는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3. 「충청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4.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3.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시행 2016.3.1.] [광주광역시조례 제4686호, 2016.3.1.,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 지위와 기본방향) ①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 과 법률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자율적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의회는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한다.

③ 의회는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한다.

제3조(의회 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자율적인 의회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장 의원

제5조(등록)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광주광역시의회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품위유지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65378;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에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개정 2016.3.1>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6.3.1>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0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3장 회의 운영

제11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전체 의원과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회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의원과 광주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다만, 의회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정례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휴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3.1>

제14조(정례회 심의사항)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의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 ④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⑤ 이 조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장 의회의 기관 등

제16조(의장)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7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 불신임 의결, 사직, 퇴직 등으로 권위(關位)된 때와 여행, 휴가, 경조사 및 법 제70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와 권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사고 중 권위된 때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② 임시의장은 최다선 의원이 되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9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장·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종료되는 다음날 최초집회에서 법 제54조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의원의 사퇴로 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된 경우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와 최다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⑥ 부의장은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으로 각각 선거한다.

제20조(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 18시까지(휴무·공휴일을 제외한다)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장·부의장 임기) ①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새로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의장·부의장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3조(의장·부의장 겸직 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사무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

제25조(교섭단체 구성) 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7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2. 행정자치위원회

가. 대변인, 감사위원회, 인권평화협력관,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문화관광체육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학교, 소방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9.1, 2015.7.23, 2015.10.1, 2015.11.1, 2016.1.1>

#### 3. 환경복지위원회

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환경생태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광주환경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산업건설위원회

가. 도시재생국, 교통건설국, 전략산업본부, 일자리경제국, 혁신도시 협력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 건설본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9.1, 2015.7.23, 2015.11.1, 2016.1.1, 2016.3.1>

#### 5. 교육위원회

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교육청 소속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소관에 관한 사항

③ 행정기구의 기능조정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한다.

제28조(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15.2.15>
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5.2.15>
3. 환경복지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5.2.15>
4.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5.2.15>
5. 교육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5.2.15>

제29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0조(상임위원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 방식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②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2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 운영하되 후반기 원구성이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다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4조(위원 선임과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의원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선임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35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6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8조(위원 아닌 의원 발언 청구)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정한다.

제39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0조(전문가 위촉)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력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의 성명·직업 등 인적사항, 위촉기간, 위촉이유 등을 명시한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사보조자는 위촉기간 만료와 동시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청취를 위한 출석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할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일비·여비 및 안전심의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안건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 제6장 발언

제41조(발언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42조(발언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3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44조(의제 외 발언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5조(발언횟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의 개의일 전일 18시까지(휴무·공휴일을 제외한다) 그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의원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47조(발언시간 제한) ① 시정질문 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의와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과 보충발언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그 밖에 발언을 할 때에는 3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매년 1회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한다.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제7장 시장 등의 출석·답변

제48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교육감이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및 부교육감

2.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및 담당관, 실·과장급. 다만, 위원회에서 대변인, 감사위원장, 여성청소년가족 정책관, 인권평화협력관, 참여혁신단장, 사회통합추진단장,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이 부제로 출석·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직제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 <개정 2015.10.1, 2016.3.1>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사람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및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기관장

5.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임원 <개정 2015.11.1>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사람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질문(교육행정을 포함 한다)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의 범위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1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일 3일 전(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교육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시정질문일 1일 전(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1조(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2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50조에 따른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에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시 및 교육청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지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형편에 의하여 질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항의 질문시간을 질문권이 있는 다른 의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⑧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3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4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장 질서와 경호 등

제55조(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중인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4.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5. 회의장 내에서의 휴대전화 등의 사용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 문란 행위

제56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요구에 따라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57조(회의장 출입 제한 등) ①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장 의원 연구활동 및 시민참여 등

제60조(연구활동)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연수)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사무처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연수를 할 수 있다.

제62조(정책네트워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제 개발과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제63조(입법·법률고문)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제64조(청원 처리) ① 의회는 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제59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처리한다.

②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③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이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청원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 지급기준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6조(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 ① 의회는 시민이 의정활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의회는 의정활동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 ③ 의회는 시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4686호, 2016.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 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시행 2016.1.4.] [경기도조례 제5131호, 2016.1.4.,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 제2장 도민

제4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정과 관련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 제3장 의회

제5조(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도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5. 그 밖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7조(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과 정책 실행 등 각 단계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경제 상황,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도민 활동에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도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도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의회는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2.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연구
3. 의원의 조사·연구와 도정 운영에 필요한 관련 국내외 참고 자료 등의 구비
4. 결산 심사 시 필요한 시정요구 등

제10조(인사청문회) 의회는 경기도 부단체장 등 고위직과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장에 대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 채용, 후보자 임용의 정당성 부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회사무처) ① 의회는 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회 활동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의 기능 강화 및 조직 체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회사무처가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의회도서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장 의원

제12조(의원의 사명) 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13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의회의 본래 기능인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제14조(윤리와 품위의 유지) 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윤리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비용 추계)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장 의회와 도지사 등과의 관계

제16조(도지사, 교육감과의 관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도지사, 교육감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제17조(감시 및 평가) 의회는 도지사,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감시하는 책무를 가지며, 안건 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도지사,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책무가 있다.

제18조(의회에 대한 설명) 도지사, 교육감은 예산의 편성과 도정에 관한 기본 계획 등 중요한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하여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등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고 의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의회에 예산) 도지사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요구 등) ① 의회는 조례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시행규칙이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회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및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5131호,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시행 2016.3.25.] [전라북도조례 제4257호, 2016.3.25.,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전라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전라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도민전체의 대표로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장 회의운영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운영)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2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정례회 집회일) 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이나 10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6. 3. 25>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8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제45조에 따른다.

제9조(정례회 및 임시회 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 전일 18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직책을 명시한 신상발언 신청서를 미리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순서에 따라 정견발표를 한다.

⑥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5항의 정견발표 외에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4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법 제70조의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의 지명이 없었을 경우에는 부의장 선거에서 선출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6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사무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장 의원

제19조(등록) 의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1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2조(품위유지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및 결석계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가가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6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6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6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교섭단체만이 해당될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6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 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하는 명부와 보고하는 서식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내용에 흠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8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11인 이하
2. 행정자치위원회 8인 이하
3. 환경복지위원회 8인 이하
4. 산업경제위원회 8인 이하
5. 문화건설안전위원회 8인 이하
6. 교육위원회 8인 이하

제29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규칙·규정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감사관실·공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소방본부·대외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환경복지위원회

가. 환경녹지국·복지여성보건국·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가. 농축수산식품국·경제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가.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전라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0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1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정한다.

제32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3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1. 구성 결의안

2. 활동기간 연장의 건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총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이 선출되는 날까지 그리고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3일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당해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인,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부위원장 1인,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한다.
- 제3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37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결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3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소위원회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④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 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심사와 직접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당해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39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 제40조(전문가 활용) 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환경·과학기술·의료분야 등 특수분야의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1조(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 제42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지사,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4. 법 제113조 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장(교육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도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사람
  8. 제5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사람
- 제44조(도정 등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하 “도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도정질문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후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순으로 한다.
  -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의장은 의원의 도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정질문 의원수와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⑥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도정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96시간전(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까지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문서가 아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45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도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한 하여 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44조에 의한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타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다. <단서신설 2016. 3. 25>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별지 1호 서식의 질문요구서를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출석요구서와 질문요지서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당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긴급현안질문은 2명 이내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의원 1명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의 범위안에서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 할 수 없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4조를 준용한다.
-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 제47조(도지사 등의 발언)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8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9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밖의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사항은「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장 질서 및 경호

제50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다만, 회의장에의 난입 등으로 회의진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장안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휴대용 전화기·호출기 등을 지참하여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7. 그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3조(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54조(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7일전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단순보도용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두신청에 따라 구두허가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칙 <제4257호, 2016.3.2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전라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부칙 <2016. 3. 25 조례4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시행 2016.4.4.]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048호, 2016.4.4.,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운영과 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 원칙) ① 의회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부천시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바로 의결로 정하며,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8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부천시의회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9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 법 제134에 따른 결산안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하며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에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개회 및 폐회) ① 의회는 개회식에 따라 개회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개회로 본다.

② 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아니하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됨으로써 폐회한다.

제12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개의 시각을 정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13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휴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개의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재적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휴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휴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④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4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5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본회의 개의시간, 부의안건 순서를 기재한 그날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한 회기 동안의 전체 의사일정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기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날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 등)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시의장의 직무 및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 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를 따른다.

제21조(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2조(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장 의원

제23조(등록) 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을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6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의 청가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 ③ 의원은 청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 ④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며,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⑥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가서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고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의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의원의 사직 허가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의원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 제2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부분은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피심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다만, 피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 ③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이송한다.
- 제30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31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 ② 의원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다.
  - ③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 ④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제2항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부천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부천시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제3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3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6조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35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재정문화위원회 9명 이내
3. 행정복지위원회 9명 이내
4. 도시교통위원회 9명 이내

제36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재정문화위원회

가. 보좌기관인 기획실·홍보실·감사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04.01.>

나.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사업소 중 문화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행정복지위원회

가. 보좌기관인 365안전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사업소 중에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교통위원회

가. 도시주택국·교통도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사업소 중에서 푸른도시사업단·균형발전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04.01.>

제37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9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0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원은 윤리심사와 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4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5조(직무대리)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4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7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출석 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의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에서 국장 또는 과장급
  3. 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또는 과장급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직속기관 및 사업소 또는 하부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의 자
- ⑤ 관계 공무원이 공식 중이거나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해당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48조(시정질문·답변) ① 본회의는 회기 중에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정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본질문을 한 의원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 후에 1회에 한하여 일문일답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충질문의 시간은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한다.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이송하여야 하며,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가 의원에게 도달되도록 이송하여야 한다.

제49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0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53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인원수
5. 출석공무원의 직·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및 변동에 관한 사항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 및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

10. 의사에 관한 사항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의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에 관한 사항
13. 의원의 보충 발언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③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장 질서 및 경호

제54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55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 낭독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5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7조(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8조(녹음 및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등을 하려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사에 관한 사항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4.4.>

④ 제3항의 중계방송은 생중계로 하며 그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4.4.>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칙 <제3048호, 2016.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3. 「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4.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부칙(2015.04.01. 조례 제2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6.4. 4. 조례 제3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시행 2016.2.17.]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195호, 2016.2.17.,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의원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의원의 청가와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허가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기고 청구서의 부분을 피심원에게 송달하여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해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자격심사에 관한 본회의 의결) ① 피심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해명하게 할 수

있다.

- ② 본회의는 피심위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결정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자격상실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4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전 5일에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 후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 수행은 법 제54조를 적용한다.

⑦ 그 밖의 의장·부의장의 선거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전 5일부터 3일간으로 하고,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후보자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9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법 제52조에 따른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2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1조(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의원연구단체) ① 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장 회기 운영

제23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5조(회기) ① 법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본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26조(정례회의 집회일)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에 부득이한 이유로 집회가 어려울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의 개최일은 9월·10월 중에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수요일에 집회한다.

제27조(정례회의 안건)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 :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28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9명 이내

3. 건설재정위원회 9명 이내

③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8명 이내로 한다.

제30조(상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강동아트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건설재정위원회

가.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성장전략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 2. 17.>

③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 중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은 제32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상임위원 간에 서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영리행위의 제한을 받는 상임위원

2. 상임위원 간 서로 합의하여 바꾸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4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5조(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상임위원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되고 그 다음날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36조(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순이며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2명은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재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으로 각각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의 본문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5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정한다.

제46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등

제47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과장 및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3. 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급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9조(구청장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청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에게 질문(이하 "구청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청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이 서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구청장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구청질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0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긴급현안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 및 해당 국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9조 구청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7장 질서와 경호 등

제54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의장이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6조(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회의장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

제5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8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9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195호, 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제30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로 한다.

부칙 (2016.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3: 국외 지방의회 기본조례

### 1. 일본 지방의회의 기본조례 제정 · 운영 사례

#### ① 카나가와현의회기본조례 (神奈川縣議會基本條例)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현(縣)의회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여 의원과 현(縣)의회의 사명 및 역할을 밝히는 등 현(縣)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민(縣民)에게 열려있는 충실한 현(縣)의회를 실현하고, 현민(縣民)의 풍요로운 생활과 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神奈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현(縣)의회는 일본국 헌법에 정하는 현(縣)의 유일한 의사기관으로서 항상 현(縣)민과 함께 하며,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현(縣)의회를 목표로 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몰두하여야 한다.

##### 제2장 의원

제3조(의원의 사명) 1.의원은 현민(縣民)의 직접 선거에 의해 뽑힌 공직으로서 항상 현(縣)의 행정과제를 파악하고, 공익성의 견지로부터 현(縣) 전체를 응시하고, 현민(縣民)의 다양한 의견을 현(縣)의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4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전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현(縣)의회 회의, 위원회 및 의안의 심사 또는 현(縣)의회 운영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한 장소(이하 『회의 등』이라고 한다.)에서 심의, 심사 등을 하고 필요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다.

(2) 필요에 따라 지사, 기타의 집행 기관(이하 『지사 등』이라고 한다.)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하고 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3) 민의를 현(縣)의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평소부터 현(縣)의 행정에 대한 지역 또는 현(縣) 영역의 현민(縣民)의 의견을 듣고 현민(縣民)에게 설명한다.

2. 의원은 전항 각 호에 언급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부단한 연찬의 노력을 한다.

제5조(의원과 회파) 1. 의원은 의회활동을 의원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회파를 결성할 수 있다.

2. 회파는 현(縣)의회 내의 자율적인 단체로서 의회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며, 회파의 회의를 주최하는 것 이외에 조사·연구, 정책입안, 예산요망, 홍보 활동 등의 실시 주체가 될 수 있다.

제6조(윤리 등의 유지) 의원은 공공의 입장을 자각하고, 현민(縣民)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항상 윤리 및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현(縣)의회

제7조(현(縣)의회 사명) 현(縣)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이 다채로운 의회활동을 통해서 현민(縣民)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고, 현(縣)의 행정에 적절하게 반영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8조(현(縣)의회 역할) 1. 현(縣)의회는 전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음에 언급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의사기관으로서 현(縣)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

(2) 자치입법권의 담당자로서 정책입안 등을 하는 것

(3) 의견서, 결의 등에 의해 국가 등에 의견 표명을 하는 것

(4) 지사 등의 행정·재정의 운영 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

(5) 의회활동으로 명확해진 현(縣)의 행정의 과제 및 심의, 심사 등의 내용에 대해서 현민(縣民)에게 설명하는 것

2. 현(縣)의회는 의원 및 현(縣)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의회 등과의 연계 하에서 필요한 법제도의 재검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3. 현(縣)의회는 제1항의 역할에 필요한 자기의 정책입안 기능의 충실 및 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현(縣)의회 운영) 현(縣)의회는 의회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의 등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원 간 토의 등의 방법에 의해 활발한 논의가 행해지도록 적절한 운영을 한다.

제10조(현(縣)의회 기능 강화 등) 1.현(縣)의회는 계속적인 의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현(縣)의회는 의원이 그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의 신분상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현(縣)의회는 의회활동에 관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자문 등을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현(縣)의회는 현(縣)의회의 기능 강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장의 권한의 강화를 위해 몰두한다.
5. 현(縣)의회는 의회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6. 현(縣)의회는 의원의 조사·연구 및 현(縣)의 행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의회도서관의 충실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4장 현민(縣民)과 현(縣)의회

제11조(현민(縣民) 참가의 추진 등) 1. 현(縣)의회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에 유의하고, 주권자인 현민(縣民)의 의회활동에의 참가를 추진한다.

- (1) 회의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
  - (2)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 (3) 의회활동에의 참가를 추진할 때는 모든 현민(縣民)들과 함께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2. 현(縣)의회는 현민(縣民) 등의 식견 및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참고인 및 공청회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3. 현(縣)의회는 현민(縣民)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및 진정을 현민(縣民)의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 현민(縣民)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공청 홍보 기능의 충실) 1. 현(縣)의회는 정책입안 등에 참고하기 위해 폭넓게 현민(縣民)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2. 현(縣)의회는 다양한 홍보 매체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 이외에, 필요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의회활동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노력한다.

#### 제5장 현(縣)의회와 지사 등의 관계

제13조(지사 등과의 관계) 현(縣)의회는 2원대표제 하에서 지사 등과의 입장과 권능의 차이를 근거로 대등하고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8조 제1항 각 호에 언급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14조(질문 등의 충실) 현(縣)의회는 회의 등에서의 질문 및 질의의 충실을 위해 일문일답방식, 기타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한다.

제15조(현(縣)의회에의 설명 등) 1. 지사 등은 예산 편성 방침을 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했을 때 또는 현(縣)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과 시책에 관하여 기본방침, 초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작성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현(縣)의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사 등은 예산 편성 또는 현(縣)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계획 등이 중요한 정책 및 시책의 작성·변경에 있어서 관련된 조례의 제정 목적 또는 관련된 결의에 포함된 현(縣)의회의 정책제안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지사 등의 반문) 지사 등은 회의와 위원회에 있어서의 질문 및 질의에 대하여 의장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답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문할 수 있다.

#### 제6장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이 조례는 현(縣)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 현(縣)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2. 의원정수, 정례회, 위원회, 정무조사비, 의회도서관, 의원보수, 의회의 의결에 첨부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조례의 재검토) 현(縣)의회는 사회 정세의 변화, 현민(縣民)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재검토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오이타시의회기본조례 (大分市議會基本條例)

#### 제1장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시장과 함께 2원대표제의 일익을 짊어지는 의회에 대하여 활동 원칙, 시민 및 시장과의 관계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기초를 두는 시민의 신탁에 응하는 의회를 실현함으로써 시민복지의 향상 및 시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의회 및 의원의 활동 원칙

제2조(의회의 활동 원칙) 1.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것을 항상 자각하고, 시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및 다른 집행 기관(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의 시정의 운영을 감시한다.

2. 의회는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파악해 시정에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 상호간의 자유로운 토의를 존중하고,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입안하며, 시장 등에 제언하는 것 등에 의해 시민과 함께 마을 조성의 활동에 몰두한다.

3. 의회는 시민에게 열린 의회를 목표로 하고, 의회가 하는 활동에 시민이 참가할 수 있게 정보공개에 몰두함과 동시에, 시민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운영에 대해서 그 경위 및 이유 등을 설명하는 책임을 갖는다.

4. 의회는 시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 大分市의회회의규칙(1967년 大分市의회규칙 제1호), 大分市의회위원회조례(1967년 大分市 조례 제4호), 의회 내에서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끊임없이 재검토를 실시한다.

제3조(의원의 활동 원칙) 1. 의원은 의회가 합의제 기관인 것을 인식하여 의원 상호간의 자유로운 토의를 존중해야 한다.

2. 의원은 시장 전반에 관한 과제, 시민의 다양한 의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적합한 활동을 해야 한다.

3. 의원은 시민 전체의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활동을 해야 한다.

4. 의원은 자기의 의회활동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제4조(회파) 1. 의원은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 회파를 결성할 수 있다.

2. 회파는 의회가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제언 등을 하려고 할 때는 필요에 따라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제3장 시민과 의회의 관계

제5조 1. 의회는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의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2. 의회는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3. 의회는 청원 및 진정을 시민에 의한 정책제안으로서 평가함과 동시에 그 심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4. 의회는 시민과의 의견 교환회의 개최 등에 의해 의회가 하는 활동에 시민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제언의 확대를 도모한다.

5. 의회는 전(前) 각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홍보지의 발행, 의회보고회의 개최 등에 의해 시민에게 의회활동을 보고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해당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등에 의해 의회운영의 개선을 도모한다.

### 제4장 시장 등과 의회의 관계

제6조(시장 등과의 관계의 기본원칙) 의회는 2원대표제 하에서 시장 등과 항상 긴장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사무 집행의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정책입안, 정책제언 등을 통해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 몰두해야 한다.

제7조(일문일답에 의한 질의 응답 등) 1. 의회의 회의에 있어서의 질의·응답은 시정상의 논점 및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의회의 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시장 및 기타 집행기관의 대표 및 보조 직원은 의원의 질문, 정책제언, 의원제출 의안 등에 관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반문할 수 있다.

제8조(정책 등의 감시 및 평가) 1. 의회는 시장에게서 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책, 계획, 시책, 사업 등(이하 「중요한 정책 등」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의 설명을 요구한다.

- (1) 중요한 정책 등의 실시 배경
- (2) 검토한 다른 정책안 등과의 비교 검토
- (3) 종합 계획에 있어서의 근거
- (4)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 (5) 재원 조치
- (6) 장래 효과 및 비용

2. 의회는 중요한 정책 등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입안 및 집행에 있어서의 논점 및 쟁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동시에 집행 후에 있어서의 정책평가에 이바지하는 심의에 노력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의 정책설명 자료의 작성) 의회는 시장이 예산 또는 결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시책별 또는 사업별의 정책설명 자료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장 자유토의에 의한 합의 형성

제10조 1. 의회는 의안 등의 심의 또는 심사에 있어서 의원 상호간에 자유로운 토의에 의해 합의 형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2. 의장 및 위원장은 의원 상호간의 자유로운 토의가 적극적으로 실시되도록 의회의 회의 및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3. 의원은 의원 상호간의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서 합의 형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 제6장 위원회의 운영

- 제11조 1. 의회는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새롭게 생기는 행정과제 등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2. 위원회는 위탁된 의안 등의 심사에 있어서 참고인제도 및 공청회제도를 활용하고, 시민의 전문적 또는 정책적 식견 등을 토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심사의 경과 등을 설명함과 동시에 위원 및 시민이 자유롭게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 제7장 정치윤리

- 제12조 1. 의원은 시정이 시민이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신탁에 응하기 위해서 정치윤리의 향상과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2. 의원의 정치윤리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장 정무조사비

- 제13조 1. 회파 및 의원은 정무조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해야 한다.
2.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장 의원의 정수 및 의원보수

- 제14조(의원정수) 1. 의원의 정수는 효율적·능률적인 의회운영의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해져야 한다.
2. 의회는 정수의 변경에 있어서 공청회제도의 활용 등에 의해 시민의 의견의 청취 및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3. 의원 정수는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의원보수) 1. 의원보수는 사회·경제정세, 시의 재정 상황, 유사한 타 시의 의원보수 등을 감안하고, 의원의 활동 상황을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2. 의회는 의원제안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보수의 변경에 있어서 공청회제도의 활용 등에 의해 시민 의견의 청취 및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3. 의원보수는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 제10장 의회 및 의회사무국의 체제 정비

- 제16조(의원정책연구회 및 의회활성화 추진 회의) 1. 의회의 정책형성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원정책연구회를 설치한다.
2. 의회의 개혁에 계속적으로 몰두함과 동시에, 이 조례의 취지에 근거하는 의회운영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 의회활성화 추진 회의를 설치한다.
  3. 의회는 의원정책연구회 및 의회활성화 추진 회의의 충실 강화를 도모한다.
- 제17조(의원연수의 충실) 의회는 의원의 정책형성, 정책입안 등에 관계되는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원연수의 충실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18조(의회홍보의 충실) 1. 의회는 시정에 관계되는 중요한 정보를 의회의 관점에서 시민에 대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의 의견, 요망 등을 채택하고, 그 내용 및 대응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2. 의회는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많은 시민이 의회와 시정에 관심을 가지도록 의회홍보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 제19조(의회사무국의 체제 강화) 의장은 의회의 정책입안 등을 보조하는 조직으로서 의회사무국의 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의회도서관) 의회는 의원의 조사·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회도서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동시에 그 도서, 자료 등의 충실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제11장 최고 규범성

- 제21조(최고규범성) 이 조례는 의회의 최고규범이며,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 규칙 등을 해석하거나 제정하고, 혹은 개폐하는 것에 있어서 이 조례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과의 조정을 도모해야 한다.

제22조(의회 및 의원의 책무) 1. 의회 및 의원은 이 조례 및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해서 의회를 운영하고, 시민의 신탁에 응해야 한다.

2. 의회는 의원에게 이 조례의 이념을 침투시키기 위해 일반선거를 거친 임기시작후 신속하게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③ 미에현의회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원대표제 아래 의회의 기본이념, 의원의 책무 및 활동원칙 등을 정하고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면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현민의 요구에 적확히 답하고 현민복지의 향상 및 현의 정세의 신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의회는 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하여, 현민 자치의 관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제3조(기본방침) 의회는 전조의 기본이념에 준하여, 다음에 나열한 기본방침에 기초한 의회활동을 행하기로 한다.

- ① 의회활동을 현민에게 설명할 책무를 가지는 것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함과 동시에, 현민이 참여하기 쉬운 열린 의회 운영을 시행할 것
- ② 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정책결정 및 지사 등의 사무 집행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할 것
- ③ 제출된 의안의 심의 또는 심사를 행하는 것 이외에 독자적인 정책입안이나 정책 제언을 위해 노력할 것
- ④ 지방분권의 추진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회 개혁을 추진하고, 다른 자치체 의회와의 교류 및 제휴를 할 것

제2장 의원의 책무 및 활동원칙

제4조(의원의 책무 및 활동 원칙) 의원은 지역 과제뿐만 아니라 현민의 과제와 그에 대한 현민의 의향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합의제 기관인 의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의회활동을 통해 현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 2. 의원은 일상의 조사 및 연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자질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 3. 의원은 의회활동에 대해 현민에게 설명하는 책무를 가진다.
- 4. 의원은 의장에서 질의 및 질문을 할 때에는 대면연단에서 현정의 과제에 관한 논점을 현민에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 등의 방법을 통해 하기로 한다.

제5조(회파) 의원은 의회활동을 위해 회파를 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2. 회파는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제언에 관해 회파 간 조정을 통해 합의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 3. 회파는 의원이 전조에 규정한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지원하기로 한다.

제3장 의회 운영의 원칙 등

제6조(의회 운영의 원칙) 의회는 본 현의 기본적인 정책 결정, 지사 등의 사무 집행의 감시 및 평가 및 정책 입안과 정책 제언을 하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의회는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선출할 때에는 그 경과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 4.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각각의 설치 목적에 따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제6조의 2(의회 정수 및 선거구) 의회는 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각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수에 대해서 현민의 의사 등이 적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검토해야 한다.

제7조(의회의 설명 책임) 의회는 의결책임을 깊게 인식하고 의회운영,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제언 등에 관하여 현민에게 설명할 책무가 있다.

제4장 지사 등과의 관계

제8조(지사 등과의 관계 기본 원칙) 의회는 이원대표제 하에 지사 당과 항상 긴장감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사무의 집행에 대해 감시, 평가를 함과 동시에 정책입안 및 정책제언을 통해 현정의 발전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2. 의회는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지사 등과의 입장 및 권능의 다름을 인정하고 의회활동을 행해야 한다.

제9조(감시 및 평가) 의회는 지사 등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감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2. 의회는 의장에서 심의, 결산의 인정, 감사의 청수, 조사의 실시 등을 통해 현민에게 지사 등의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책무를 가진다.

제10조(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의회는 조례의 제정, 의안의 수정, 결의 등을 통해 지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 및 정책제언을 행하기로 한다.

#### 제5장 의회의 기능 강화

제11조(의회의 기능 강화) 의회는 지사 등의 사무 집행의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에 관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다.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의회는 의회 활동에 관해서 조사, 자문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따로 조례를 통해 부속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13조(조사기관의 설치) 의회는 현정의 과제에 관하여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의결을 통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의회는 필요한 때에 전 항의 조사기관에 의원을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제1항의 조사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검토회 등의 설치) 의회는 현정의 과제에 관하여 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목적을 명확히 한 후에, 의결을 통해 의원에서 구성한 검토회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전 항의 검토회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 2(문서에 의한 질문) 의원은 지사 등에 대하여 문서를 통한 질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전 항의 질문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전 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제1항의 문서에 의한 질문의 수속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의원 간 토의) 의원은 의회의 권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 검토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원 서로간의 토의로 정하기로 한다.

2. 의원은 의원 간의 토의를 통하여 합의 형성을 목적으로 정책입안, 정책제언 등을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한다.

제16조(연수 및 조사 연구) 의원은 정책입안 및 정책제언 능력의 향상을 위해 현수 및 조사연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정무활동비) 회파 및 의원은 조사연구와 그 외의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무조사비를 교부받아, 증거 서류를 공개하는 것 등에 따라 그 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정무활동비에 관해서는 따로 조례로 정한 것에 따른다.

#### 제6장 현민과의 관계

제18조(현민의 의회 참여 확보) 의회는 현민의 의향을 의회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민의 의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의회는 지사 등의 사무 집행의 감시 및 평가, 정책입안 및 정책제언의 과정에 있어서 참고인,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민과의 의견 교환 등 현민 참여에 관하여 제도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제19조(공청 공보 기능의 충실) 의회는 의회에 대한 현민의 의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2. 의회는 공청공보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된 공청공보회의를 설치한다.

제20조(위원회 등의 공개) 의회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제21조(의회활동에 관한 자료의 공개) 의회는 미예현 정보공개조례(헤이세이 11년 미예현 조례 제42호)와의 정합을 위해 노력하면서 의회 활동에 관한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에 대해서는 의회도서관에 두고 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7장 의회개혁의 추진

제22조(의회개혁 추진회의) 의회는 의회개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기 위해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개혁추진회의를 설치한다.

제23조(교류 및 제휴의 추진) 의회는 다른 자치체의 의회와의 교류 및 제휴를 추진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분권시대에 어울리는 의회 본연의 상태에 대해서 조사연구 등을 행하도록 한다.

#### 제8장 정치윤리

제24조(정치윤리) 의원은 현민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높은 윤리적 의무가 부과되어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현민의 대표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식견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의회는 의원의 정치윤리에 관해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9장 의회사무국 등

제25조(의회사무국) 의회는 의회의 정책입안능력을 향상시키고 의회활동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의 기능 강화 및 조직체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2. 의회는 전문가를 임기를 정해 의회사무국직원으로 활용하는 등 의회사무국 체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26조(의회도서관) 의회는 의원의 조사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의회도서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과 함께 그 기능의 강화에 노력하기로 한다.

2. 의원은 조사연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회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한다.

제10장 보칙

제2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을 제정하고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조례와의 정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제28조(검토) 의회는 이 조례의 시행 후에 항상 현민의 의견, 사회 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요소의 조치를 강고하도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헤이세이 24년 6월 29일 미에현 조례 제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다음의 1조를 더하는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헤이세이 25년 2월 28일 미에현 조례 제5호)

이 조례는 헤이세이 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미에현 이가시의회기본조례 (三重縣伊駕市議會基本條例)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회운영으로 의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해 의회 및 의원의 활동에 의한 “사람이 빛나고”, “지역이 빛나는” 이가(伊駕)의 풍요로운 도시가꾸기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시민 : 시내에서 거주, 재근(在勤) 또는 재학하는 개인 및 시내에서 활동하는 법인 기타의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의회 및 의원의 활동원칙

제3조(의회의 활동원칙) 의회는 다음 원칙으로 활동해야 한다.

- 1.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열린 의회를 지향한다.
- 2.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장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3. 시민에게는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도록 노력한다.
- 4. 의회에서의 합의사항은 계속해서 다시 검토해 본다.
- 5. 시민의 방청의욕을 높이도록 의회를 운영한다.

제4조(의원의 활동원칙) 의원은 다음 원칙으로 활동한다.

- 1. 의회가 언론부(言論府)이고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원간의 자유토론을 중시한다.
- 2. 시정 과제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자기능력을 높이도록 연구하는 시민대표로서 활동한다.
- 3.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부 단체나 지역대표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 전체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5조(회파) 의회의 회파는 정책을 중심으로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한다.

제3장 시민과 의회와의 관계

제6조(시민참여 및 시민과의 제휴) 1)의회는 시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를 발신하고 설명책임을 다해야 한다. 2)의회는 본 회의의 모든 회의를 공개원칙으로 한다. 3)의회는 자치법이 규정하는 참고인제도 및 공청회제도를 충분히 허용하고 시민의 전문적 또는 정책적 식견 등을 의회토의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4)의회는 시민과의 의견교환의 장을 다양하게 열어 의원의 정책입안 능력을 강화하면서 정책제안의 확대를 기해 나간다.

제7조(의회보고서) 1)의회는 시정의 여러 과정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시장전반에 걸쳐 의원 및 시민이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의회보고회를 갖는다. 2)의회보고회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제4장 의회와 행정과의 관계

제8조(의원과 시장 등 집행기관과의 관계) 의회심의회 있어 의원과 시장 등 집행기관 및 그 직원(이하 시장 등 이라 함)과의 관계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긴장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1. 본 회의에서의 의원과 시장 등의 질의응답은 시정전반의 논점 및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의장으로부터 본 회의 및 위원회의 출석을 요청받은 시장 등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의원에 결의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다.
3. 의원은 회기 중이거나 폐회 중에 관계없이 의장을 경유 시장 등에 대해서 문서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답은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4. 의회는 의원이 행한 시장 등에의 구두에 의한 요청 등에 대하여 양자 관계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일시, 요청내용·대응 및 경과 등을 기록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장 등에 요구한다.

제9조(의회 심의회 있어서 논점정보의 형성) 의회는 시장이 제안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의회 심의회 있어 논점정보를 형성하고 그 정책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명백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1. 정책의 발생원
2. 제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3.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정책과의 비교 검토
4. 시민참여 실시의 유무와 그 내용
5. 총합계획과의 정합성
6. 재원조치
7. 장래에 걸린 비용 재산

제10조(예산 및 결산에서의 정책 설명) 의회는 예산, 결산 심의회 있어 전조에 준해서 알기 쉽게 시책별 또는 사업별 설명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5장 자유토의의 보장

제11조(의회의 합의 형성) 1)의회는 언론부(言論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장은 시장 등에 대한 회의 등에서의 출석요청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의원상호간의 자유토의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2)의회는 본 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의원, 위원회 및 시장제출의안과 시민제안에 관해서 심의결과를 도출할 경우 의원상호간의 논의를 다해서 합의 형성토록 노력한다.

제12조(정책토론회) 1)시정의 중요정책 및 과제에 대해서 의회로서의 공통인식을 조성하기 위해 합의형성을 얻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정책토론회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정한다.

#### 제6장 위원회의 활동

제13조(위원회의 활동) 1)위원회의 심의회 있어서는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시민에 대해서 알기 쉬운 논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위원장은 위원회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위원장 보고를 스스로 작성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책임지고 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심사결과 등을 설명하기 위해 출전강좌(出前講座)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 제7장 정무조사비

제14조(정무조사비의 집행 및 공개) 1)의원은 정무조사비 집행에 있어서 이가시 의회 정무조사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2)정무조사비에 관한 서류보관기한은 지급을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로부터 기산하여 5년 기준으로 하고 의원은 시민이 언제나 열람 가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3)의원은 시민으로부터 서면으로 열람장구가 있으면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단,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제8장 의회 및 의회사무국의 체제정비

제15조(의원연수의 충실강화) 1)의회는 의원연수의 충실강화에 노력한다. 2) 의회는 연수의 충실 강화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 등 분야의원연수회를 년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의회사무국의 체제 정비) 의장은 의원의 정책형성 및 입안을 보조하는 조직으로써 의회사무국의 조사법무기능의 충실강화를 기한다.

제17조(의회 도서실의 이용) 의회 도서실은 의원뿐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제18조(의회광보의 충실) 1)의회는 의안에 대한 각 의원의 대응을 의회광보에 공표하는 등 정보제공에 힘써야 한다. 2)의회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광보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의회와 시정에 관심을 갖도록 의회 광보활동에 노력할 것을 규정 3) 의회는 이가시 케이블 TV 행정정보채널을 통해서 의회활동을 시민에게 주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제9장 의원의 정치윤리, 신분 및 의무

제19조(의원의 정치윤리) 의원은 이가시 의회의원 정치윤리조례를 규범으로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의원정수) 1) 의원정수의 개정에 있어서는 행재정 개혁의 시점(視點)뿐만 아니라 시정현상과 과제, 장래예측과 전망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2) 의원정수의 기준은 인구, 면적, 재정력 및 시의 사업과제와 그리고 유사시의 의원정수와 비교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의원정수조례개정안은 시민의 직접 청구에 의한 경우 및 시장이 제출할 경우를 제외하고 의원 정수와 기준 등의 명확한 개정이유를 제외하고 의원정수의 기준 등의 명확한 개정이유를 첨부 자치법 제109조제7항 또는 제1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의원으로부터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의원보수) 1) 의원보수 개정에 있어서는 의원이 제안하는 경우 시민의 객관적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한다. 2) 의원보수의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직접청구에 의한 경우 및 시장이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이유의 명확한 설명을 첨부해서 자치법 제109조제7항 또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제10장 최고규범성과 재검토 절차

제22조(최고규범성) 1) 이 조례는 의회에 있어 최고규범으로 의회는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조례, 규칙 등의 제정을 해서는 안된다. 2) 의회는 의원에게 이 조례의 이념을 침투시키기 위해 일반선거에 의한 임기 개시 후 신속하게 연수를 해야 한다.

제23조(재검토 절차) 1) 의회는 일반선거에 의한 임기 개시 후 가능한 빠르게 이 조례 목적의 달성 여부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2) 의회는 전 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그 조례의 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전 의원이 찬성한 개정안이라도 본 회의에서 개정이유 및 배경을 상사하게 설명해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⑤ 교토부의회기본조례 (京都府議會基本條例)

#### 전문

교토부 의회는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부민의 신탁에 부응하여 부민 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의회와 지사에 의한 2원대표제하에서 지사와 그 외의 집행기관과 긴장감을 가지는 한편 상호간에 진지인 태도로 임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토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의 구체화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바 지역의 과제는 지역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자주적, 자립적인 주민자치의 원칙에 근거하는 자치 운영의 이상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때에 있다.

교토부 의회는 지금까지 부민을 대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권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전을 진행시켰고 스스로의 개혁에 노력해 왔다.

이에 지금까지의 대전이나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해 더욱 발전시키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의 실현,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을 목표로 부민의 신탁에 전력을 다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토부의 운영에 있어서 교토부 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의 기본이념을 분명히 하고 의회 및 교토부 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고 말한다.)의 활동의 원칙, 부민과 의회와의 관계, 의회와 지사 및 그 외의 집행기관(이하「지사 등」이라고 한다.)과의 관계, 그 외 의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의회와 지사의 두 개의 기관에 의한 부의 운영에 대해 의회의 권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부민의 신탁에 부응하여 의회 권능의 발전 및 의회 기능의 확립, 부민 복지의 증진 및 교토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의회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부정(府政)의 추진 및 나라 및 시읍면 사이의 기본적 관계의 확립을 도모하면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의 구체화 및 교토부의 건전한 발전이 보장된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장 의회 및 의원의 활동의 원칙

제3조(의회의 사명) 1. 의회는 부민으로부터 신탁된 의원에 의해서 구성되는 부민의 대표 기관으로, 부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해 그 반영을 도모하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실시함으로써 부민 복지의 증진 및 교토부의 발전에 임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4조(의회 활동의 원칙) 의회는 부민 의사의 정확한 파악, 부민에게의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의무에 따라 의회의 투명성의 향상 및 부민의 신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2. 의회는 부정이 안고 있는 과제 및 지사 등의 사무와 사업의 집행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기동적이고도 능동적인 활동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의원의 사명) 의원은 부민으로부터 신탁된 부민을 대표로 하고, 부민 전체를 생각해 부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부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부정에 반영시켜, 부민에게 설명함으로써 부민 복지의 증진 및 교토부의 발전에 임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6조(의원활동의 원칙) 1. 의원은 부민의 신탁에 부응하기 위해 부민의 의사 및 부정이 안는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극적으로 정책의 제안 및 제언을 실시함과 동시에 부 및 의회의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의원은 부민의 신탁을 받은,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기에 식견을 가진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부단한 연구를 경주해야 한다.

제7조(회파) 1. 의원은 의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파를 결성할 수 있다.

2. 회파는 회파 활동을 통해서 회파 및 소속 의원의 정책 능력의 향상에 경주해 적극적인 정책의 입안 및 제언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회파는 회파 간의 협의,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 등에 의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의 운영에 노력한다.

## 제3장 부민과 의회

제8조(부민과 의회와의 관계) 1. 의회는 부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부민의 의사를 부정에 반영시키며 부민의 신탁에 부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의회는 부민에 대해서 부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활동 등 의회 활동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무를 가진다.

3. 의회는 부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장의 설치 등 부민이 의회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을 기회를 확보하는 것에 노력한다.

제9조(홍보광청기능의 충실과 부민의 의견) 1. 의회는 그 활동에 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부민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에 노력한다.

2. 의회는 참모인 제도, 공청회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부민 등의 의견의 파악에 노력한다.

3. 의회는 청원 및 진정이 제출되었을 때는 성실하고 적절한 처리 및 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조(투명성의 향상) 1. 의회는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본회의 및 위원회 등의 회의의 공개, 논점이 명확한 심의의 충실 등의 대전을 추진함으로써 그 활동에 관한 투명성의 향상에 한층 노력한다.

2. 전조 제 1항 및 전항의 대전의 실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법을 활용하여 부민 등이 이용하기 쉬운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여 그 실효성의 확보에 노력한다.

## 제4장 의회와 지사 등

제11조(의회와 지사와의 관계) 의회는 이원대표제 아래 의결권을 가지는 의회의 권능과 집행권을 가지는 지사의 권능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한편 지사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긴장감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공통의 목표인 부민 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2조(사무 사업 등의 점검, 감시 및 평가) 1. 의회는 지사 등이 집행하는 시책 및 사무 사업에 대해서 점검,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2. 의회는 전항의 점검, 감시 및 평가를 실시했을 경우에 대해 필요가 있을 때는 지사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을 강의(강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정책의 제언 및 제안) 1. 의회는 의원 제안에 의한 조례의 제정 등 적극적인 정책의 입안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의회는, 지사 등에 대해, 심의, 결의 등을 통해서, 정책의 제언 및 제안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의회는 의회로서의 정책의 제언 및 제안을 실시했을 때는 지사 등에 대해 그 취지를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제14조(심의에 관한 자료의 청구 등) 의회는 의안 등의 심의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지사 등에 대해 해당 심의에 관계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설명 등을 요구한다.

제5장 의회의 운영 등

제15조(의회의 운영의 원칙) 의회는 그 권능 및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합의제의 기관으로서의 심의의 충실과 능률적인 운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6조(본회의) 1. 정례회의 회수에 대해서는, 교토부 의회 정례회 조례(쇼와 31년 교토부 조례 제23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및 그 연장 및 그 개폐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이 정하는대로 한다.

제17조(위원회) 1. 위원회는 부정의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린 운영에 노력한다.

2. 상임위원회는 부정의 과제, 지사 등에 의한 정책의 형성, 사무 사업의 집행의 상황 등에 대응해 기동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3. 특별 위원회는 부정의 과제 등에 대응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심의의 충실) 의회는 의회가 정하는 다양한 방식에 의한 의원의 질의 및 질문, 심의와 관련되는 논점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원 상호간 토론을 실시하는 것 등에 대해 진지하고 충실하게 전개한다.

제19조(의회의 의사의 발신) 의회는 의견서, 결의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의회의 의사를 발신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조사 연구) 1. 의회는 의안 및 지사 등의 사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부정 및 의회 운영에 관한 과제의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의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학식 경험자, 부민, 의원 등으로 구성하는 조사연구를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의원 및 회과는 부정 및 의회 운영에 관한 과제의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 연구의 실시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4. 의원 및 회과는 조사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교부받은 정무 조사비의 용도에 관해 설명하는 책무를 가진다.

제6장 의회 활동의 기반

제21조(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1. 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에 대해서는, 교토부 의회의 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및 각 선거구의 의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쇼와 54년 교토부 조례 제 1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의회는 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에 관해서 검토 또는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엔 의회 및 의원의 활동을 통해서 부민의 의사가 부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의회의 기능의 강화) 1. 의회는 그 권능을 발휘해 발전을 위한 의회 개혁에 계속적으로 임하는 등 기존의 제도나 운영의 방법 등에 대해서 부단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2. 의회는 지사 등의 사무 사업의 집행 상황 등의 점검, 감시 평가 및 정책의 입안 및 제언에 관한 기능에 대해서 회의에 있어서의 심의의 충실을 도모하여 그 강화에 노력한다.

3. 의회는 다른 지방 의회등과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그 권능의 발전 및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연구 등을 실시한다.

제23조(의회 사무국) 의회는 그 권능의 발휘 및 기능을 충실하게 하여 대전의 강화 및 의회 활동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회 사무국의 기능 강화 및 조직의 체제 정비에 노력한다.

제24조(의회 도서관) 의회는 의원의 조사 연구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회 도서관에 충실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하거나 개폐 할 때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제26조(조례의 재검토) 의회는 사회 정세의 변화, 부민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 조례의 규정에 대하고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⑥ 나고야시의회기본조례 (名古屋市議會基本條例)

전문

우리 나고야시는 선거로 선택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시민의 대표이며, 시민 자치의 요점이다.

헌법은 지방 자치체의 체도로써 각각 직접 선거로 선택된 의원으로부터 구성되는 의회와 시장과에 의한 이원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의회와 시장이란 서로 독립 대등한 입장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구조가

되고 있다. 즉, 의회는 시의 방침 등을 결정해 시의 일들이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 지를 체크하는 한편, 시장은 행정의 집행 책임자로서 시의 시책을 실시해, 양자가 각각 적절히 역할을 완수하는 것으로 보다 좋은 시정을 실현해 가도록 기대되고 있다.

근래에는 지역의 일은 지역이 결정한다고 하는 주민에 의한 행정을 실현하는 지방 주권예의 전환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나고야시정을 보다 시민의 시점에서, 시민에게 친밀한 존재로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회의 충실·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나고야시회는 활동 이념을 분명히 해 나고야의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시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스스로 발본적인 의회 개혁에 임해,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시점에서 정책 입안, 정책 제언할 수 있는 의회를 목표로 할 것을 결의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이하 「의회 기본조례」라고 한다.)는 지방자치의 본지에 근거해, 시민이 대표로 한 의회 및 의원 활동의 충실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장 및 의원이 함께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대표제하의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에게 열려있는, 시민에게 친밀하고 존재감이 있는 의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의 역할 및 활동 원칙) 1. 의회는 의원대표제하에 다음의 역할을 담당한다.

- (1) 의안 등의 심의 및 심사에 의해, 나고야시의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 (2) 시장 그 외의 집행기관(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의 사무의 집행에 대해서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한다.
- (3) 시정 등의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을 실시한다.
- (4) 의견서, 결의 등에 의해 나라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실시한다.

2. 의회는 전항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에 근거해 활동한다.

- (1)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회 심의에 반영시키는 것은 의회 활동의 기본이며, 시민의 대표에 어울리는 충실한 심의와 토론을 실시한다.
- (2)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시민이 참가하기 쉬운 열린 의회 운영을 실시해 여러가지 기회를 활용하고, 시민에게의 설명 책임을 완수한다.
- (3) 충실한 심의 및 정무 조사를 통해서 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정책 결정을 실시하기 위해 시장 등과는 항상 필요한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의원의 활동 원칙)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선거에 의해 선택된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으로 내거는 원칙에 근거해 활동한다.

- (1)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해 시민이 대표로서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와 토론을 다해 나고야시의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 (2) 의원은 스스로의 의회 활동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 (3)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것을 자각해 연구, 연수 등을 통해서 항상 스스로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넓은 시점과 장기적 전망을 가져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실시한다.
- (4) 의원은 높은 윤리성을 항상 확립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5) 의원은 의원 상호간에 있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활발한 토의를 다한다

## 제2장 시민과 의회

제4조(시민참가의 촉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의 반영) 1. 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해 의회 활동에 반영시키는 것과 동시에 시민이 의회의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확보하도록(듯이) 노력한다. 또 의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완수한다.

2. 의회는 청원 및 진정의 심사에 있어서의 구두 진정의 실시, 시민 의회 연설 제도의 실시 등 시민이 의회 활동에 참가할 기회에 확보에 노력한다.

3. 의회는 시민의 의견·지견을 심사 등에 반영시키기 위해, 공청회·참고인의 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4. 의회는 의회 보고회를 개최해 의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의회 활동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킨다.

제5조 의회는 시회보, 웹 사이트, 인터넷 중계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의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발신한다.

2. 시회보, 웹 사이트 등은 의회 활동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때문에), 의원으로 구성하는 편집 위원회에 의해 편집한다.

3. 의회의 홍보의 내용 및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는 항상 검증해 충실히 한다.

제6조(정보의 공개) 의회는 시민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리 회의 등의 일정, 의제 등을 시민에게 주지한다.

2. 의회는, 회의를 재개할 때 또는 변경이 있을 때는, 재개의 시각 등의 정보를 방청자에게 주지하도록 노력한다.
3. 의회의 회의 등으로 이용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4. 의회는 중요한 의안에 대한 의원마다의 찬부를 공개한다.
5. 의회는 시민이 방청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

### 제3장 의회와 시장

제7조(시장등과의 관계) 1. 의회는 시장과 같이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에 의한 의사 기관이며, 시장과는 독립 대등의 입장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고야시의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또, 시장 등의 사무의 집행에 대해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해,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에 임한다.

2. 의회는 그 역할을 적절히 하기 위해, 시정에 관한 중요한 계획,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 지방 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 67호) 제9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8조(예산 등에 대한 의회의 역할) 1. 의회는 예산 편성 과정 또는 시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등의 제안 과정에 대해 가능한 한 의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의회는 시장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거나 또는 결산을 의회에 교부할 때 시책별 또는 사업별 알기 쉬운 설명 자료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의회는 예산 또는 시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등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필요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를 개최하는 등 하여 시민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시킨다.
4. 시장 등은 예산의 조제 또는 시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혹은 시책의 입안에 있어서 의회의 정책 제언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5. 의원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안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시장과 협의한다.

### 제4장 의회의 운영

제9조(회의의 운영 원칙) 1.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 활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의원 상호간의 활발한 토의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의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추진한다.

2. 의회의 회의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의회 운영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의회 기본조례의 취지에 따라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협의해 조정한다.

제10조(회기 등) 1. 의회는 의회 활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의원 상호간의 활발한 토의를 하도록 필요한 심의 날짜를 확보한다.

2. 의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고 시정의 과제에 정확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감을 통해서 적절히 본회의를 열 수 있는 회기를 정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1. 위원회는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의안 등의 심사 및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 조사의 충실을 도모하고 위원 사이의 토의도 실시해 그 경과나 결과를 본회의에 대해 정확하게 위원장이 보고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2. 위원회는 시정의 과제에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을 실시한다.
3. 위원회는 의안 등의 심사 및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조사에 임해 시장 등에 자료의 제출을 청구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장 등은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
4. 특별 위원회는 부의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목표, 기간을 정하고, 과제의 심의, 조사를 실시한다. 덧붙여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는 기동적으로 개편 또는 폐지한다.

제12조(질의응답의 기본 원칙) 1. 의원은 시장 등이 제출한 의안 및 시정의 과제에 대해서 회의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논점 및 쟁점을 분명히 하도록 질의 또는 질문한다. 이 경우에 대하여 시장 등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2. 회의 등에 있어서의 의원과 시장 등의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의회는 일괄 질문, 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다.
3. 시장 등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의 등에 있어서의 의원의 질의 또는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파의 자리 매김) 1. 의원은 의회 활동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 회파를 결성할 수 있다.

2. 회파는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을 위해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제14조(정책 입안 기능 및 조사 기능의 강화) 1. 의회는 시장 등의 사무의 집행의 감시 및 평가 및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에 관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2. 의회는 지방 자치법 제 100조의 2에 규정하는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등에 의한 전문적 사항과 관련되는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 의회는 의회 활동에 관해 전문적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인정된 때에는 의결에 의해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는 조사기관을 설치한다.
  4. 의원은 의원 간에 있어서의 토의를 통해서 정책 입안, 정책 제언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할 때 검토회 등을 마련할 수 있다.
  5. 의회는 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켜 의회 기능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활동을 보좌하는 시회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한다.
  6. 의회는 의원의 조사 연구 및 행정의 감시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의회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원의 배치, 예산의 계상 등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도서실의 충실) 1. 의회는 의원의 조사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회 도서실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이 이용하기 쉬운 운영을 하는 동시에 그 기능을 강화한다.
2. 의회는 시회 도서실에 있어서 의회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시민에게 정보를 발신한다.

#### 제5장 의원 정수·의원 보수 등

- 제16조(의원 정수 및 의원 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1. 의원 정수 및 의원 보수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제정 또는 개폐할 때는 의회 기본조례의 취지를 근거로 해 제출한다. 이 경우 민의를 청취하기 위해 참고인 제도, 공청회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법의 취지를 근거로 의회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의원의 역할을 완수해 각종의 다양한 민의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수를 확보하고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별도 조례로 정한다.
  3. 의원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법의 취지를 근거로 나고야시의 재정 규모, 사무의 범위, 의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 공선으로서의 직무나 책임 등을 고려해, 별도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정무 조사비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1. 정무 조사비에 대해서는 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수증 등의 증거 서류를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정무 조사비에 의한 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보고하도록 노력한다.
2. 정무 조사비에 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이 조례를 제정해 또는 개폐 할 때는 의회 기본조례의 취지를 근거로 해 이것을 제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미국 지방의회의 기본조례 제정 · 운영 사례

### ① 뉴욕시의회 자치법규

#### 1장 시의회 소집

##### 1.00 정기와 특별 회기

의회는 7월과 8월 동안을 제외하고는 최소 한달에 두 번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회의는 의장에 의해 호출된다. 매년 첫 번째 회의는 현장 회의로 지정된다. 첫 번째 회의는 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 수요일 정오에 개최되어야 한다. 의회는 그로부터 설정된 시간 전에 입법 문서 단위로 각 의원 및 일반인에게 최소 24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휴회의 통지는 뉴스 미디어에 제공되어야 하며 시청에서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2장 의회 의장: 기타 공무원

##### 2.00 의회 의장: 기타 공무원.

의회는 의원 중에서 적절한 인물을 의장 및 그 외 공무원으로 선출한다. 의장의 부재시에는 의장은 입법일을 위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의원을 지명할 수 있다.

##### 2.05 의장실

등록된 로비스트와 의원, 의회 직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특정 지정 영역외에 의장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정구역은 표지판으로 게시하여 구분한다.

##### 2.10 의제

의장은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의 특별 회의 의제를 수집하며 각 구성원들에게 그 사본을 제공한다. 의제는 모든 거부권, 시장 또는 기타 시, 군 및 자치 공무원, 각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의 전문 그리고 하위위원회, 특별상임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 2.20 의회 의사당

의사당 및 의회회의실 및 기타 특정 의회업무를 위한 공간의 사용은 의장의 관할권 내에 두어야 한다.

##### 2.25 의회 라운지

등록된 로비스트와 의원, 의회 직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특정 지정 영역 외에 의회 라운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정구역은 표지판으로 게시하여 구분한다.

##### 2.30 전체위원회

의장은 언제든지 전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의 사전에 일정과 함께 이러한 회의의 통지를 각 회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회의의 통지는 뉴스 미디어에 제공되어야 하며 시청에서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2.40 인사 및 회계 보고

의장은 각 의원들에게 의회와 소관부처에서 보상을 받으며 일을 하는 각 개인들의 명단과 그 보상의 양이 자세히 명시된 연례 보고서를 제공한다.

##### 2.50 제안된 의회 예산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의 제안된 예산안을 각 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2.60 시의회 구성원의 운영비용

각 의원 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의회 예산에 할당된 금액은 각 의원이 동일해야 한다. 의장은 각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각 의원실의 운영비를 줄일 수 없다.

##### 2.65 특정 광고에 대한 운영 비용의 기금 사용 금지

의회의 어떤 기금도 특정 매체의 광고 구입에 사용되어질 수 없다.

##### 2.70 차별 및 회롱에 대한 정책

의장은 의회내 어느 부서에서든 차별과 회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며 이는 모든 의원과 의회내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 2.80 의회 구성원의 자격요건

의회 의원은 공공 임원으로서의 공직을 보유하기 위해 뉴욕주 공공 공무원 법률 제3조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0조에 의거, 공직에 있어서 공석의 창출에 대한 관할 조항을 설정한다. 조례 및 특권, 선거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관할한다.

#### 3장: 주재임원

##### 3.00 주재임원 요건

의장은 의회를 주재하며 모든 정기 및 특별 회의를 주관한다. 의장은 정족수의 부재를 제외하고, 조례 규칙에 명시된

방식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 3.10 질서, 품격

주제임원은 질서와 품격을 지켜야 한다. 의회장 내에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해와 무질서의 경우 주제임원은 이를 해소시킬 수 있다.

#### 3.15 이동전화 사용 금지 -

의회는 회의동안 모든 휴대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며, 주제임원은 이를 강제할 수 있다.

#### 3.20 순서에 의한 의원 호출

주제임원에 의해 순서대로 의원이 호출되면 의원은 자리에 착석한다.

#### 3.30 항의

모든 의원은 주제임원의 지배방식에 대해 의회에 항의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이를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며, 주제임원은 이에 대해 그 방식을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 4장: 다수당과 소수당 대표

#### 4.00 다수당 대표

다수당 대표는 의회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의원이 된다. 대표의 부재시 다수당 대표는 이를 대신할 의원을 지명한다.

#### 4.10 소수당 대표

소수당 대표는 다수당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의회의 의원이 선택된다. 대표의 부재시 소수당 대표는 이를 대신할 의원을 지명한다.

### 5장: 서기와 직원 - 임무

#### 5.00 의사록

입법문서부서는 각 회의의 절차를 담은 의사록을 준비하고 출석한 의원들을 기록한다. 모든 제출된 문서들은 각 회의 절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 5.10 공공 공개

의장실은 의원의 출석, 위원회 보고서, 지방법에 의거한 회계보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회내 각 위원회의 정확한 회의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5.20 의사일정

입법문서부는 각 달의 첫 번째 정기회의에 발의된 모든 지방법과 결의안, 의회와 관련된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의사목록들이 발행되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 5.30 확인서

의회 서기의 증명서가 적법된 투표에 의해 통과된 지방법과 결의안의 발의에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첨부되어야 한다.

#### 5.40 기록

입법문서부는 의회에 소개된 모든 법안 및 결의안, 정보통신과 관련된 모든 부속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5.50 규칙과 도시 현장

입법문서부는 규칙과 특권 및 선거 위원회 규칙에 의거하여 제시되고 감수된 의회 규칙의 사본들을 발행하여 각 의원에게 제공한다.

#### 5.60 경호관 임무 부여

의장은 경호관 및 보조경호관을 배당한다.

#### 5.70 경호관 : 부재시

부재시 의장은 부재한 의원에게 경호관을 보낼 수 있다.

#### 5.80 경호관 : 임무

경호관은 모든 회기에 참석하여야 하고 주제임원의 지시에 따르며, 의사당내 모든 장소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힘쓴다.

#### 5.90 시 서기에 대한 문서발송

입법문서부는 모든 의제, 일정, 채택된 지방법과 결의안에 대한 사본을 시서기에게 제공한다.

#### 5.110 입법과정 추적

의장실은 모든 제안된 지방법과 결의안, 위원회 보고서 및 회원의 투표 기록 등을 공공 입법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장: 지방법과 결의안 제출

#### 6.00 서류의 준비와 발표

모든 위원회의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회의날 3일 이전 오후 1까지 의장실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 외 다른 모든 서류는 그 주제에 대한 간단한 문장과 함께 승인되어야 한다

#### 6.20 발기인

모든 제안된 지방법과 결의안에 대한 첫발기인이 주요 후원자로 간주되어야한다.

#### 6.30 위원회 관련 서류들

제안된 모든 지방법이나 결의안은 의장에 의해 각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의장은 또한 이를 관련된 두 개 이상의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 6.40 입법의 형식

모든 제안된 지방법의 도입에는 제안된 지방법의 목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6.50 회계 영향 보고서

재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지방법이나 예산변경의 제안은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의 승인 아래 의장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 6.60 입법 초안 작성

의장은 공평한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회원에게 입법 초안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7장: 위원회(생략)

#### 7.10 위원회 집행부

대변인, 의장, 다수당 대표와 소수당 대표로 구성된다.

#### 7.20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

각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호명된 이가 위원장이 되며, 각 위원회 멤버는 지배정당내의 연장자 순서대로 호명이 된다.

#### 7.30 위원회 임무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관할하에서 각 부서와 관련된 시장의 운영보고를 경청해야 한다.

#### 7.40 위원회 직원

모든 상임위원회는 최소한 한명 이상의 전임 직원을 둔다.

#### 7.50 위원회 회의

모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열린다. 위원회는 적어도 72시간 전에 회의의 실행을 공중에 알려야 한다. 또한 담당의제가 회의 이전에 준비되고 배부되어야 한다.

#### 7.60 공공 방청

위원장은 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공공 방청을 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공 방청은 항상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 7.65 이동전화 이용 금지

의회는 모든 위원회의 회의에 이동통신수단의 금지를 명한다.

#### 7.70 투표

모든 투표에 대해 윤리규정위원회는 공공임원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의 투표를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7.80 시의회 위원회의 보고

각 위원회는 시의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7.90 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전체의회에 제안된 지방법이나 결의안에 대한 채택 및 승인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7.100 발기인의 특권

처음으로 지방법과 결의안을 발의한 발기인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위원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 7.110 위원회 집행부의 권리

집행부는 질의와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투표 권한은 가질 수 없다.

#### 7.120 위원회 회의의 참여

위원회 구성원은 권리의 문제로서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여 투표와 서면제출을 한다.

### 8장: 정기회의 - 절차

#### 8.10 흠률 청원

입법화 이전에 의회에 소개된 결의안은 입법문서부에 의해 10개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 8.20 의회 회의실에서의 입장 허가

등록된 로비스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의회 의사당에 정기 및 특별 회의 중에 입장할 수 없다.

8.21 정기회의시 위원회 입장 허가

등록된 로비스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위원회실에 정기 및 특별 회의 중에 입장할 수 없다.

8.30 명단 호출 순서

의회 명단 호출은 라파넷 순서대로 하며 그후 소수당 대표, 다수당 대표, 의장의 순서대로 한다.

8.40 투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각 의원은 투표를 진행한다.

8.50 결의안 심의

위원회에 의해 고려되고 승인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결의안도 그 도입 당일 채택되지 않는다.

## ② 로스앤젤레스시의회 자치법규

1장: 시 공무원의 선거와 임명

각 홀수 년 6월 30일 이후 의회의 첫번째 정기 회의에서 시 서기는 의장의 선거를 총괄하며, 의회는 과반수 투표에 의해 의원중 한명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의장은 다음 회의 때 또는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봉직하며 그러한 방식으로 임시의장 및 임시의장보 등을 선출한다.

2장: 공공 공지, 출석 및 논평

의회의 각 정기회의 의제는 회의 전 최소한 72 시간전에 공지한다. 그것은 회의에서 논의하는 각 항목에 대한 간략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의장은 언제든지 전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의 사전에 일정과 함께 이러한 회의의 통지를 각 회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회의의 통지는 뉴스 미디어에 제공되어야 하며 시청에서 공공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아무도 의회회의 중에 의원이나 시 서기를 방해할 수 없다.

3장: 주재임원

주재임원은 의회회의가 예정된 시간에 의석을 배치하고, 정족수의 부재를 제외하고는 규칙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여야한다.

주재임원은 의회현장과 기타 정부법에 의해 의회 규칙을 강제하고, 동시에 이의 참조 및 지도, 해석, 개정을 위해 로버트 법안을 사용하거나 이 법안을 보완할 수 있다.

주재 임원은 정숙을 유지시키며 모든 질문의 순서를 결정한다.

4장: 의회 회의 일시와 순서 및 정족수

의회의 정기회의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시청에서 개최한다.

모든 의원은 각 정기 회의 시간에 착석하여야 하며, 특별 회의는 시청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재임원이나 의원의 과반수의 소집시에 개최될 수 있다.

시 서기는 각 회의에서 고려해야 할 모든 항목의 목록이 보여지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이는 의제로 설정될 수 있다.

의제는 회의에서 논의되는 각 항목에 대한 간략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각 의원은 정기회의에서 과반수 투표에 의해 부재가 허용되지 않는 한 모든 정기 및 특별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10명의 의원이 참석시에는 모든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하의 참석인원일 때에는 회의는 정회될 수 있으며 부재자들의 참석을 강제할 수 있다.

5장: 의회 토론 및 시간 제한

의회에 참석하도록 요청된 의원들은 의회 컴퓨터 기록유지 시스템에 자신들의 청원이 일람표로 만들어져야 한다. 의원은 토론에서 질문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한정하며 개성을 억제한다.

구성원이 원하는 경우에 의회 의장 또는 임시 의장은 토론을 개최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해 모든 회원은 한번씩의 경청할 기회가 있으며 이에 대해 각자 3분씩의 시간 제한 하에서 발언권을 얻는다.

6장: 시 위원 및 공무원의 지명 및 해임

시장에 의한 기타 공무원들의 임명 및 해임은 의회에 의한 승인이 요구되며, 해당되는 의회의 위원회에 직권상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의 행위는 시 서기에 의해 사전에 시의원과 각 구역에 알려져야 하며 임용에 각 개인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이 시위원의 지명을 추천할 시, 시 서기는 각 시의원들에게 정기회의 31일 전에 이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8장: 투표

주제임원이 소집을 지시할 경우, 우선 이는 의회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수행이 되어져야 한다 구두로 의원호출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알파벳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회전산시스템에 의해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각 의원들은 자신들의 할당된 투표 회로를 작동시킬 수 있다.

투표의 소집은 프랜차이즈 허용, 계약의 승인, 재산의 처분, 법령 통과 또는 심의, 시의 예산의 지불, 또는 부채의 상환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9장 : 특별회의

의회와 위원회의 특별회의에 대한 과정은 의회의 의제에 대해 제공된 항목에 의해 제한되어진다. 특별회의를 위한 의제는 적어도 회의의 24시간 이전에 상정되어진다.

10장 : 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

의회 상임위원회는 현장에 규정된 의무 및 기능에 의해 운영된다.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예정표는 적어도 회의전 72시간 전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의에서 처리되거나 토론된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예정표에 배치되어 있지 않는 항목에 대한 활동에 대해선 구성원의 2/3에 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항상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위원회가 정회할 때에도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11장 : 시 규칙

로스앤젤레스의 시 규칙들은 의회위원의 2/3의 투표에 의해 유예될 수 있다. 동시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규칙은 개정되어질 수 있다.

또한 이들 규칙의 사본과 각 위원회의 의제는 시 서기실에서 대중에 의해 관람되어질 수 있다.

12장 : 임무부여

경호관은 의회에 파견된 경찰로서 적어도 한명 이상 의회 회의시에 참석되어야 한다. 또한 시 서기는 의회 회의동안 의사관련 회보를 보유하고 의사절차에 대한 기록을 완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공고를 각 위원회와 의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시 서기 및 주요 법률 대표자는 필요한 용역 및 조연의 목적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각 도시운영기관의 대표자, 여타 시청 및 부서의 엔지니어, 통계관 등은 그들의 의견이 필요할 때 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13장 :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 대한 견책 절차

의회는 결의안 채택시에 부여된 의원들의 권리에 의거하여, 결의안을 채택하는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들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회 의원에 대한 견책의 요구는 다른 의회 의원에 의해 시 서기에게 제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견책의 확실한 원인을 제공하는 특별한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산호세 시의회 자치법규

Sec 400: 의회의 보장된 권한

도시의 모든 권한 및 정책에 대한 모든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헌법과 헌장에 의거하여 의회에 그 권리가 주어진다.

Sec 401: 의회의 구성

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의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명이 시장직을 맡으며, 이들은 각종 투표 및 의회 참석의 권한을 갖는다.

(b) 각 의원들은 시내의 나뉘어진 각 구역을 대표하여 정기 시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Sec 402: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 제한

- (a) 시장직은 4년 임기로서 2번 연임할 수 없다.
- (b) 의회 의원은 4년 임기로서 2번 연임할 수 없다.

## Sec 403: 선거구

시장을 제외하고 의원 선출의 목적으로, 지역구는 비슷한 인구수로서 확정된 10개의 구역으로 분할된다. 10개의 지역의 경계는 시 서기실에서 산호세시의 지도를 참고하여 설치되고, 산호세 시의 선거구로서 표시되며, 시의 공식적인 인구 조사에서 포함된 자료에 따라 확정되어진다.

의회는 재획정 조례를 바탕으로 각종 보고와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신중히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의회는 비록 자문위원회가 권고 또는 보고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명시된 기간 내에 법령을 채택해야 한다.

의회에 의해 채택된 지역구 경계의 설정 및 변경은 시 서기실 내의 지도를 참조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 Sec 404: 의회의원 및 시장의 자격

시장을 포함한 시의회 의원은 다음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a) 공식 임명의 시기 이전에 적어도 1년 동안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b) 시장을 제외하고 지역구에 입후보한 의원후보자는 산호세시의 주민으로서 적어도 후보지명 30일 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c) 특정 시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입후보자는 시 서기실에 후보신청서를 작성하고 산호세의 입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재직자는 공통적으로 미국시민이어야 하며, 산호세시의 시민으로서 유권자이어야 한다.

## Sec 405: 자격 심사

의회는 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를 위해 증인을 소환하고, 기록을 요구하는 권한이 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를 포함하여 의원이나 시장은 대중의 앞에서 자격심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

## Sec 406: 임기중 타 사무실 및 직원의 보유

시 현장이 허락하지 않는 의회 구성원의 그 누구도 다른 시 사무실과 시 직원을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주정부법에 의거하여 시의원은 특수 목적을 위한 자문위원회나 행정관청의 구성원이 될 수는 있다.

## Sec 407: 시의회 : 보수

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시의원들은 조례 규칙에 의거하여 매달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홀수 년도의 3월 1일과 4월 30일 사이에 의회급료조정위원회는 월보수의 확정을 시의회에 권고한다. 각 의원들에 대한 월보수는 동일하여야 하며 시장의 보수는 이들을 초과할 수 있다.

시장을 제외한 각 의회 구성원들의 급료는 의회급료조정위원회에 의해 설치된 근거에 의거, 정기회의의 불참시에는 월 보수액의 총액에서 일정액이 공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 업무를 위한 출장시, 또는 병가시에는 이러한 원칙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시장의 경우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급료의 공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 Sec 411: 시의회 : 행정 사무에 대한 간섭

시장이나 어느 시의원도 시공무원의 권한이나 임무에 간섭할 수 없다. 이는 시 공무원들의 임명이나 채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ec 411.1: 부서장, 정책 대상, 고용의 동의

(a) 시 의회는 시 관리 책임자의 권한 하에서 각 시 부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서류를 채택할 수 있다. 제안된 정책 진술서는 수행되어야 할 광범위한 목표와 대상을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b) 각 부서장이 공석이 될 경우 시 의회는 필요하다면 앞서 승인된 정책의 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외 부서장의 임명시, 시행정담당관은 제시된 피임명권자에 대한 의회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와 조인을 추구해야 한다.

## Sec 412: 의회 회의

시 의회는 조례나 결의안에 의하여 의회 회의를 개최할 시간과 장소, 방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Sec 413: 시민참여

공식적인 시정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완성되면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권리를 거부할 수 없다.

Sec 414: 정족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대다수의 원칙에 의거한 정족수가 필요하며 그 이하의 수에 대해선 유예가 될 수 있다.

Sec 415: 규칙과 절차

시 의회는 의사진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회의 시에는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의사진행 시에는 기록이 남겨져야 하며, 그 기록들은 공공의 조사에 이용될 수 있다.

Sec 416: 조사권한

시 의회는 시청 및 각 행정관청 등의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증인확보와 증거물 수집 등을 통한 조사를 실행할 수 있다.

### ④ 샌디에이고 시의회 자치법규

Sec 11: 입법권

도시의 모든 입법권한은 캘리포니아 주헌법과 헌장에 의거하여 의회에 그 권리가 주어진다.

Sec 11.1: 입법권 - 위임불가

시의회는 시의 모든 직원에 대한 급료를 정해 매년 이에 대한 법령을 채택한다. 또한 시의회는 도시 서비스를 위한, 시민의 기능, 경제 상태 및 다른 관련 요소에 대한 샌디에이고 시의 시민의 필요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한 후에 서비스를 실행하는 법령을 매해 5월 30일 이후에 채택한다.

시의회는 급료 규정 법령 및 연 예산 법령의 채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 서비스의 자금 조달에 우선권을 둔다.

Sec 12: 시의회

- (a) 시의회는 도시의 입법 기관으로서 각 의회 구성원은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한 투표권한을 가진다.
  - (b) 시장은 4년 임기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시장은 선거가 있기 전 12월 1일이 지난 첫 번째 월요일의 오전 10시부터 사무실을 보유한다.
  - (c) 시의원은 4년 임기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시의원은 선거가 있기 전 12월 1일이 지난 첫 번째 월요일의 오전 10시부터 사무실을 보유한다.
  - (d) 시의회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임기가 1년 이내로 남았을 경우에 의회는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개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임명된 자는 다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은 공석이 발생할 시 의회는 공석이 발생한 지 180일 이내에 정기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석 발생 90일 이내에 특별 선거를 소집한다. 만일 180 이내에 정기 선거가 있다면 시 의회는 정기 선거와 특별 선거를 통합할 수 있다.

Sec 12.1: 의원 급료

매 짝수년의 2월 15일 이전에 의회급료조정위원회는 의회에 시 의원들의 급료를 조정할 조례의 시행을 권고한다. 시 의회는 위원회에 의해 권고된 조례에 의해 급료를 정한다. 시 의회는 그러한 조례나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급료의 총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Sec 13: 의회 회의

시 의회는 조례나 결의안에 의하여 의회 회의를 개최할 시간과 장소, 방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Sec 14: 의회 규칙

의회는 의원의 선거 및 자격을 심사하고 이를 위해 증인을 소환하고 모든 관련 서적, 기록 및 서류의 제출을 강제하는 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는 의회의 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검토받는다. 의회는 업무와 그 규칙 그리고

순서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결석한 의원의 출석을 강제하는 권한이 있고,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 Sec 15: 정족수

의회에 선출된 의원의 대다수는 업무 이행을 위해 정족수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족수 이하의 의원 수는 의회 회의를 연기할 수 있고, 의회는 의원의 출석을 강력한 형벌의 조항 하에 강제할 수도 있다.

다수결의 의원들의 찬성에 의해서 각종 법령이나 규칙, 결의안 등이 통과될 수 있으며, 의원 다수의 결의에 의해 부제자에 대한 의회 참석을 강제할 수 있다.

#### Sec 16: 법령 및 결의안의 인증 및 출판

법령 및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후에 각 법령 및 결의안 등은 시장과 시 서기의 서명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위해 출판물로 편찬된다. 최종적 통과 이후 15 일 안에 시의 대리인은 통과된 법령 및 결의안의 요약본을 간행하여야 한다.

#### Sec 17: 기타 법령의 효과

현 헌장이 유효하는 한 모든 법령이나 결의안은 개정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강제성이 발휘될 것이다.

#### Sec 20: 법령의 법진 편찬

의회는 체계에 의해 시의 본질적인 법령 모두를 성문화할 수 있다.

#### Sec 21: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시 공무원을 소환하고 그들로부터 권한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는 시의 시민들에 의해 보존된다. 또한 주민발의와 주민투표가 법령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항시라도 샌디에이고 시의 법령은 주민발의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규정하고 있으며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통과와 함께 그 결과의 효력이 즉각 나타나며 의회의 어떤 법령에서든지 운용될 수 있다.

## ⑤ 보스톤 시의회 자치법규

### 총칙

#### 1항: 회의 시기

시의회는 정기 회의는 보스톤 시청의 5층에 마련되어 있는 Christopher A. Iannella 회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12시 정오에 개최된다. 특별 회의는 긴급시 전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회의 공고 48시간 이내에 소집된다.

#### 2항: 정족수

의회는 정족수는 7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의원은 정족수가 된다면 의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3항: 주재 임원

의회 의장은 공무원을 지배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소집 이후 의회 의원을 호출하며 의회 업무를 일정 순서대로 진행한다. 의장은 자신의 부재시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의장과 임시 의장의 공동 부재시 회의 주재 임원은 의원 중 최고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시의회 의장은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의장으로서 2번 연임한 후에는 1년이 지나야 다시 의장으로 봉직할 수 있다.

#### 4항: 의장 결정에 대한 항의

주재 임원은 다른 의원에 우선하여 순서적 관점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모든 질문을 결정할 수 있고, 의석으로부터의 결정사안에 대한 항의도 할 수 있다. 항의되는 모든 질문 사항이 결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업무도 먼저 실행될 수 없다.

#### 5항: 휴회

주재 임원은 20분간 회의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 6항: 질문결정

주재임원은 일체의 토론 없이 질문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7항: 질문분할

주재임원은 의원의 요구가 있을시 각 질문사항을 분할할 수 있다.

8항: 투표에 대한 의혹 제기

주재임원은 모든 투표를 선언한다. 한 의원이 투표에 대해 의심한다면, 점호를 통해서 주재임원은 투표를 재 실시한다.

11항: 의석 부재

주재임원이 의석을 비울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임시의장도 부재시에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다.

12항: 의제

의회 회의가 진행되는 첫날의 12시 정오까지 결의안, 법령, 투표 등에 대한 원본과 17권의 사본이 시장에 의해 시 서기실로 전송이 되어야 한다. 시의원들은 이들의 입법화를 위해 서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출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고의 고려 사항이다.

13항: 시 서기의 임무

시 서기는 회의에 상정된 모든 의제에 대해서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시 서기는 이러한 의제를 발췌하고 목록화하여 시 의회의 웹 사이트에 수록한다.

14항: 집무와 토론의 순서(생략)

15항: 발의의 순서(생략)

16항: 발의안 제출

원칙적으로 발의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발의시에는 3분의 사본이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7항: 발의안 철회

주재임원이 발의안을 받아 들인 경우에 발의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18항: 위원회 할당과 조치

의회의 관련된 위원회에 의해서 청원이나 또는 결의안이 시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공청회를 개최한다.

19항: 다수결

모든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사 표시로서 긍정 또는 부정의 표현을 하여야 한다. 7명의 의원이면 의회에서 다수결의 투표를 이룰 수 있다.

20항: 의원의 부재

법령 및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이 부재시에는 시 서기가 제출된 안을 대신 낭독한다. 주재임원은 서기로 하여금 회의 의제로서 이를 철회하도록 지시한다.

21항: 위원회 임명, 구조와 역할(생략)

22항: 시의회의 행동규정

발언권을 얻으려는 시 의원은 사전에 주어진 전자기기를 통해 신호를 의장에게 보냄으로써 의장에게 발의의 의사를 인지시킨다. 각 의회 의원들은 의회 구성원의 개성과 인품을 존중하며 이를 무시하는 행위를 삼간다. 만일 의원 상호간의 인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해당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를 하여야 하며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의장은 시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3항: 연설 제한 시간

어떠한 의원도 이의 제기를 제외하곤 한 질문에 한번 이상 말하지 않는다. 또한 연설을 하는 의원은 10분 이상 연설할 수 없다. 한번도 발언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에 의해 발언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24항: 의원의 품행**

법률에 따라 의원은 시의 공무원으로서 모든 시 공무원의 행위를 통제하고 경계한다. 시 서기는 이러한 관련 규정이 있는 법안의 사본을 매해 연초에 의원들에게 배부한다.

시의장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의 이해가 얽혀 있을 지도 모르는 시의원들의 품행을 훈련과 교육을 통해 조정한다.

**25항: 의회장의 공공방청**

의회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의회석의 점유 및 지정된 공간 이외의 자리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6항: 의회장의 직원**

의회장에 공식적으로 허가된 공무원이나 직원이외에는 함부로 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으며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이도 발언을 하거나 의회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없다.

**27항: 의회장의 언론실**

의사당내 언론실의 인원들은 회의내에 의원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 또한 주재임원의 동의 없이 아무도 의사당에 출입할 수 없다.

**28항: 조례의 채택**

시의회의 조례는 다수결 투표의 원칙에 의해 해마다 2월의 첫 번째 정기회의 이전에 채택되어야 한다.

### 3. 영국 지방의회의 기본조례 제정 · 운영 사례

#### ① 에딘버러시의회 의사규정

서문

1조 정의

여기서의 "회의"란 정회 중인 회의를 포함한다.

또한 "구성원"이란 시의원과 단순히 위원회와 하위위원회에 임명된 사람을 칭한다.

2조 시행시기

본 의사규정은 2009년 9월 18일부터 적용된다.

3조 선거후 첫 회의 회의

선거년도에 의회는 의원선거가 끝나고 난 후 두 번째 목요일의 오전 10시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의회는 시장 및 부의장, 각종 위원회를 선출한다.

4조 시장과 부의장 - 임기

시장과 부의장은 각기 다음 의원 선거때까지 임기를 보유한다.

단 당사자가 사임을 하거나 의회가 특별회의 이후에 해임을 결의할 시에는 시장과 부의장은 사무실을 유지하지 못한다.

5조 보통 회의

보통회의는 의원선거가 있는지 세 번째 주의 목요일 10시에 열리며 여기에서는 본 의사규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립과 함께 긴급한 현안들을 다루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임명한다.

이후 보통회의는 네 번째 목요일마다 개최한다.

6조 특별 회의

특별회의는 시장의 소집이나 의회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된다.

7조 회의 공고

적어도 의회 회의 시간 3일 전에 법과 행정 부서장은 예정된 시간과 장소를 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각 의원들의 서명에 의해서 공고가 발효된다.

8조 의회의장

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된다. 시장이 부재시에는 부시장이 이를 이으며, 부시장도 부재시에는 의회의 어느 구성원이든 의장을 맡을 수 있다.

9조 의회출석

법과 행정 부서는 출석한 의원들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10조 의회 출석 실패

법과 행정 부서는 6개월 이상 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한 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11조 정족수

의원 정족수는 15명으로 한다.

12조 투표 정족수 미달

만일 정족수 미달시에는 의회에는 상정이 제한된다.

### 13조 대중과 언론 접촉

모든 회의와 위원회는 대중과 언론에 공개가 되어야 한다.

단, 의회는 대중으로 하여금 의회 장소에 머무르거나 떠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중은 의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의회가 의회에서의 사진 촬영 및 라디오나 TV 의 사용, 녹취 등에 대해 허가할 것을 본 의사규정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 사항은 시장의 권한에 의한다.

### 15조 의사 진행 순서(생략)

### 16조 시장 - 권한과 임무

시장의 권한은 결정적이다. 시장이 발언중에는 의회 내 모든 대화는 중지되어야 한다. 시장은 회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서와 관련성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2인 이상의 의원이 발언하기를 원한다면 시장은 누가 먼저 발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의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대당의 대변인은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 17조 정회

의회는 시장이 정하는 시기에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 18조 토론의 질서

발언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일어서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의원은 법안의 개정이나 발의에 대해 직접 제안하여야 하며 어떠한 사항에 대해 한번 이상 발언할 수 없다.

### 19조 연설 시간

의회는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제안 발의자는 5분 이내로, 기타 발언자는 3분 이내로 제한한다.

### 20조 의원에 의한 의사방해 및 공격 행위

만일 시장의 권위가 무시되거나 의사 진행에 방해가 생긴다면 휴회를 신청할 수 있다. 발의는 토론없이 상정된다. 만일 발의가 수행된다면 시공무원들은 시장으로부터 부여된 권한하에 적절한 행위를 취할 수 있다.

### 21조 결의안 철회

결의안은 시장이 상황의 물리적 변화를 기하지 않는 한 12개월 이내에는 변경될 수 없다.

### 22조 회의 의사록

법과 행정 부서의 부서장은 모든 회의 의사록을 기록한다. 의사록에는 참여한 의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발간되어 의회의 구성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 23조 질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원은 시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시장과 위원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를 구체화하여 관련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 25조 발의에 대한 서명

모든 발의는 성문화되어야 하며, 제안자에 의해 서명이 되어야 한다.

### 26조 위원회 제출용 발의안 의회 상정

위원회에 상정될 발의안의 제안도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발의안은 다음 회의의 6일 이전 오후 5시까지 서명이 되어야 하고 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발의안을 의회로 보낼 수 없다.

### 27조 투표방식

의회 구성원의 10명 이상, 위원회 구성원의 2명 이상이 동의할 시 투표가 이루어진다. 만일 투표자의 수가 동수일 때 시장은 캐스팅 보트를 가지며 이러한 원칙은 특정 위원회의 임명과 관련되지 않는 한 적용이 된다.

28조 투표하기

법 및 행정 부서의 부서장이 개시를 하므로 투표가 실시되며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질문을 한다던가, 투표절차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29조 발의 방식

회의 이전에 발의나 둘 이상의 개정안이 있을시, 시장은 그 순서와 절차를 정한다.

30조 공직자 선거, 지명 및 임명

공직자를 지명하거나 입후보를 받을 시, 공식보다 입후보자의 수가 많을 시에는 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두명의 후보자가 동일한 득표를 얻거나 근소한 차로 득표를 할 경우 이들 후보자에 대한 특별 투표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최소의 득표를 한 후보자의 이름은 목록에서 제외된다. 만일 특별 투표에서도 동수가 발생하면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② 글래스고우시의회 및 위원회 의사규정

1조 시의회의 정기 및 특별 회의

선거 이후의 보통회의는 의원선거가 있는지 세 번째 목요일까지 집행부에 의해 그 날짜를 결정한다. 그 회의에서 여기에서는 본 의사규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립과 함께 긴급한 현안들을 다루고 시장과 각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임명한다. 이후 보통회의는 매년 여섯 번째 목요일 13시 30분에 글래스고우의 의사당에서 개최한다. 한편 특별회의는 시장과 의회 다수당 대표에 의해서 여름과 겨울의 시기에 특별회의의 날짜를 정한다.

2조 회의 소집

회의는 당일 3일 이전에 공고가 이루어지며 공고에는 다루어질 의제가 포함된다. 회의 3일 이전엔 의회 참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이 의회 의원들에게 보내져야 한다.

3조 정족수

본 의회의 정족수는 20명이다. 단, 본 회의 1분전까지도 참석자가 20명에 모자른다면 예정된 회의는 정회하고 연기된다.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참석한 인원의 수가 정족수 이하라면 집행부는 시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4조 회의에서 거론되는 업무사항

회의에서 거론되는 사항은 소환장에 의해서만 구체화될 수 있다. 소환장에 의해서 구체화되지 않은 업무 사항은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정해진다.

5조 시장 - 권한과 임무- 캐스팅 보트

시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시장은 발언권을 얻으려는 2명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또한 임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가 동수일때 시장은 그 투표에 대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6조 시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의원

만일 시장의 권한을 무시하거나 의사의 진행에 있어서 공격적이거나 방해 행위를 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 부시장은 그의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만일 부시장이 부재시일 경우 다른 의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의원에 대해서 시장은 여하한 논의나 토론 없이 그 의원의 퇴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의 실행을 의회 공무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조 질의

질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질의가 질문자에게 답변되었을 경우에는 후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다.

8조 발의의 공고

모든 발의는 성문화되어야 하며, 제안자에 의해 서명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공고가 이루어지며 적어도 회의 10분 전에 의회의 집행부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

### 9조 연설

연설을 원하는 의원은 미리 시장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순서에 의해 연설자를 정해야 한다.

연설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다수결의 동의를 얻어 연설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동의를 있을 시에는 별다른 투표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10조 이의제기

의회의 이전 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서는 안된다. 단, 새로운 정보가 있다던가, 상황이 변했을 때 의회는 이의제기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 11조 정회를 위한 발의

회의 정회를 위한 발의안이 연설 끝에 제기될 수 있으며, 시장은 정회나 아니냐를 선언할 수 있다.

### 12조 투표 방식

투표는 전자투표 내지는 거수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발의 및 개정에 대한 제안이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때 이는 의회의 결정으로 승인된다.

### 13조 공식의 충원

공직의 공식 충원을 위한 임명이 행해질 때 이에 대한 단 2명이 입후보할 경우 투표를 통해 다수의 득표를 받는 사람이 임명된다.

의회의 의원 누구도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어느 직책에도 입후보할 수 없다.

### 14조 시의회의 결정

의회에 의한 결정은 의회가 따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의회의 위원회나 하위위원회에 의해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

### 15조 시의회의 궁극의 권한

의회는 위원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위원회가 관련하는 문제를 다시 재상정할 수 있다.

### 16조 의사규정의 유예

의회는 3분의 2의 의원 동의에 의해서 발의에 관한 의사규정에 대한 유예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의는 사전공고 없이 전자투표나 거수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 17조 연례 예산평가

의회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연간 예산에 대한 초안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의 개정을 통해서 승인할 수 있다.

### 18조 이해관계 신고

만일 의회 의원이 계약이나 여타 업무에 있어서 재정적, 비재정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의원 윤리 규정에 의해서 이례 회의 시작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모든 의원은 스코틀랜드 윤리기준 위원회의 시의원 행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9조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 임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다. 각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 20조 서면제출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루어져야 할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를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21조 지역 또는 특별 문제에 관련된 위원회의 비회원 호출

지역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참석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비회원은 위원회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

### 22조 위원회 투표 방식

위원회의 투표는 전자투표 내지는 거수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발의 및 개정에 대한 제안이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때 이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인된다.

23조 의사 기록

회의의 과정은 사전의 승인 없이 어떠한 사진 촬영이나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이 남겨질 수 없다.

24조 존속되어야 할 의사규정

시장과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집행부는 의회에 의해 승인된 의사규정과 규칙 등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5조 의사규정의 변형 및 파기

현행 의사규정의 변경이나 철회는 참석 의원 다수결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버밍햄시의회 자치규약

1조 시의회 규약

1.1 시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관련법과 규약에 의거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본 규약은 헌법 문제에 관련된 규정과 정부 지침에 의거한다.

1.2 규약

본 규약은 버밍엄 시의 자체 규약이다.

1.3 규약의 목적

본 규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의회는 버밍엄의 시민에게 명확한 정치 및 관리 지도력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공공, 개인 및 자원봉사 조직과 연계된 삶의 질 개선을 가능케 한다.
- (b) 지방 기관의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시민의 활동을 지원한다.
- (c) 시의원들이 효과적, 능률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대표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 (d) 법과 정책, 절차와 윤리 규정과 관련된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 (e) 정책결정자들이 효과적으로 공공 정책에 발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창출한다.

2조 시의회의 멤버

2.1 구성 및 자격

(a) 구성

시의회는 시의원이라 불리는 1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b) 자격

선거법에 의해 규정된 자격있는 개인이 의회 공직에 진출한다.

2.2 시의원의 선거와 임기

지방선거는 해마다 5월의 첫번째 목요일에 열리고 날짜와 상황은 의회에 의해 가끔 변경될 수도 있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3 전체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a) 주요 역할

- (i) 궁극적인 정책 입안자로서 시의회를 위한 다수의 전략과 경영 기능 실행
- (ii) 버밍엄에 대한 훌륭한 지배에 공헌하고 활발한 정책 입안에 적극적 참여 및 시민 격려
- (iii) 사회의 개인 구성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표
- (iv) 사회 구성원의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
- (v) 외부에 대한 대표자 업무

(b) 권리와 의무

- (i) 시의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의 기능에 필요한 문건 및 정보, 토지와 건물에 접근을 할 수 있다.
- (ii) 법과 의원행동규정에 의거하여 시의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공개 정보를 기밀로 만들면 안된다.
- (iii) 이 목적을 위해, "은밀하고", "면제된" 정보는 정보 규정에 의해 접근될 수 있다.

2.4 품행

시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버밍엄시의회의 행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3조 시민과 시의회

#### 3.1 시민의 권리

##### (a) 투표와 청원

시민은 시정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정부의 시장에게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b) 정보

(i) 정보가 공개적으로 대중에 공개되는지, 은폐되지 않는지에 대해 의회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지닌다.

(ii) 내각에 의한 주요 결정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iii) 의회와 집행부의 결정에 대한 각종 서류와 기록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iv) 의회의 회계에 대한 감사와 전망을 할 수 있다.

##### (c) 참여

시민은 기밀사항이 아닌 한 위원회의 관련 문제의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 (d) 불평

시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불평할 수 있다.

##### (i) 위원회의 계획

(ii) 의원과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동, 행위, 정책결정

(iii) 영국 윤리기준위원회에 대한 불평

(iv) 기타 사법기관에 대한 불평

#### 3.2 시민의 책임

시민은 의원과 공무원들을 위협, 학대, 회롱, 모욕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시나 의원, 공무원들의 재산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그러한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시민은 다른 시민들에 의해 민형사상의 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

### 4조 전체 시의회

#### 4.1 개념

##### (a) 전체 시의회의 역할

전체 시의회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의회의 정책과 연간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시의회는 정책과 연간예산에 대해 의사당에서 토론한다. 두 번째의 역할은 공공회계에 대한 적법한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다.

##### (b) 정책 형성들

정책 형성들이란 전체 시의회에 의해 승인된 계획과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획과 전략에 관련된 내각의 역할은 전체 시의회에 승인을 얻는 것이다.

##### (c) 예산

예산은 기타 서비스, 부처, 각 프로젝트, 의회세의 기반, 의회의 세입과 세출을 포함한다. 시의회에 의한 연간 예산의 승인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충을 위한 행정적, 법적 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 4.2 전체 시의회에 부여된 기능

전체 시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a) 시 규약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채택하며, 행정부와 의회운영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표한다.

(b) 정책 형성들의 본질적인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그 변경을 도모하거나 승인한다.

(c) 필요할 경우 시의회내 지도자의 선출

(d) 지역 이름의 변경

(e) 지역 입법화를 통한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철회

(f) 의회에 의해 지켜져야 할 각종 법의 준수

#### 4.3 시의회 회의

시의회 회의는 다음의 세가지 형태를 띤다.

(a) 연례 정기회의

(b) 보통 회의

(c) 특별 회의

이러한 회의는 의사규정에 의해 실행된다.

### 5조 시의회의 의장직

#### 5.1 시장의 역할과 기능

시장의 부재시 부시장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 (a) 의식절차의 역할

임기동안 시장은 버밍엄시의 첫 번째 시민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시장실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시장은 임기 동안 정치와는 무관하여야 하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정책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버밍엄시 시의회의 윤리 규정은 시장과 부시장에도 적용된다.

(b) 시의회 회의의 의장직

시장은 의회 회의를 주관한다. 시장은 매년 연례정기회의에서 선출된다.

시장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i) 의회 회의동안 시 규약을 통해서 버밍엄시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다.

(ii) 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질서있게 수행되도록 모든 정당의 의원들의 권리가 버밍엄 시의 시민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확립되기 위해 의회 회의를 주관한다.

(iii) 시의회 업무에 대한 대중의 인지와 지식, 참여를 촉진한다.

(iv) 각종 시민 의식에 참여한다.

(c) 선거구 참여와 구위원회 회의

시장은 모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논의중인 문제에 대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 수 있다.

5.2 시장과 부시장의 제후

시장과 부시장은 자신들의 임기 동안에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은 시장실과 의회가 악평을 듣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시장이나 부시장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불협화음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상호 제후하여야 한다.

### ④ 글로스터시의회 자치규약

1조 규약

1.01 시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관련법과 규약에 의거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1.02 규약

본 규약은 글로스터 시의 자치규약이다.

본 규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의회는 시민에게 명확한 정치 및 관리 지도력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공공, 개인 및 자원봉사 조직과 연계된 삶의 질 개선을 가능케 한다.

(b) 지방 기관의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시민의 활동을 지원한다.

(c) 시의원들이 효과적, 능률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대표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d) 법과 정책, 절차와 윤리 규정과 관련된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e) 정책결정자들이 효과적으로 공공 정책에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창출한다.

1.03 규약의 해석과 점검

본 규약은 의회로 하여금 행위에 대한 여러 다른 방식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는 상기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데에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의회는 본 규약의 활동을 평가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2조 시의회의 구성원

2.01 구성과 자격

(a) 구성

시의회는 3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시의원이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며, 지방자치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다.

(b) 자격

지역의 유권자가 시의원의 임무를 수행할 자격을 지닌다.

2.02 공직의 선거와 임기

보통 선거는 해마다 5월의 첫번째 목요일에 열리고 날짜와 상황은 의회에 의해 가끔 변경될 수도 있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유럽의회선거나 총선과 지방선거가 겹칠 시에는 지방선거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

2.03 전체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a) 주요 역할

모든 시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i) 최종 정책결정자로서의 많은 전략적, 협력적 기능을 수행한다.

- (ii)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시각을 반영한다.
  - (iii) 특정사건에 대한 개인 구성원을 대변하며 개인적 사례들을 다룬다.
  - (iv) 시 의회의 지배와 운영에 참여한다.
  - (v) 외부에 대해 시의회를 대표한다.
- (b) 권리와 의무
- (i) 시의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의 기능에 필요한 문건 및 정보, 토지와 건물에 접근을 할 수 있다.
  - (ii) 법과 의원행동규정에 의거하여 시의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공개 정보를 기밀로 만들면 안된다.

#### 2.04 품행

시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시의회의 행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05 의원수당

시의원은 규정에 의해 시의원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다.

### 3조 시민과 시의회

#### 3.01 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투표와 청원

시민은 시정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정부의 시장에게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b) 정보

- (i) 정보가 공개적으로 대중에 공개되는지, 은폐되지 않는지에 대해 의회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지닌다.
- (ii) 내각에 의한 주요 결정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iii) 의회와 집행부의 결정에 대한 각종 서류와 기록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iv) 의회 규약 사본을 얻을 수 있다.

##### (c) 참여

- (i) 의회의 질의시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ii) 시의회의 행위에 대한 불평에 참여할 수 있다.
- (iii) 조사위원회의 수사에 기여할 수 있다.

##### (d) 불평

시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불평할 수 있다.

- (i) 의회가 실행하고 있는 계획
- (ii) 의회의 절차가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시의 옴부즈맨 활동
- (iii) 윤리기준위원회의 독립의장

#### 3.02 시민의 책임

시민은 의원과 공무원들을 위협, 학대, 회롱, 모욕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시나 의원, 공무원들의 재산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 4조 전체 시의회

#### 4.01 정의

##### (a) 정책의 기본틀

정책의 기본틀이란 다음의 계획과 전략들이 전체 시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계획과 전략
- 의회의 협력적 계획
-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
- 범죄 및 무질서 축소 전략
- 주택 전략
- 주택조사 프로그램
- 기후변화정책
- 항공전략

##### (b) 예산

예산은 기타 서비스, 부처, 각 프로젝트, 의회세의 기반, 의회의 세입과 세출을 포함한다. 시의회에 의한 연간 예산의 승인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충을 위한 행정적, 법적 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 (c) 주택 및 토지 양도

4.02 전체 시의회의 기능

전체 시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a) 시 규약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채택한다.
- (b) 정책 형성들의 본질적인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그 변경을 도모하거나 승인한다.
- (c) 시의회내 지도자의 임명과 퇴출
- (d) 지역 이름의 변경
- (e) 지역 입법화를 통한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철회
- (f) 의회에 의해 지켜져야 할 각종 법의 준수

4.03 시의회 회의

시의회 회의는 다음의 세가지 형태를 띤다.

- (a) 연례 정기회의
- (b) 보통 회의
- (c) 특별 회의

이러한 회의는 의사규정에 의해 실행된다.

4.04 기능을 위한 책무

의회는 의회 지도자나 내각의 책임이 아닌 의회 기능을 위한 책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조 시의회의 의장

5.01 시장(시의회 의장)의 역할과 기능

시장이 부재 시에는 부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a) 의전적 역할

- 첫 번째 시민: 시장은 글로스커 시의 첫 번째 시민으로서의 의전적 지위를 갖는다.
- 시의 촉진: 시의 지도부와 더불어 시장은 시의 발전을 촉진한다.
- 예식 문제: 각종 시민 예식에 참여한다.

(b) 시의회 회의의 주재

시장은 매해 새로이 선출되며 다음의 책무를 가진다.

- (i) 본 규약의 목적을 촉진하고, 필요시 규약을 해석한다.
- (ii) 시의원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이익과 관련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 (iii) 의회 회의가 지역사회 문제의 토론의 장임을 확실히 한다.
- (iv) 시의회 활동에 있어 공공의 개입을 촉진한다.
- (v) 시의회를 의식한다.

⑤ 맨체스터시의회 자치규약

1조 규약

1.1 시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관련법과 규약에 의거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1.2 규약

본 규약은 맨체스터 시의 규약이다.

1.3 규약의 목적

본 규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의회가 시민, 기업 및 조직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명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한다.
- (b) 지방 기관의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시민의 활동을 지원한다.
- (c) 시의원들이 효과적, 능률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대표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 (d) 정책결정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 (e)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선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한다.

1.4 규약의 점검

시의회는 본 규약의 작동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2조 시의회의 구성원

2.1 구성과 자격

## (a) 구성

시의회는 9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다.

## (b) 자격

지역의 유권자가 시의원의 임무를 수행할 자격을 지닌다.

## 2.2 시의원의 선거와 임기

보통 선거는 해마다 5월의 첫번째 목요일에 열리고 날짜와 상황은 의회에 의해 가끔 변경될 수도 있다.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2.3 전체 시의원의 역할과 기능

## (a) 주요 역할

모든 시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i) 최종 정책결정자로서의 많은 전략적, 협력적 기능을 수행한다.
- (ii)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시각을 반영한다.
- (iii) 특정사건에 대한 개인 구성원을 대변하며 개인적 사례들을 다룬다.
- (iv) 시 의회의 지배와 운영에 참여한다.
- (v) 외부에 대해 시의회를 대표한다.
- (vi) 가정 높은 수준의 행동 및 윤리 기준을 유지한다.

## (b) 권리와 의무

- (i) 시의원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의 기능에 필요한 문건 및 정보, 토지와 건물에 접근을 할 수 있다.
- (ii) 법과 의원 행동규정에 의거하여 시의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공개 정보를 기밀로 만들면 안된다.

## 2.4 품행

시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시의회의 행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5 의원수당

시의원은 규정에 의해 시의원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다.

## 3조 시민과 시의회

## 3.1 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투표와 청원

시민은 시정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정부의 시장에게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b) 정보

- (i) 정보가 공개적으로 대중에 공개되는지, 은폐되지 않는지에 대해 의회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지닌다.
- (ii) 행정부에 의한 주요 결정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iii) 의회와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각종 서류와 기록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iv) 시의회가 공개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c) 참여

시민은 행정부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에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 (d) 불평

시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불평할 수 있다.

- (i) 의회가 실행하고 있는 계획
- (ii) 의회의 절차가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시의 옴부즈맨 활동
- (iii) 윤리기준위원회

## 3.2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의원과 공무원들을 위협, 학대, 회롱, 모욕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시나 의원, 공무원들의 재산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 4조 전체 시의회

## 4.1 의미

## 4.2 전체 시의회의 기능

전체 시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a) 시 규약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채택한다.
- (b) 정책 형성틀이나 예산의 본질적인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그 변경을 도모하거나 승인한다.

- (c) 시의회 내 지도자의 임명과 퇴출
- (d) 지역 이름의 변경
- (e) 지역 입법화를 통한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철회
- (f) 의회에 의해 지켜져야 할 각종 법의 준수

#### 4.3 시의회 회의

시의회 회의는 다음의 세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 (a) 연례회의(b) 보통회의(c) 특별회의

#### 4.4 기능에 대한 책무

의회의 기능을 위한 책무는 다음의 기능을 기준으로 할당된다.

- (a) 행정부의 책임이 아닌 시의회의 기능
- (b) 행정부의 책임이 아닌 지역적 선택의 기능

### 5조 시의회의 의장

#### 5.1 시장의 역할과 기능

시장이 부재 시에는 부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 (i) 본 규약의 목적을 촉진한다.
- (ii) 시의원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이익과 관련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 (iii) 의회 회의가 지역사회 문제의 토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 (iv) 시의회 활동에 있어 공공의 개입을 촉진한다.
- (v) 시민의 의식에 참석한다.

#### 5.2 시장과 부시장은 매년 연례회의에서 선출된다.

5.3 위의 조항 5.2 와는 상관없이 의회의 정치그룹의 지도자는 정치그룹이 차기 년도의 시장과 부시장을 결정하는 의정서에 동의할 수 있다.

| 저자 약력 |

이영안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위원(현)

E-mail : yslee@suwon.re.kr

김일한

정치학박사

동국대학교 연구교수(현)

E-mail : earthkm16@gmail.com

최위정

정치학박사

금강대학교 초빙교수(현)

E-mail : politics@hanmail.net

김은경

행정학석사

수원시정연구원 인문사회연구부 비상근 연구보조원(현)

E-mail : keklion@naver.com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